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전 문 위 원 이 현 종

목 차

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 1

1.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 1

2. 세입·세출 개요 ····· 3

가. 세 입 ····· 3

나. 세 출 ····· 4

3. 기금 개요 ····· 6

가. 수 입 ····· 6

나. 지 출 ····· 7

4. 예비비 지출 ····· 9

5. 재무회계 ····· 10

가. 재정상태 ····· 10

나. 재정운영 ····· 11

다. 순자산변동 ····· 12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 13

1. 일반회계 ····· 13

가. 개 요 ····· 13

1) 세입결산 ····· 13

2) 세출결산 ····· 1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7

1)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시 합리적 추계 필요 ····· 17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 연간 기금 조성 목표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부 유치 방안 필요 등 ····· 23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24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 27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의 지역 간 형평 고려 필요 ····· 28

3) 식품산업정책관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 30

4)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기술료 회수실적 및 사업화성과 관리 필요 등 ····· 34

(1) 기술료 회수실적 및 사업화성과 관리 필요 ····· 37

(2) 반복되는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42

(3) 장기 미활용 특허 관리 미흡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필요 ····· 48

5)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의 일반관리비 편성・정산 관행 개선 필요 ····· 55

6) 식품산업인프라강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차별화 검토 필요 ····· 61

7) 수리시설유지관리: 목적 외 사용 수입 확보 노력 필요 ····· 66

8) 농업협상대응: 국외업무여비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 71

(1) 국외업무여비 자체전용 후 반복된 불용 개선 필요 ····· 73
(2) 조사 대표성 확보 및 성과자료 검증절차 마련 필요 ····· 80
9) 국제기구분담금·국제기구분담금(ODA): FAO 한국협회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분담금의 반복적 미납으로 인한 국제기구 권리 제한 방지 필요 등 ····· 83
(1) FAO 한국협회에 대한 연례적 재정지원의 필요성 재검토 필요 ····· 85
(2) 국제기구분담금의 반복적 미납으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 방지 필요 ····· 95
(3) 동일 통화 의무분담금에 대한 예산편성 환율의 정합성 제고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101
10)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종료과제의 성과 추적관리 및 연구기획 환류 강화 필요 등 ····· 104
(1) 종료과제의 성과 추적관리 및 연구기획 환류 강화 필요 ····· 106
(2) 장기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체계적 재평가 필요 ····· 113
(3) 신규 연구과제의 반복적 단독응모에 대한 과제기획·공모방식 개선 필요 ····· 117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23

가. 개 요 ····· 123
1) 세입결산 ····· 123
2) 세출결산 ····· 126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28
1)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실적 저조 ····· 128
2) 농업자금이차보전: 신규 내역사업의 사전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정책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134

(1) 신규 내역사업의 사전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35
(2) 정책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141
3)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단계별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공사비 편성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45
4)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 ····· 158
5)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기업의 실질적 성장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165
6) 전략작물산업화: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173
7)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과 외 과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의 사업 참여 유도 필요 ····· 177
8)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단계별 점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81
9)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수요 및 집행주체를 고려한 적정 예산비목 편성 필요 ····· 187
10) 농산업 수출활성화: 스마트팜 수출지원의 만족도 중심 성과지표 개편 필요 ····· 192
1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 공모절차 검토 등 필요 ····· 197
(1)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필요 ····· 198
(2) 사업 내용의 적정성 검토 ····· 201
(3) 보조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03
12)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 중복실시 지양 필요 ····· 205
13) 푸드서비스선진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추진시 업체별 배달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한 자부담율 설정 검토 필요 ····· 210
14)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215

15) 반려동물 산업육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의 별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등 ····· 222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의 별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224
(2)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 근거규정 마련 필요 ···· 229
16)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추진 여건 관리 미흡에 따른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232
17) 가축백신지원: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백신 재고 증가로 인한 백신 관리 비효율 개선 필요 ····· 239
18)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빈집 매물화·거래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간의 연계 등 사업효율성 제고 필요 ····· 245
(1) 빈집은행 관련 정보화시스템 연계 필요 ····· 247
(2) 빈집 거래 활성화(빈집은행) 사업의 집행부진 및 사업비 이월 ··· 250
(3) 빈집실태조사의 계획적 추진 필요 ····· 251
19) 성과지표 관리: 사업의 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 254
(1)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종자 충실도 지표의 변별력 제고 및 보완지표 마련 필요 ····· 257
(2) 종자수매·공급: 공급규모와 수요충족도를 반영하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 259
20)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 262
21) 농산물원산지관리: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 268
2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예산내역의 명확성 제고 필요 ····· 273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77

가. 개 요 ····· 277

1) 세입결산 ····· 277
2) 세출결산 ····· 278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279

가. 개 요 ····· 279
1) 세입결산 ····· 279
2) 세출결산 ····· 279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80

가. 개 요 ····· 280
1) 세입결산 ····· 280
2) 세출결산 ····· 281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282
1) 농기계임대: 일률적 임대료 감면의 재검토 및 법정 임대료 기준 준수 필요 ····· 282
2)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제5차 육성계획의 목표 미달 및 지표 불연속 개선 필요 ····· 292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02

가. 개 요 ····· 302
1) 세입결산 ····· 302
2) 세출결산 ····· 302

7. 양곡관리특별회계 ····· 303

가. 개 요 ····· 303
1) 세입결산 ····· 303
2) 세출결산 ····· 305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06
1) 수입양곡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306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10

가. 개 요 ····· 310
1) 수입결산 ····· 310
2) 지출결산 ····· 31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15
1) 자조금지원: 공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 315

9. 농지관리기금 ····· 320

가. 개 요 ····· 320
1) 수입결산 ····· 320
2) 지출결산 ····· 323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25
1) 농지관리기금: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325
2)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추가 사업지연 방지 및 민간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333
(1)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334
(2)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338
(3) 민간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339
3)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 ·· 341
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사업 참여자 전수조사를 통한 정책성과 재평가 필요 ···· 348
5)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개선 필요 등 ····· 353

(1) 전략품목 국내반입 성과를 기준으로 현행 융자사업의 실효성 검토 필요 ····· 354
(2)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반복지원이 정책금융의 추가성과로 이어지는지 엄격히 점검할 필요 ····· 361
(3) 특정 국가 및 품목 집중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분산투자 필요 ····· 365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367

가. 개 요 ····· 367
1) 수입결산 ····· 367
2) 지출결산 ····· 36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70
1)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370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375

가. 개 요 ····· 375
1) 수입결산 ····· 375
2) 지출결산 ····· 37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79
1) 축사시설현대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379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384

가. 개 요 ····· 384
1) 수입결산 ····· 384
2) 지출결산 ····· 386

13. 축산발전기금 ····· 387
가. 개 요 ····· 387
1) 수입결산 ····· 387
2) 지출결산 ····· 38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392
1) 축산자조금: 유업체해외마케팅지원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92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온라인경매플랫폼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397
3) 축산물HACCP지원: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및 확산 필요 ····· 402

14. 양곡증권정리기금 ····· 407
가. 개 요 ····· 407
1) 수입결산 ····· 407
2) 지출결산 ····· 409

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예산액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27조 9,280억원이고, 31조 4,438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0조 3,36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 3억원, 미수납액 1조 1,066억원이 발생하였음.

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13조 524억 2,500만원이며, 15조 5,375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4조 4,305억 3,1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3억 3,600만원과 미수납액 1조 1,066억 3,6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17,281,695	20,745,369	20,727,582	-	17,787	3,445,887
기 금	10,646,334	10,698,448	9,609,262	336	1,088,850	△1,037,072
총 계	27,928,029	31,443,816	30,336,844	336	1,106,636	2,408,815
총수입	13,052,425	15,537,504	14,430,531	336	1,106,636	1,378,106

* 총수입: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세입예산액(수입계획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35조 1,751억원이었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예산(지출)현액은 37조 1,502억원으로 증가하여 이 중 35조 7,10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589억원과 불용액 7,216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액은 19조 2,479억 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20조 3,649억 4,700만원이며, 이 중 19조 8,721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589억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38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 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예산	24,528,721	1,785,621	166,820	99,030 △99,030	66,522 △66,522	-	26,481,162	26,101,290	98,137	281,735
기금	10,646,334	22,688	-	-	-	209,654 △209,654	10,668,022	9,609,262	60,777	439,820
총계	35,175,055	1,808,309	166,820	99,030 △99,030	66,522 △66,522	209,654 △209,654	37,150,183	35,710,551	158,914	721,555
총지출	19,247,908	829,403	83,410	99,030 △99,030	66,522 △66,522	209,654 △5,427	20,364,947	19,872,141	158,914	333,892

* 총지출: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기타증감: 내역변경, 세목변경
*** 세출예산액(지출계획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총계 기준 17조 2,817억원이고, 20조 7,45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0조 7,276억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78억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21,333	21,249	15,234	-	6,015	△6,099
농특회계[1]	14,421,258	17,549,558	17,542,061	-	7,497	3,120,803
에특회계[2]	43,047	3,339	3,320	-	19	△39,727
혁특회계[3]	34	49	49	-	-	15
지특회계[4]	3,481	29,854	27,039	-	2,815	23,558
고특회계[5]	-	160	160	-	-	160
양특회계[6]	2,792,542	3,141,160	3,139,719	-	1,441	347,177
계	17,281,695	20,745,369	20,727,582	-	17,787	3,445,887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 양곡관리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1조 7,979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미곡판매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2,205억원이 초과 수납되어 전체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조 4,459억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발생 사유는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 체납 및 납기 미도래 등임.

나. 세 출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24조 5,287억원이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액 1조 7,856억원, 예비비 1,668억원 등 1조 9,524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26조 4,812억원임.

【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일반회계	7,710,151	4,841	83,410	2,110 △2,110	4,225 △4,225	7,798,402	7,779,261	3,930	15,211
농특회계	12,604,016	1,611,977	83,410	19,599 △19,599	5,539 △5,539	14,299,403	14,032,129	8,044	259,230
에특회계	16,495	-	-	-	-	16,495	16,495	-	-
혁특회계	-	-	-	-	-	-	-	-	-
지특회계	1,389,820	167,803	-	-	1 △1	1,557,623	1,467,113	83,518	6,992
고특회계	15,697	-	-	-	-	15,697	15,697	-	-
양특회계	2,792,542	1,000	-	77,320 △77,320	56,757 △56,757	2,793,542	2,790,594	2,645	303
총계	24,528,721	1,785,621	166,820	99,030 △99,030	66,522 △66,522	26,481,162	26,101,290	98,137	281,735
총지출	10,839,597	806,715	83,410	99,030 △99,030	66,522 △66,522	11,729,722	11,577,512	98,137	54,073
내부거래	13,689,124	978,906	83,410	-	-	14,751,440	14,523,778	-	227,662

* 기타증감: 내역변경, 세목변경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예산현액 26조 4,812억원 중 26조 1,013억원을 지출하고, 지방정부 실집행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용역기한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98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817억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기금 개요

가. 수 입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의 2025 회계연도 총 수입(변경)계획액은 10조 6,463억원이고, 10조 6,984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9조 6,093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3억원, 농지기금 농지보전부담금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1조 889억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수입계획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대비 수납증감 (B-A)
	당초	변경 (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796	2,725,462	2,367,277	2,363,752	3,525	-	△361,710
농지관리기금	2,328,915	2,328,915	3,117,246	2,041,191	1,075,718	336	△287,724
축산발전기금	1,025,446	1,025,446	991,276	990,701	575	-	△34,74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104,461	3,104,461	3,210,804	3,201,772	9,032	-	97,3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2,612	505,284	256,880	256,880	-	-	△248,404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5,862	405,862	230,178	230,178	-	-	△175,684
양곡증권정리기금	550,904	550,904	524,787	524,787	-	-	△26,117
합 계	10,495,996	10,646,334	10,698,448	9,609,262	1,088,850	336	△1,037,072
사업운용수입	4,893,186	4,893,186	5,348,086	4,258,900	1,088,850	336	△634,286
정부내부수입	4,614,707	4,765,045	4,438,315	4,438,315	-	-	△326,730
여유자금회수	988,103	988,103	912,047	912,047	-	-	△76,056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수납액은 변경 계획보다 1조 371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농특회계 전입금 축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여유자금 회수 감소, 농지관리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감소,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료 수입 감소 등이 주요 요인임.

나. 지 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지출(변경)계획액은 10조 6,463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27억원 등이 증가하여 지출계획현액은 10조 6,690억원임.

지출계획현액 중 9조 6,093억원을 지출하고, 융자 실행 전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60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398억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 초	변 경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796	2,725,462	6,367	2,731,829	2,363,752	14,248	21,189
농 지 관 리 기 금	2,328,915	2,328,915	-	2,328,915	2,041,191	-	110,016
축 산 발 전 기 금	1,025,446	1,025,446	1,321	1,026,767	990,701	-	16,29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104,461	3,104,461	-	3,104,461	3,201,772	-	210,2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2,612	505,284	15,000	520,284	256,880	46,529	36,256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5,862	405,862	-	405,862	230,178	-	-
양곡증권정리기금	550,904	550,904	-	550,904	524,787	-	45,857
총 계	10,495,996	10,646,334	22,688	10,669,022	9,609,262	60,777	439,820
일 반 지 출(A)	8,259,777	8,612,538	22,688	8,635,226	8,294,629	60,777	279,819
정부 내부지출(B)	781,565	783,369	-	783,369	623,367	-	160,002
합 계(A+B)	9,041,342	9,395,907	22,688	9,418,595	8,917,996	60,777	439,821
여유자금 운용	1,454,654	1,250,427	-	1,250,427	691,265	-	-

* 총계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주요 이월 사유는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융자 실행 지연, 농안기금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사업의 융자 실행 전 신용평가 등 사전절차 기간 소요 등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집행잔액 2,102억원, 농지관리기금의 공자기금 예탁금 축소 1,100억원 등임.

4.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비비 배정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4억원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을 위하여 834억원을 배정받아 823억원을 지출하고, 11억원을 이월하였음.

□ 조기 폐업 농가의 소득 공백 및 생계 불안정 완화를 위해 폐업 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비, 철거비 등을 지원하였음.

【 2025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

(단위 : 백만원)

집 행 내 역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농특회계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83,410	82,286	1,124	-
합 계		83,410	82,286	1,124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5.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78,921,812	79,205,243	(283,431)	(0.4 %)
부 채	9,771,920	10,036,757	(264,837)	(2.6 %)
순자산	69,149,892	69,168,487	(18,595)	(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5년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산은 78조 9,218억원으로 전기 대비 2,834억원 감소(△0.4%)하였는데, 양곡 등 재고자산 등의 감소에 따른 기타자산 감소(5,851억원) 등이 주요 요인임.

□ 2025년말 현재 부채는 9조 7,719억원으로 전기 대비 2,648억원 감소(△2.6%)하였는데, 이월예산 미지급비용 등의 감소에 따른 기타차입부채 감소(3,216억원)가 주요 요인임.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5년 말 현재 69조 1,4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억원 감소(△0.0%)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14,042,633	11,541,511	2,501,122	21.7 %
Ⅱ. 관리운영비	475,789	430,078	45,711	10.6 %
Ⅲ. 비배분비용	748,688	508,437	240,251	47.3 %
Ⅳ. 비배분수익	713,571	175,706	537,865	306.1 %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4,553,539	12,304,320	2,249,219	18.3 %
Ⅵ. 비교환수익 등	787,435	1,123,086	(335,651)	(29.9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3,766,105	11,181,234	2,584,871	23.1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5년 재정운영표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16조 2,371억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2조 1,945억원을 차감한 14조 426억원으로 전기 대비 2조 5,011억원 증가(21.7%)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677억원과 그 밖의 경비 2,081억원 등 총 4,758억원으로 전기 대비 457억원(10.6%) 증가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2,419억원, 이자비용 1,628억원 등 총 7,487억원임.

□ 비배분 수익은 기타국가운영수익 6,094억원, 자산평가수익 546억원 등 총 7,136억원임.

□ 비교환수익은 7,8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57억원 감소함.

□ 재정운영순원가는 14조 5,535억원이고 여기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최종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2조 5,849억원 증가(23.1%)한 13조 7,661억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69,168,487	68,998,290	170,197	0.2 %
Ⅱ.재정운영결과	13,766,105	11,181,234	2,584,871	23.1 %
Ⅲ.재원의조달및이전	13,723,294	11,406,284	2,317,010	20.3 %
Ⅳ.조정항목	24,216	(54,854)	79,070	144.1 %
Ⅴ.기말순자산 (Ⅰ-Ⅱ+Ⅲ+Ⅳ)	69,149,892	69,168,487	(18,595)	(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기초순자산은 전기말 순자산 대비 1,702억원 증가한 69조 1,685억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는 13조 7,661억원임.

□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3조 7,233억원으로 전기 대비 2조 3,170억원 증가하였고, 조정항목은 242억원으로 전기 대비 791억원 증가하였음.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더한 기말순자산은 69조 1,499억원임.

Ⅱ.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이전수입 169억 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억 8,700만원, 재산수입 9억 7,600만원 등 21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기타경상이전수입액 감소 등으로 예산 대비 감액된 212억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212억 4,9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85억 1,7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19억 3,900만원, 재산수입으로 5억 1,900만원 등 총 152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고, 체납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60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특징은 예산액 대비 관유물매각대는 수납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은 수납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전환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34억 1,9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83억 9,1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976**	**658**	**519**	**-**	**139**	**△457**
토지대여료	508	299	164	-	136	△344
건물대여료	210	109	106	-	3	△104
기타관유물대여료	10	8	8	-	-	△2
기타재산이자수입	248	242	241	-	1	△7
경상이전수입	**16,908**	**14,344**	**8,517**	**-**	**5,827**	**△8,391**
벌금및과료	-	5	-	-	5	-
과태료	1,456	1,950	1,198	-	752	△258
징계부과금	-	323	5	-	318	5
과징금	619	3,638	111	-	3,527	△508
변상금	672	101	29	-	72	△643
위약금	206	58	57	-	1	△149
가산금	33	410	16	-	395	△17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7,859	7,101	-	758	△6,82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187**	**1,983**	**1,939**	**-**	**44**	**△248**
면허료및수수료	2,000	1,747	1,705	-	42	△295
수업료	38	1	1	-	-	△37
실습수입	14	3	3	-	-	△11
기타잡수입	135	232	230	-	2	95
수입대체경비	**1,201**	**781**	**779**	**-**	**2**	**△422**
수업료	428	331	331	-	-	△97
기타잡수입	773	450	448	-	2	△325
관유물매각대	**61**	**3,480**	**3,480**	**-**	**-**	**3,419**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	-	-	-	△50
토지매각대	1	3,472	3,472	-	-	3,471
재고자산매각대	10	8	8	-	-	△2
합 계	**21,333**	**21,249**	**15,234**	**-**	**6,015**	**△6,099**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7조 7,101억 5,1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8억 4,100만원과 예비비 834억 1,000만원 등으로 예산현액은 7조 7,984억 200만원으로 증가함.

□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회계간거래 6조 7,028억 8,0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230억 7,000만원, 국제협력협상 2,816억 9,900만원, 회계기금간거래 1,609억 2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566억 4,400만원 등 총 7조 7,79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축산검역검사 18억 3,5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12억 8,000만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7억 8,600만원, 국제협력협상 2,800만원 등 총 39억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공사 및 용역 기한 미도래 등임.

□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46억 300만원, 회계간거래 44억 5,800만원 등 총 152억 1,1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36,922	438	-	135 △135	568 △568	37,359	34,987	786	1,585
농업신산업육성	5,000	-	-	-	-	5,000	5,000	-	-
농업생산기반정비	156,644	-	-	-	-	156,644	156,644	-	-
국제협력협상	279,829	2,352	-	180 △180	104 △104	282,181	281,699	28	454
농림축산검역검사	96,991	1,351	-	100 △100	1,263 △1,263	98,342	92,565	1,835	3,942
종자관리	17,074	-	-	726 △84	195 △195	17,716	17,710	-	6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3,967	-	-	-	6 △6	3,967	3,805	-	162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28,894	701	-	969 △1,611	2,088 △2,088	328,953	323,070	1,280	4,603
회계간거래(전출금)	6,623,928	-	83,410	-	-	6,707,338	6,702,880	-	4,458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60,902	-	-	-	-	160,902	160,902	-	-
합 계	**7,710,151**	**4,841**	**83,410**	**2,110 △2,110**	**4,225 △4,225**	**7,798,402**	**7,779,261**	**3,930**	**15,211**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시 합리적 추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 대비 과다 계상되고 있으므로,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토지 등의 대여료, 기타재산이자수입,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과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13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12억 4,900만원 중 152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0억 1,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세 입	21,333	21,249	15,234	6,015	-	22,318
-토지대여료	508	299	164	136	-	508
-건물대여료	210	109	106	3	-	211
-기타관유물대여료	10	8	8	-	-	10
-기타재산이자수입	248	242	241	1	-	375
-과태료	1,456	1,950	1,198	752	-	1,456
-징계부과금	-	318	-	318	-	-
-과징금	619	3,638	111	3,527	-	644
-변상금	672	101	29	72	-	672
-위약금	206	58	57	1	-	206
-가산금	33	410	16	395	-	33
-기타경상이전수입	13,922	7,859	7,101	758	-	13,922
-면허료 및 수수료	2,000	1,747	1,705	42	-	2,000
-수업료	38	1	1	-	-	38
-실습수입	14	3	3	-	-	14
-기타잡수입	135	232	230	1	-	135
-수업료(수입대체)	428	331	331	-	-	428
-기타잡수입(수입대체)	773	450	448	2	-	77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0	-	-	-	-	3
-토지매각대	1	3,472	3,472	-	-	880
-재고자산매각대	10	8	8	-	-	10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13억 3,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52억 3,400만원에 그쳐 예산 대비 수납률이 71.4%에 불과함.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수납률 역시 각각 29.1%, 43.6%, 35.5%, 51.5%에 불과한 등 실제 수납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세입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1	합 계	16,626,727	19,843,604	19,831,703	-	11,901
	일반회계	20,910	12,853	6,089	-	6,763
	특별회계	16,605,817	19,830,751	19,825,614	-	5,137
2022	합 계	16,975,645	17,324,469	17,293,886	7	30,575
	일반회계	20,710	15,330	9,025	7	6,298
	특별회계	16,954,935	17,309,138	17,284,861	-	24,277
2023	합 계	15,985,371	16,710,129	16,687,751	1	22,378
	일반회계	21,170	13,484	7,512	1	5,972
	특별회계	15,964,201	16,696,645	16,680,239	0	16,406
2024	합 계	17,312,657	16,639,958	16,606,963	2	32,993
	일반회계	21,216	17,175	10,916	2	6,256
	특별회계	17,291,441	16,622,784	16,596,047	-	26,737
2025	합 계	17,281,695	20,745,369	20,727,582	-	17,787
	일반회계	21,333	21,249	15,234	-	6,015
	특별회계	17,260,362	20,724,120	20,712,349	-	11,7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와 같은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괴리는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 수납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022~2025년 세입항목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변상금,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수업료, 실습수입, 수업료(수입대체), 기타잡수입(수입대체) 등 8개 항목에서 매년 수납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의 최근 5년간(2026년 포함) 세입예산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고 있어, 반복되는 수납 부진이 예산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일부 세입항목은 실제 수납실적이 예산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음에도 세입예산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변상금의 경우 최근 4년간 실제 수납액은 100만원('22년)에서 최대 2,900만원('25년)에 불과하였음에도 예산액은 매년 그 20배에 달하는 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연간 예산액이 139억 2,200만원에 달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5.5%를 차지하는 주요 세입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연평균 수납액이 34억 8,000만원(25.0%)에 불과하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세입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 '22~'25년 세입항목별 예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토지 대여료	'22	508	392	253	49.8	64.5	139	-
	'23	508	457	318	62.6	69.6	138	-
	'24	508	422	284	55.9	67.3	138	-
	'25	508	299	164	32.3	54.8	136	-
변상금	'22	672	78	1	0.1	1.3	77	-
	'23	672	76	3	0.4	3.9	73	-
	'24	672	80	7	1.0	8.8	73	-
	'25	672	101	29	4.3	28.7	72	-
위약금	'22	206	12	8	3.9	66.7	1	3
	'23	206	17	15	7.3	88.2	1	-
	'24	206	10	8	0.5	80.0	1	-
	'25	206	58	57	27.7	98.3	1	-
기타 경상 이전 수입	'22	13,922	3,760	2,767	19.9	73.6	993	-
	'23	13,922	2,247	1,693	12.2	75.3	555	-
	'24	13,922	3,320	2,362	17.0	71.1	958	-
	'25	13,922	7,859	7,101	51.0	90.4	758	-
수업료	'22	38	1	1	2.6	100.0	-	-
	'23	38	2	2	5.3	100.0	-	-
	'24	38	3	3	7.9	100.0	-	-
	'25	38	1	1	2.6	100.0	-	-
실습 수입	'22	14	4	4	28.6	100.0	-	-
	'23	14	4	4	28.6	100.0	-	-
	'24	14	4	4	28.6	100.0	-	-
	'25	14	3	3	21.4	100.0	-	-
수업료 (수입 대체)	'22	371	329	329	88.7	100.0	-	-
	'23	428	330	330	77.1	100.0	-	-
	'24	428	327	327	76.4	100.0	-	-
	'25	428	331	331	77.3	100.0	-	-
기타 잡수입 (수입 대체)	'22	773	380	378	48.9	99.5	2	-
	'23	773	440	437	56.5	99.3	2	-
	'24	773	434	432	55.9	99.5	2	-
	'25	773	450	448	58.0	99.6	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입예산 편성시 최근 3~5년간 수납실적을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 편성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처럼 실제 수납액 대비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할 경우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 규모를 초과하여 지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계획된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연도 중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수납실적과 실제 징수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 연간 기금 조성 목표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기부 유치 방안 필요 등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연간 기금 조성 목표액이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부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내역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지 않아 사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단이 부재한 점을 개선하는 한편, 기금지출의 혜택이 지역적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임.

동 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7]에 근거하여, 민간기업 등의 출연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항은 2017년 1월 17일 시행된 후 10년간 효력을 가짐.

---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법률 제14528호, 2017. 1. 17.)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나) 검토의견

(1)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을 살펴보면, 2024년 346억 5,300만원, 2025년 490억 6,600만원 등으로 연간 목표치(1,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 출범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의 누적 조성액도 3,207억원에 그쳐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미달하는 상황임.

【 연도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6.6.30. 기준)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	2	301	68	39	30,965
2018	30	17,930	9	5,215	27	14	23,159
2019	43	17,543	26	5,045	9	5	22,594
2020	65	20,435	76	17,053	16	107	37,595
2021	94	25,739	70	19,684	5	103	45,525
2022	101	15,945	111	19,245	7	226	35,417
2023	117	13,387	103	16,941	5	167	30,495
2024	116	13,627	90	20,945	9	82	34,653
2025	122	13,023	95	36,039	5	4	49,066
2026.6	28	933	49	8,067	-	-	9,000
다년협약 잔여분	-	-	1	2,250	-	-	2,250
총 계	141	169,187	245	150,785	136	747	320,719

*참여기업 총수는 중복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러한 조성 실적 부진은 유사한 성격의 기금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남.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0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2026년 6월말 기준 조성액이 3조 2,336억원에 달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3,207억원)의 약 10배 수준임.

출연 구조를 살펴보면, 참여기업 수는 양 기금이 유사한 수준이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액의 52.8%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이 출연금액의 85.9%를 부담하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출연이 저조하고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6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비교 】

(단위: 억원, 개 / '26.6.30. 기준)

구 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	민간기업 등	1,515	27,771
	공기업	1,692	4,565
	합 계	**3,207**	**32,336**
참여기업	민간기업 등	381	384
	공기업	141	121
	합 계	**522**	**50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는 대·중소상생협력기금이 협력사의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출연기업도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구조인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낮고,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의료·복지 등 사회공헌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활용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부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구 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개 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
법적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재원 조성	◦민간 출연금 + 정부 보조금 ◦민간자율 기획, 혁신 파트너십 지원 등: 민간 100 ◦공동투자R&D, 대중소 자율형ESG 지원 등: 민간 50, 정부 50 ◦해외동반진출 : 민간 30, 정부 70	◦**민간 출연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농어촌, 농어업인 등
용 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사업 등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참고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 목표규정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까지이며, 제22대 국회에는 기금 조성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려는 내용의 개정안[8]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기금이나,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고 지원 대상이 FTA 피해 농어업인 등이라는 점에서 통상정책의 보완책으로서 공적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목적별 기금사용액 총액만을 공개할 뿐, 출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자체규정에 따라[9]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26.6.30. 기준)

년도	교육·장학	복지증진	지역개발	공동협력	상품권	운용·관리	합계
지원액 누계	13,575 (5.0%)	53,508 (19.5%)	128,913 (47.0%)	53,558 (19.5%)	23,264 (8.5%)	1,215 (0.4%)	274,03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8) 윤준병의원안 제2204882호, 박덕흠의원안 제2210262호, 박수현의원안 제2210482호

9)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21조(상생기금 출연) ③ **협력재단은 출연주체의 상생기금 출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출연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 상생협력에 실질적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운용역량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임.

특히, 기금 출연액의 52.8%(1,692억원)가 공공기관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어 재원의 상당부분이 공적 재원에 가까움에도, 동 기금은 민간기금으로서 국회의 결산심사 등 재정통제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상황임.

더욱이 기금 조성액 목표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부 출연, 조성 목표액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공적 재원 의존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기금의 규모 확대로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의 지역 간 형평 고려 필요

□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기금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간 최대·최소 지원금액 격차가 약 10배에 달하여 지역 간 편차가 적지 않은 상황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역별 지원현황 】

(단위: 억원 / '26.6.30. 기준)

구 분	지원금액	비중(%)
A지역	308.0	11.2
B지역	38.2	1.4
C지역	181.9	6.6
D지역	197.5	7.2
E지역	74.1	2.7
F지역	67.3	2.5
G지역	91.7	3.3
H지역	372.1	13.6
I지역	39.4	1.5
기타(광역시·자치시)	130.5	4.7
전국*	1,239.6	45.3
합계	2,740.3	100.0

*전국단위란 2개 이상 도(道)를 지원하는 사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생기금 대부분(98%)이 출연기업의 지정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출연기업 소재지에 따라 기금 지원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10]은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로 하여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할 노력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기금혜택이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식품산업정책관 성과지표: 성과지표를 재정사업의 성과를 측정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업 중 일부는 성과지표가 산업 전체의 출하액·수출액 등 거시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2025회계연도 소관 13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17개 설정하였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2025회계연도 식품산업정책관 성과지표 】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5회계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출하액(백억원)	568	587	103.3
기능성식품산업육성	기능성식품 특허 등록 및 식약처 개별인정 등록(건수)	16	16	100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식품표준규격 제·개정(건수)	675	693	102.7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농식품수출액(백만불)	10,129	10,403	102.7
농식품 시장 개척	다변화 전략국가 수출비중(%)	17.9	22.0	122.9
농식품글로벌 비대면마케팅 지원	온라인 한국식품관 매출액(백만불)	18.0	27.0	149.8
	홍보품목 수출액(백만불)	5,385	5,629.6	104.5
농식품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선도(통합) 조직 수출액(백만불)	296	324.6	109.7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착공기업(개소)	10	10	100.0
	식품기업 채용인원(명)	135	175	129.6
	국가식품클러스터 개방형 장비 공동활용(건)	12,780	17,304	135.4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5회계연도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한식온라인플랫폼이용자수(천명)	6,194	7,917	127.8
푸드서비스 선진화	외식업 소매 판매액 지수(지수)	106.2	110.0	103.6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구축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시설 이용기업 만족도(점)	73.5	78.2	106
푸드테크연구 지원센터구축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공정률(%)	17	17.4	102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국내곤충산업규모(단위: 백만원)	49,600	52,818	106.5
	생명자원정보서비스 연계DB 항목 수(개)	22	22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85조의6[11]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산업정책관 소관 사업의 성과지표 중 일부는 개별 사업의 산출 및 성과가 아닌 산업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거시지표로만 설정되어 사업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1)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전통발효식품업체 전체의 출하액을, ②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사업은 전체 기업의 농식품수출액을, ③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외식업 소매판매액 지수를, ④ "농식품 시장 개척" 사업은 다변화 전략국가 수출비중을, ⑤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사업은 국내곤충산업규모를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 거시지표로 설정된 식품산업정책관 성과지표 현황 】

세부사업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산식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발효식품업체출하액	「식품 등의 생산실적」(식약처)의 전통발효식품업체 출하액의 합계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농식품수출액	당해연도 농식품 수출액
농식품 시장 개척	다변화 전략국가 수출비중	전략국가 수출액/국가 전체 수출액*100
푸드서비스 선진화	외식업 소매 판매액 지수	외식업 소매판매액지수(국가데이터처)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국내곤충산업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시·도별 곤충 생산 판매액 집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러한 산업 전체의 출하액 등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원효과보다는 물가, 환율 등 해당 사업 외의 요인에 의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상회 또는 하회하여도 그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사업에 기인한 것인

지 판단하기 어렵고,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일례로,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비 512억 8,900만원은 2025년 농식품 수출액(101억 2,900만불, 약 15조원)의 0.3% 수준에 불과한데, 현재와 같이 전체 수출액만을 해당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에는 사업성과보다 대외여건 변화의 영향이 사업성과에 더욱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지표를 직접적인 사업 수혜 대상의 성과 변화 등 사업의 결과를 보다 연관성 높게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체화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2)]

12) 예컨대 "농식품 시장 개척" 사업은 국가 전체의 수출액 대신 수출지원 참여기업의 수출 실적과 같이 사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4) 연구개발(R&D) 사업 공통: 기술료 회수실적 및 사업화 성과 관리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금액 등 외형적 성과는 관리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이후 실제 기술료 회수와 제품화·매출 등 최종 활용성과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 결과를 후속 R&D 기획 및 성과관리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2021~2025년 기술료 사용 계약 502건 중 334건(66.5%)이 법정 사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미달액은 13억 7,911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지적 이후에도 미준수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약별 적용기준과 사용액을 점검하고 미준수 사유·미달액 처리 및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허별 등록연도와 활용 여부는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이 없는 장기 미활용 특허를 별도로 식별·추적하는 체계는 미흡하므로, 과제 종료시점과 특허·활용정보를 연계하여 장기 미활용 특허를 선별하고 기술수요자 발굴·마케팅·양도 검토 등 후속조치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화·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활용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R&D 예산은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ICT 융합·원천기술, 융복합 인력 양성 등 스마트농업 분야, 농

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동물질병 진단·방역, 디지털육종 등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식품 제조기술, 기능성·맞춤형 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 등 투자를 위해 총 1,766억 9,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766억 9,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국가 R&D 사업에 대하여 기타공공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기획, 관리, 평가 및 미환수액의 징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2020~2024년에 종료된 과제는 1,042개이고, 이들 과제에 투입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조 936억 9,319만원임.

이 가운데 2025년 말까지 금액형 사업화성과가 확인된 과제는 552개이며, 전체 사업화금액은 1조 1,929억 6,086만원이며, 같은 종료과제에서 특허 2,265건이 등록되고 기술이전 계약 893건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2020~2024년 종료과제 주요 성과(~'25.12.31.)[13] 현황 】

(금액 단위: 백만원)

종료과제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화성과 발생 과제수	전체 사업화 금액	특허 등록	기술이전 계약
1,042개	1,093,693	552개	1,192,961	2,265건	893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3) 사업화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기술이전·제품화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0~2024년 종료과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사업화 성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누적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함.

【 2025회계연도 농식품부 소관 연구개발(R&D)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사업	176,693	-	-	-	176,693	176,693	-	-	208,380
- 2025축산현안대응 산업화기술개발	3,762	-	-	-	3,762	3,762	-	-	-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40,880				40,880	40,880			38,887
- 기술사업화지원(R&D)	25,573	-	-	-	25,573	25,573	-	-	24,876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16,636				16,636	16,636			17,808
-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 기술개발(R&D)	4,501	-	-	-	4,501	4,501	-	-	2,161
- 친환경동력원적용 농기계 기술개발(R&D)	6,750	-	-	-	6,750	6,750	-	-	5,850
- 밭농업기계화촉진 기술개발(R&D)	5,325	-	-	-	5,325	5,325	-	-	2,925
- 국제협력기반수출 농업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938	-	-	-	6,938	6,938	-	-	5,725
-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양성(R&D)	6,000	-	-	-	6,000	6,000	-	-	6,000
- 고위험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R&D)	8,098	-	-	-	8,098	8,098	-	-	8,340
-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구축(R&D)	3,050	-	-	-	3,050	3,050	-	-	3,317
-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 산업화기술개발(R&D)	6,375	-	-	-	6,375	6,375	-	-	10,375
- K-수직농장세계화 프로젝트(R&D)	6,150	-	-	-	6,150	6,150	-	-	8,200
- 경제동물용의약품 및의료기기국산화 기술개발(R&D)	6,375	-	-	-	6,375	6,375	-	-	8,500
- 노지스마트농업활용 모델개발(R&D)	6,750	-	-	-	6,750	6,750	-	-	9,275
-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 기반관리기술개발(R&D)	4,312	-	-	-	4,312	4,312	-	-	7,063
-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 기술개발(R&D)	1,500	-	-	-	1,500	1,500	-	-	2,000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11,531	-	-	-	11,531	11,531	-	-	12,461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원 기획평가관리비 (R&D)	6,187	-	-	-	6,187	6,187	-	-	5,892

※ 자료: 농식품부 제출('26년 신규사업은 사업명 별도 미기재)

나) 검토의견

(1) 기술료 회수실적 및 사업화성과 관리 필요

□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자체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기술료가 실제로 징수되고 해당 기술이 제품화·매출 등 후속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14]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범위, 기술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15]은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체결된 정액기술료 계약은 636건이고 계약금액은 95억 700만원임.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 국가 R&D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R&D 전문관리 기관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 계약에서 2025년 말까지 실제 징수된 계약별 누적 기술료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경상기술료 계약의 예정액·발생액·회수액도 계약 단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 2021~2025년 정액기술료 계약 현황 】

(금액 단위: 백만원)

계약체결연도	계약 건수	계약금액	계약별 누적 회수액
2021	78	535	자료 미보유
2022	159	2,851	
2023	74	1,139	
2024	225	2,989	
2025	100	1,993	
합 계	636	9,50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그런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별도로 제출한 세부사업별 종료과제 성과표를 보면, 2020~2024년 종료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계약 893건·계약금액 102억 3,787만원과

함께 실제 회수액 81억 9,889만원(계약금액의 80.1%)이 세부사업 단위로 집계되어 있음.

즉, 실제 회수실적이 성과자료로는 일정 부분 집계되고 있음에도 이를 개별 기술실시계약의 계약금액·납부조건 및 실제 징수액과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성과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고,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수행하므로, 전문기관이 계약별 누적 회수액을 직접 산정·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기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 것과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및 보고하는 기술료 정보를 성과관리 목적으로 수집하여 계약정보와 연계하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제출과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16)]

같은 규정 제29조제2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성과의 활용·관리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17]

즉, 기술실시계약과 기술료 징수에 관한 정보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전문기관으로 보고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전문기관이 기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술실시계약과 실제 기술료 회수실적을 연계하여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의 사업화성과의 측정 범위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화금액을 내수매출과 수출매출로만 관리하고 있어 기술이전 수입, 비용절감 및 후속투자 등 다른 형태의 경제적·산업적 성과는 현재의 사업화성과 관

16)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0조(연구개발기관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연구개발과제 연차·단계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서 등 제출
6.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8.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9. 연구윤리 준수

17)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리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매출은 사업화의 중요한 결과지표이나, 기술개발의 목적과 성숙단계에 따라 기술이전·실증·비용절감·후속투자 등 매출 이전 또는 비매출 형태의 성과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조지표로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기술실시 계약별 기술료 회수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후속 제품화·매출 등 사업화성과와 연계·추적함으로써 기술이전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화금액을 내수·수출매출로만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기술이전 수입 및 기술료 회수액, 실증·인증·허가, 비용절감, 후속투자 등 실제 발생한 성과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상하고, 특히 이미 집계되고 있는 기술료 회수실적은 사업화성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반복되는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비율에 해당하는 정부지분기술료 60% 이상을 참여연구자 보상금에, 15% 이상을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에, 10% 이상을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의 보상금에 각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비율 미준수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2022년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내역상 총 111개 과제 중 63개 과제(56.8%)가 사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기관의 징수 기술료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사용비율이 준수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음.[18)]

18)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사용 비율 미준수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

2021~2025년 미준수 계약은 334건이고, 법령상 최소 사용액에 미달한 금액은 13억 7,911만원에 이름.

특히, 2025년 적용대상 계약 111건 중 종전 기준(50% 이상)이 적용되는 2024년 12월 30일 이전 체결계약은 25건 중 22건(88%)이 법정 사용비율을 미준수하였고,

개정 기준(60% 이상)이 적용되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체결계약은 86건 중 54건(62.8%)이 법정 사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1~2025년 기술료 법정 사용비율 미준수 및 미달액 현황 】

(단위: 천원)

기술료 사용연도	적용대상 계약	미준수 계약	미준수 비중	법정 최소사용액 대비 미달액
2021년	134	83	61.9%	210,629
2022년	130	96	73.8%	441,030
2023년	88	47	53.4%	228,106
2024년	39	32	82.1%	123,137
2025년	111	76	68.5%	376,209
합계	502	334	66.5%	1,379,11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구자 보상금의 법정 사용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12월 30일까지 체결된 기술실시계약에는 50% 이상, 2024년 12월 3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는 60% 이상을 각각 적용하여 미준수 여부 및 미달액을 산정함.

□ 더욱이, 연도별 총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정 사용비율이 충족되지 않고 있음.

참여 연구자 보상금 사용비율은 2023년 47.6%, 2024년 43.3%, 2025년 49.5%로 종전 법정기준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 역시 6.2%, 8.3%, 4.2%로 법정기준 10%를 밑돌고 있음.

법정 최소 사용비율의 합계가 75~85%인 점을 고려하면, 재투자·기관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정부지분 기술료의 15~25% 이내여야 하나, 실제 사용비율은 30.6~35.7%로 나타나고 있음.

【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지분기술료 총액 기준 사용비율 】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지분 기술료	참여 연구자 보상금	기술이전·사업화·지식재산권	성과활용 기여 직원 보상금	재투자·운영비 등
2023년	1,141	**47.6%**	12.9%	**6.2%**	**33.3%**
2024년	630	**43.3%**	12.7%	**8.3%**	**35.7%**
2025년	1,585	**49.5%**	15.7%	**4.2%**	**30.6%**
법정 최소 비율	–	**50%(60%)**[19]	15%	**1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19) 2024년 12월 31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여연구자 보상금의 법정 사용비율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기술실시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50% 기준이 적용됨.

이는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등에 기술료가 적정하게 환원되도록 규정한 법정 사용비율의 미준수가 일부 기관 또는 개별 과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료의 배분·관리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함.

□ 한편, 기술료 사용비율의 미준수 원인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 또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1~2025년 법정 사용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334건에 대하여 미준수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상금 미지급이 보상대상자 부재나 지급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결과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료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 보고 단계에서 기술실시계약별 적용기준과 실제 용도별 사용액을 확인하여 법정 사용비율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미달액의 처리 및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 미준수가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점검 등 관리조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개정(2026. 7. 28. 개정, 2027. 1. 1. 시행)[20]으로 기술료의 용도 구분이 통합되어 ‘성과활용 기여직원 보상금’ 사용비율 미달로 인한 미준수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 규정은 보상금의 두 용도(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직원 보상금)를 통합하면서 그 하한을 정부지분기술료의 70% 이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보상금 총액에 관한 기준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님.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3년간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직원 보상금 합계는 2023년 53.8%, 2024년 51.6%, 2025년 53.7%로 개정 기준에 따를 경우에도 16.2~18.4%p 미달함.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개정사항」**(시행일 2027.1.1.)

기 존	개정(2026.7.28.)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략)..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중략)..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 와 기술이전·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기관운영경비 등 :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다만, 100분의 1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규정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변경된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시행 이후에는 보상금 총액 기준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미준수 비율이 실질적으로 낮아지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3) 장기 미활용 특허 관리 미흡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제1항 및 제5항[21]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관련 정보의 공개·연계 및 추가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한 추적조사를 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22]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제5항·제6항 및 제8항[23]은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농

---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3)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획지원과제의 경우 및 제17조에 따라 해약된 과제는 제외한다.
⑥ 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적조사 및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제7항[24]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까지 규정하고 있음.

이는 권리의 포기가 아니라 미활용 성과의 활용 주체를 전환하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구종료 후 5년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임.

즉,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훈령을 통하여 5년 이상 미활용 특허를 이미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양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전문기관이 장기 미활용 특허의 처리에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제30조제5항에 따라 5년간 제출되는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하여 제7항의 요건인 기술실시계약 미체결 여부를

---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소유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특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3조를 따른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리대상을 식별할 자료도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특허별 등록연도와 활용 여부에 관한 자료는 관리하고 있는 반면,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장기 미활용 관리대상 현황을 식별하고 양도 여부 검토 등 후속조치 내역을 관리하는 데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주체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장기 미활용 특허의 현황 및 후속조치를 전문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원칙에 부합하나, 연구개발기관이 특허를 소유·관리하는 것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성과활용 촉진을 위하여 특허의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장기 미활용 특허를 추적·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어느 특허가 장기간 기술실시계약 없이 남아 있는지를 식별하지 못할 경우 추적조사, 활용 가능성 점검 및 양도 필요성 검토 등 후속 관리수단을 적시에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즉, 문제의 핵심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상 관리·조치가 필요한 장기 미활용 특허를 선별하고, 그 후속조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보체계가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음.

□ 실제로, 2021~2025년 등록특허 2,619건 중 2025년 말까지 활용실적이 확인된 특허는 446건에 불과하였고, 비교적 관찰기간이 충분한 2021년 등록특허도 530건 중 439건(82.8%)이 약 4~5년이 경과하도록 활용실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등록연도별 특허의 2025년 말 기준 누적 활용 현황 】

등록연도	등록특허	활용특허	누적 활용률	미활용특허	미활용률	관찰기간
2021	530	91	17.2%	439	82.8%	약 4~5년
2022	454	90	19.8%	364	80.2%	약 3~4년
2023	571	113	19.8%	458	80.2%	약 2~3년
2024	493	74	15.0%	419	85.0%	약 1~2년
2025	571	78	13.7%	493	86.3%	1년 미만
합 계	2,619	446	17.0%	2,173	83.0%	상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다만, 등록연도만으로는 운영규정상 '연구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미활용 특허 중 실제 후속조치 검토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의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소관 R&D 특허 관리에 있어 과제 종료시점과 특허별 활용정보의 연계가 미흡하여 운영규정상 장기 미활용 관리대상을 적시에 선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자체 보유 중인 소관 R&D 특허 중 등록 후 5년 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를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파악 및 관리하고 있으며,

【 농촌진흥청 연도말 유효 보유특허 활용 현황 】

(단위: 건, %)

기준연도	기준연도 말 유효 보유특허(A)	활용특허(B)	활용률(B/A)	미활용특허 (C=A-B)	등록 후 5년 이상 장기 미활용(D)	장기 미활용률 (D/A)
'21년 말	4,321	1,943	45.0	2,378	1,322	30.6
'22년 말	4,468	2,030	45.4	2,438	1,434	32.1
'23년 말	4,584	2,127	46.4	2,457	1,565	34.1
'24년 말	4,776	2,226	46.6	2,550	1,702	35.6
'25년 말	4,916	2,299	46.8	2,617	1,717	34.9

※ 자료: 농촌진흥청 제출

2025년 12월에는 장기 미활용 특허 중 745건을 대상으로 기술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200건을 추출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50건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특허에 대해서는 2026년 농업기술박람회 및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집중 홍보하고, 기술마케팅·기술설명회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장기 미활용 특허 추진 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25년 12월 장기 미활용 특허(745건)를 기술등급평가(AI 활용)하여 상위 200건을 추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50건을 선정하여, 2026년 농업기술박람회(6월),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7월) 집중 홍보 **(추진계획)** 2026년 12월까지 온라인/오프라인 기술마케팅/홍보(6회), 테마별 기술설명회(3회), 수요자 맞춤형 기술마케팅 추진(3회) 예정임

□ 한편, 2021~2025년 등록특허의 2025년 연말까지의 누적 활용률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은 38.7%인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에 그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록특허 누적 활용 현황 비교 】

구분	2021~2025년 등록특허	2025년 말까지 활용특허	누적 활용률
농림축산식품부	2,619	446	17.0%
농촌진흥청	1,536	595	38.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제출

양 기관은 연구분야와 성과의 소유·관리구조가 달라 이러한 차이를 특허의 관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장기 미활용 특허를 별도로 식별·평가한 후 기술수요자 발굴과 마케팅 등 활용촉진 조치로 연계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리방식은 미활용 특허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활용 보고와 특허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특허별 권리유효 여부, 기술실시계약 체결 여부 등 활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특허를 별도로 식별·관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기술수요자 발굴, 기술마케팅 및 운영규정에 따른 양도 여부 검토 등 필요한 활용촉진 조치로 연계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후속 R&D 기획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5)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의 일반관리비 편성·정산 관행 개선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에 편성·집행한 일반관리비는 정부 승인 없이 인건비 등에 지출되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소지가 있고, 내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도록 편성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반관리비 편성·집행 절차를 점검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회계연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사업, 융자사업 등을 위하여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지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부터 4조 2,3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4조 2,374만원을 집행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회계·기금별 정부 재정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총 계	4,239,347	4,237,410	4,695,214
일반회계	202,420	202,420	199,06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48,424	1,546,693	1,174,6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15,873	615,873	643,622
농지기금	1,840,924	1,840,908	2,645,571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60	1,060	2,0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0,646	30,456	30,328

나) 검토의견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회계연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3개의 보조사업(내역사업 기준)에 대한 보조금 1,656억원 8,1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보조금에 일반관리비 36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 및 집행하였음.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사업의 일반관리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국가계약법」[25]의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사업비(직접비·인건비·경비)에 일정 비율(6% 이내)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산 시에는 실제 지출액이 아닌 보조금의 집행률에 따라 총액을 계상하여 정산한다고 설명함.

【 한국농어촌공사 2025회계연도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집행액		
	사업비 (인건비, 경비 등)	일반관리비	(집행률)	사업비 (인건비, 경비 등)	일반관리비
165,681	162,016	3,665	161,297 (97.4%)	157,632 (97.3%)	3,665 (100.0%)

*주) 일반관리비가 편성된 내역사업 23개의 합계액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그러나, 이러한 보조사업의 일반관리비 편성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먼저,** 일반관리비를 정부 승인 없이 인건비 등 비용 부족분 보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볼 소지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26)]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의 202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농촌경제활성화지원기관운영" 사업은 편성된 일반관리비 6억 7,600만원을 해당 사업의 인건비 부족분에 사용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일반관리비를 직접적인 사업비에 지출하면서도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 일반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사업코드) -내역사업	일반관리비 편성	일반관리비 지출	
			일반관리비	직접 사업비
1	□농산물안전성조사(6032-301) ○농경지중금속오염조사	23	22	사업비 7 인건비 2
2	□농촌용수관리(4038-310) ○지하수자원관리	149	144	직접비 5
3	□농촌경제활성화지원(4130-300) ○농촌경제활성화지원기관운영	676	0	인건비 676
4	□농촌공간계획 및재생지원(4160-431)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0	19	경비 1
5	□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공익기능증진직불	41	40	직접비 1
합 계		909	225	68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일반관리비를 사업에 대한 지원기능(계약·회계·감사·인사 등)에 소요되는 간접원가로 사용하겠다는 편성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승인없이 직접적인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관련 지침[27]에 따라 총인건비 관리 대상으로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연간 인상률이 통제(2025년 3.0%)되고 있으며,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일반관리비를 정부의 승인 없이 인건비에 사용하게 된다면, 총인건비 통제 밖에서 인건비를 증액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의 일반관리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이 준수되고 있지 아니함.

“맞춤형농지지원활성화” 사업의 경우, 보조금 4억 2,000만원은

27)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기획재정부)

6p	1. 인건비 □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31p	○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

직접사업비 3억 7,800만원과 일반관리비 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관리비가 직접사업비의 11.1% 수준임. 이는 공사가 준용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한도(6%)를 초과하여 편성·집행된 것으로 보임.

또한, "농촌경제활성화지원기관운영" 사업은 보조금 총액이 34억 5,100만원인데 일반관리비를 6억 7,600만원 편성하여 일반관리비가 해당 내역사업의 24.4% 비중에 달하며, 일반관리비 산출을 위한 사업비에 해당사업이 아닌 다른 세부사업까지 포함하여, 세부사업별로 경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내역사업 중 일반관리비 비중(10% 초과)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보조금 총액(사업비)			
		보조금 총액 (A+B)	직접 사업비 (A)	일반 관리비 (B)	일반관리비 비율 (B/A)
맞춤형농지지원 (1160-350)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420	378	42	11.1%
농촌경제활성화지원 (4130-300)	농촌경제활성화 지원기관운영	3,451	2,775	676	24.4%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제출

아울러 지출에 대해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금(직접 사업비)의 집행률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정산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집행내역은 보조금 전체 집행률이 97.4%인 반면, 일반관리비는 편성된 전액(100%)을 집행하고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일반관리비가 승인 없이 인건비 등의 지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편성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편성 및 정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식품산업인프라강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차별화 검토 필요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제도는 취지 및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일부 중첩되고 있어 중복지원 및 재정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사업은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정보 제공, 기술이전 활성화, 농업과의 연계 강화 등 기초 인프라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22억 6,000만원 중 22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28)]

【 2025회계연도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식품산업인프라강화	20,510	-	1,750	22,260	22,232	-	28	17,986
- 식품판로지원	2,193	-	-	2,193	2,193	-	47	2,193
- 식품표준화	2,484	-	-	2,484	2,484	-	-	2,484
-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	4,545	-	-	4,545	4,545	-	-	4,815
- 그 밖에 내역사업	11,288	1,750	-	13,038	13,010	-	135	8,494

2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식품산업인프라강화(2832-38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식품판로지원”의 하위 내역사업인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①)”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402개 업체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지정된 기관은 판매관 입점지원, 박람회 등 참가지원, 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②)” 제도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제조업, 재화 또는 용역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려는 제도임.

동 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778개 업체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사업자는 판매관 입점지원, 박람회 등 참가지원, 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29)「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제도 비교】

구분	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②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소관	농식품부 식품정책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보조 사업자	aT	한국농어촌공사
대상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및 식품제조업체 또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제공하는 농업인 등
지원 내용	1) 판로확대 ① 전용판매관 입점 지원 ② 박람회 참가 지원 2) 금융지원 - 시설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융자 80% 자부담 20%)	
2025 예산	○ 제도운영 및 판로확대 지원: 12억원 ○ 융자지원: 220억원	○ 제도운영 및 판로확대 지원: 4.6억원 ○ 이차보전(지자체): 71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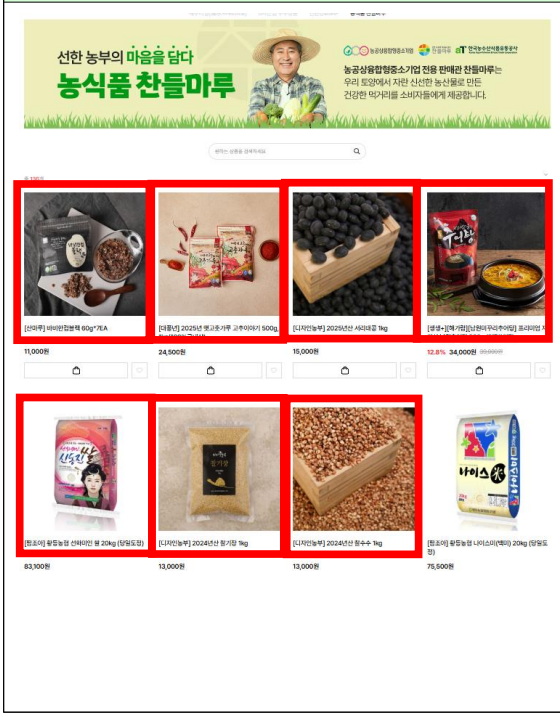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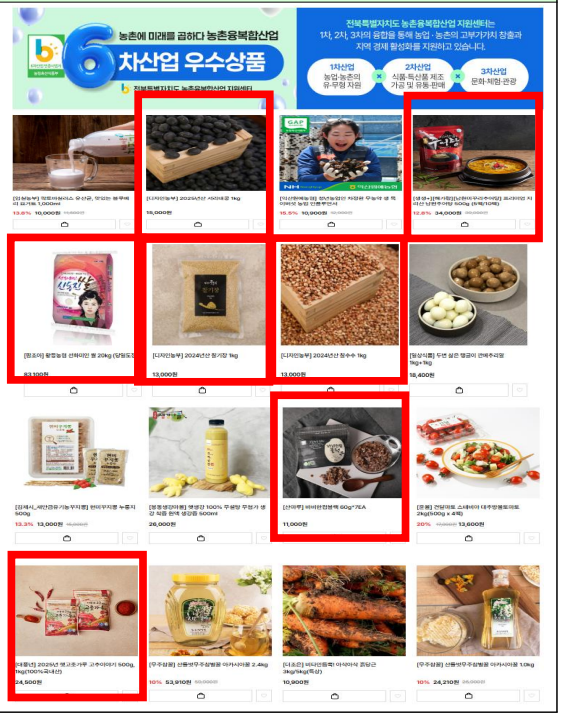
그런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①)”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②)”는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융합하기 위한 사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지원대상이 일부 중첩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2025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①)”으로 48개 사업자가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이 중 23개 사업자(47.9%)가 이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②)”로 등록되어 있음.

둘째, 2025년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①)”으로 판로개척 지원을 받은 24개 사업자 중 9개 사업자(37.5%)가 같은 해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②)”로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판로개척 사업 또한 지원받았음.

셋째, 일부 온라인판매점에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①)” 및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②)”에 대한 판매 상품을 각각의 페이지에 구분하여 노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품목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음.

【 온라인판매점 지원대상 중첩 현황(예시)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②)
	

※온라인판매점 브랜드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찬들마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6차산업 우수상품
※자료: 전북생생장터 홈페이지 참고

□ 이처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첩된다면 ① 동일한 사업자가 두 제도로부터 유사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어 한정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② 별개의 보조사업자(aT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③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융합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의 브랜드 효과가 분산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 제도 간의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첩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양 제도가 각각 운영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차별화, 중복 지원 배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수리시설유지관리: 목적 외 사용 수입 확보 노력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업용수의 정상적인 공급을 전제로 목적 외 사용을 통한 추가적인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566억 4,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30]

【 2025회계연도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리시설 유지관리	156,644	-	-	156,644	156,644	-	-	156,078

30)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수리시설유지관리(4037-306)

나) 검토의견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31] 등에 따라 저수지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한편, 이들 시설을 통하여 공사관리지역[32] 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을 통해 공사관리지역 내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평균 1,570억원대 규모의 예산을 공사에게 보조금으로서 교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5년 평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151,800	151,800	160,909	165,300	156,644	157,29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31)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3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사가 수행하는 수리시설 관리 및 농업용수 공급 기능은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공적 기능이자 공사의 주요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기능[33]이므로,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국가 보조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공사의 주요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안정적 수입 기반 확보를 위하여 공사 자산을 활용한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보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노력이 가능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허가 수입으로 보임.

공사는 2025년 기준 전체 관리 저수지 3,428개소 중 344개소의 저수지에서 목적 외 사용허가를 통한 수입을 획득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수상레저·낚시·내수면어업·농업 외 용수 및 수변 데크 등 기타에 해당함.

3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 발생 저수지 현황(2025년 기준) 】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목적 외 사용허가 수입 발생 저수지					
			수상 레저	낚시	내수면 어업	농업 외 용수	수변데크 등 기타
저수지 수	3,428 (100.0)	344 (10.0)	28 (0.8)	106 (3.1)	50 (1.5)	52 (1.5)	164 (4.8)

※ 주: 하나의 저수지가 여러 사용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들 344개소의 저수지에서는 158억 8,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는 「농어촌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34] 이를 유지관리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음.

【 저수지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 현황(2025년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수입					
		수상 레저	낚시	내수면 어업	농업 외 용수	수변데크 등 기타
사용료 수입	15,880 (100.0)	613 (3.9)	1,198 (7.5)	221 (1.4)	12,001 (75.6)	1,846 (11.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34)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즉, 사용료 수입은 공사가 유지관리 사업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수행기반 확보와 국가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저수지는 공사 관리 저수지 중 10.0% 수준에 불과함.

그러나, 만약 공사가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이 본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수지별 입지·시설여건·안전성·수질·민간 수요 및 추가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실시한다면,

공사 자체 수입 재원을 강화하여 공사 사업의 재무적 기반을 안정화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농업용수의 정상적인 공급을 전제로 목적 외 사용을 통한 추가적인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8) 농업협상대응: 국외업무여비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협상단경비지원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를 2025년 본예산 3억 9,000만원에 1억 8,0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5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3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에도 미달하였고, 전용액보다 많은 2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국외출장 수요 파악 및 재원 마련 시 출장의 확정도와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되는 전용·불용 실적을 본예산 편성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국제통상지원 서비스 만족도는 국제농식품협력관 직원 46명 중 12명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26.1%에 그쳤고,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산출되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충분한 유효응답을 확보하는 한편, 응답자 구성·산식·원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하여 성과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협상대응 사업은 WTO·FTA 등 농업분야 협상 및 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지원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효과적인 협상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43억 8,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2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45억 4,100만원 중 4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35)]

3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농업협상대응(5031-301)

【 2025회계연도 농업협상대응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협상대응	4,389	152	-	-	4,541	4,068	28	445	2,851
- 협상단경비지원	797	-	-	-	797	488	-	308	797
- 국제협력협상 관련연구용역	700	152	-	-	852	804	28	20	629
- 국제통상지원	1,966	-	-	-	1,966	1,915	-	51	450
- SPS연구위원 운용	426	-	-	-	426	361	-	66	475
- FTA협상지원시스템	500	-	-	-	500	500	-	-	5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1) 국외업무여비 자체전용 후 반복된 불용 개선 필요

□ 농업협상대응 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상단 경비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 협상, 양·다자 국제협력 등의 대응에 필요한 여비, 임차료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9,700만원 증가한 7억 9,700만원임.

【 2019~2025년 협상단경비지원 예산 추이 】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08	806	806	713	673	700	79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동 사업은 2025년 예산 7억 9,700만원 중 4억 8,8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61.2%에 그쳤는데, 불용액 3억 800만원 중 국외업무여비 2억 900만원이 전체 불용액의 약 67.9%를 차지하였음.

【 2025년 협상단경비지원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5년 집행	불 용	집행률
협상단경비지원	797	488	308	61.2%
-국외업무여비	570	361	209	63.3%
-기타 비목 소계	227	127	99	55.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최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연도 후반에 자체전용이 이루어졌음.

【 2023~2025년 국외업무여비 전용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전용일	전용액	조정 후 예산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3	293	9.21.	160	453	451	2	99.6%
2024	293	9.30.	150	443	394	49	88.9%
2025	390	**10.30.**	**180**	570	361	209	**63.3%**

※ 3개 연도 모두 농업협상대응 사업 일반수용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자체전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3년·2024년에는 전용 후 집행률이 각각 99.6%, 88.9%에 이르러 전용액 대부분이 실제 출장수요로 이어졌으므로, 일정 규모의 추가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025년에는 본예산 자체가 전년보다 9,700만원(33.1%) 증가한 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10월 30일 다시 1억 8,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5억 7,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3억 6,1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보다도 2,900만원 적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용액보다 2,900만원 많은 2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 국외출장 계획 대비 집행 현황 】

출장별 계획액	실집행액	계획 대비 미집행액	비 고
567	361	206	전액 미집행 16건 + 일부 축소 1건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6건의 출장·협상 일정이 취소·연기·서면협의·영상대응·국내개최 등으로 전액 미집행되었고, 1건은 일부 일정이 취소되어 계획 대비 총 2억 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2025년 협상단 경비지원 사업 국외출장 취소 현황 】

회의(협상)명	일정	계획액 (백만원)	실집행액 (백만원)	(취소·온라인 전환) 사유
제91차 WTO SPS 위원회	'25.3월	18	-	협상 여건 변화로 양국 간 양해에 따라 일정 재협의
호주 산양 수입 관련 검역협의	'25.5월	8	-	서면협의로 대체되어 출장 미실시
싱가포르 한우 수출 양자 면담	'25.6월	6	-	서면협의로 대체되어 출장 미실시
제92차 WTO SPS 위원회	'25.6월	18	-	국내 긴급현안 발생으로 영상대응 전환
한-태국 EPA 제5차 공식협상	'25.4월	8	-	직전 협상에서 SPS분과 타결되어 참석 인원 변동(4명→1명)
한-세르비아 EPA 제1차 공식협상	'25.6월	20	-	협상 여건 변화로 양국 간 양해에 따라 일정 재협의
한-뉴질랜드 FTA 농수산협력위	'25.상반기	8	-	뉴질랜드 측에서 차년도로 일정 연기
한-뉴질랜드 FTA 농수산협력위	'25.하반기	20	-	뉴질랜드 측에서 차년도로 일정 연기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한미캐 3자회의	'25.10월	12	-	캐나다 측 예산 상황에 따른 회의 연기 요청으로 차년도로 연기
제48차 CODEX 총회	'25.11월	13	-	제93차 WTO SPS 위원회, 제9차 한-뉴 FTA SPS위원회 대응 및 국내 현안업무로 영상대응으로 전환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참석	'25.11월	4	-	국내 현안 발생으로 출장 취소
OECD 공동연구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참석	'25.12월	12	-	국내 현안 발생으로 출장 취소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참석	'25.11월	4	-	'26.1월로 일정 연기
한-세르비아 CEPA 제1차 공식협상 참석	'25.11월	30	-	한국 개최로 변경
한-EU GIWG 회의 참석	'25.11월	6	-	협상 여건 변화로 양국 간 양해에 따라 일정 재협의
식량원조 현지 점검 및 전수식	'25.11월	16	-	국내 현안 발생으로 출장 취소
라오스 관개 기술 교육센터 조성사업,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센터 역량강화지원사업 준공식 및 이양식	'25.12월	6	3	국내 현안 대응을 위해 출장 계획 축소
합계		209	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자체전용 실시 이전인 2025년 8월에 이미 아시아 매미나방 선박검사 한·미·캐 3자회의(1,200만원)는 차년도로 연기되었고,

제48차 CODEX 총회(1,300만원)도 영상대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되어 합계 2,500만원의 미집행 사유가 확인된 상태였음.

이 밖에도, 상반기 또는 10월 이전 개최가 예정되었던 다수의 협상·회의가 이미 취소 등의 사유로 미실시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초의 출장계획을 기준으로 전용을 하기보다는 남은 두 달 동안 실제 집행이 가능한 출장수요를 다시 선별하여 추가 소요액을 산정하여야 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제45조[36]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경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37]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사업 간의 유사성과 시급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3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전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용된 재원이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전용 시에는 잔여기간의 실제 집행가능성과 추가 소요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국제협상과 회의는 상대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확정도, 초청장 수령, 대표단 구성 및 항공권 발권 가능시점 등을 기준으로 추가 소요를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실소요에 따라 전용을 실시하였여야 했음.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계획을 기준으로 1억 8,000만원을 일괄 전용하였고, 그 결과, 전용액보다도 2,900만원이 많은 2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전용 당시 추가 소요액의 산정과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문제는 2025년에 한정되지 않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외업무여비로의 자체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용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의 지출계획을 회계연도 중 변경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반복적인 재원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본예산 편성과 전용 심사에 반영하여 계획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외업무여비 등 예산의 전용에 앞서 예정출장을 확정·유력·잠정 등으로 구분하고, 회의 개최 및 대표단 구성이 확정된 수요를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 금액만 단계적으로 전용하는 등 전용 당시의 집행가능성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3~2025년의 출장수요, 전용 규모, 전용 후 집행률·불용률 및 취소·온라인 전환 현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본예산 편성과 전용기준에 환류하되, 확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본예산을 초과하면 본예산을 현실화하고, 전용 후 불용이 반복되면 연도 후반 전용의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반복적인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조사 대표성 확보 및 성과자료 검증절차 마련 필요

□ 농업협상대응 사업은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기존 성과지표[38]가 사업목적과 내역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통상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지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농식품협력관 직원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12명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26.1%에 그쳤으며, 해당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77.3점을 산출하였음.

【 2025년 국제통상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현황 】

(단위: 명, %, 점)

모집단	응답자	응답률	만족도 점수	조사설계상 미확인 사항
46명	12명	26.1	77.3점	실제 이용 여부·직군·이용빈도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지표는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용을 이용자 관점에서 직접 측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만족도 조사결과를 사업의 성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38) 「해외농업정보 수집·전파 활성화 고객만족도」

첫째, 2025년 조사는 국제농식품협력관 소속 직원 전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면서 설문조사 대상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같은 부서 직원이라도 담당업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서 소속 여부만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면 이용 경험이 없는 직원의 응답이 만족도 산정에 포함되어 성과지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사결과의 타당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둘째, 2025년 조사는 모집단이 46명으로 협소하였고, 이 중 12명만 응답하여 응답률도 26.1%에 그치는 등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음.

응답자 1명이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하여 소수의 평가에 따라 평균점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미응답 34명의 만족도가 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산출된 77.3점이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를 안정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성과지표 측정 시 조사 모집단을 국제농식품협력관 소속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통상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관계 부서·기관 등의 실제 이

용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유형·이용빈도·직군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응답자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응답률을 확보하고, 조사대상 선정기준, 응답 현황, 문항별 원자료 및 점수 산출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함으로써 만족도 조사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9) 국제기구분담금·국제기구분담금(ODA): FAO 한국협회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분담금의 반복적 미납으로 인한 국제기구 권리 제한 방지 필요 등

○ FAO 한국협회에 대한 6억 6,200만원의 연례적 지원에는 협회 고유의 민간협력사업과 정부 국제회의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사무 성격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의무적 국제기구분담금과 성격이 다른 보조금 사업이 동일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왔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별 성격에 맞게 수행·예산편성 방식을 정비하고, 협회 지원의 불가피성·정책효과·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지원의 존속 여부와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분담금은 회원국 지위에 따른 의무적 경비임에도 2021~2025년 다수 국제기구에서 차년도까지 미납이 반복되었고, 2025년에는 국제설탕기구(ISO)가 미납에 따른 표결권 제한 가능성을 직접 예고하였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기구별 납부기한과 권리 제한 등 불이익을 사전에 관리하고 부족액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재원조정 수단을 조기에 검토하여 분담금의 미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국제기구분담금과 국제기구분담금(ODA)은 동일한 달러·유로 표시 분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서로 다른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였고 실제 납부환율은 두 사업의 편성환율을 모두 상회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일 통화에는 가급적 동일한 기준시점·산정기준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예상 부족액을 사전에 점검하여 환율변동이 반복적인 미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은 ASF·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식물품종 보호 및 종자자원 확보 등 농업 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분담금 납부의무 이행을 통해 국격 제고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31억 2,300만원에 이전용액 1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32억 2,300만원 중 3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음.[39]

【 2025회계연도 국제기구분담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기구분담금	3,123	-	100	-	3,223	3,217	-	6	3,409
- 국제기구분담금	2,461	-	100	-	2,561	2,555	-	6	2,747
- FAO한국협회지원	662	-	-	-	662	662	-	-	66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국제기구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사회의 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강화, 국격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283억 9,100만원에 이전용에 의한 감액 1억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282억 9,100만원 중 28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40]

【 2025회계연도 국제기구분담금(ODA)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기구분담금(ODA)	28,391	-	△100	-	28,291	28,288	-	3	30,327
- 국제기구분담금(ODA)	28,391	-	△100	-	28,291	28,288	-	3	30,32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39)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제기구분담금(5031-530)
4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국제기구분담금(ODA)(5031-531)

나) 검토의견

(1) FAO 한국협회에 대한 연례적 재정지원의 필요성 재검토 필요

□ FAO 한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우리나라의 FAO 국가위원회[41]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FAO 이념의 국내 보급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농업정책 동향 및 정보 분석, FAO 회의 의제 모니터링, 정책포럼 및 세계 식량의 날 기념행사 등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협회는 FAO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의 의제와 회원국 논의 동향을 분석·모니터링하는 등 정부의 국제회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협회가 수행하는 정보 분석과 실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41) FAO 제6차 총회 결의사항 (1951년)

□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중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42]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한 급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국가 정책상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로 편성하되, 사업의 성격이 민간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것이라면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3]

---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3)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02, 104**
14. 민간보조 사업
1. 적용대상
□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 이와 관련하여 FAO 한국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한 사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44]

FAO 이념의 국내 보급, 국제 농업정책 자료의 발간·제공, 정책포럼 및 세계 식량의 날 행사 등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른 자체적인 정보교류·국제협력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익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도 FAO 등 국제 농업 기구와의 농업협력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45]

○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2. 세부지침
○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 →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요구

44) 국가사무의 전문적 수행을 지원·대행하는 성격의 업무와 1951년 FAO 총회 결의에서 규정한 FAO 국가위원회의 연락·정보보급·민관협력 등 고유기능, 그리고 협회 설립목적에 따른 기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4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실장)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기획조정실장) ④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FAO 국제회의 의제 분석, 대표단 발언자료 정리, 논의 동향 수집·분석 등 정부의 공식 교섭·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여야 할 국제기구 대응업무를 협회가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성격이 강함.

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당 업무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국가사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범위와 산출물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수행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 지원사업의 세부 업무별 성격과 수행목적을 검토하여 협회의 자체적인 정보교류·민간협력 사업은 그 필요성과 공익성을 검토한 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되,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이 수행하여야 할 국가사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는 국제농식품협력관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사업비' 등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FAO 한국협회 지원사업을 국제기구분담금 세부사업에 편성한 예산구조도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협회 지원예산은 2009년부터 국제기구분담금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왔으나, 국제기구분담금은 의무적·경직성 경비인 반면, 협회 지원금은 국내 민간단체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재량적·정책적 경비임.

집행대상·지급근거·사업수행 방식 및 성과관리 방법이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내용과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국가재정법」 제21조 및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부터 협회 지원사업을 국제기구분담금에서 분리하여 농업협상대응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변경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FAO 국제회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 발간·정책포럼·기념행사 및 민간 국제교류 등 농업협상대응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사업의 소속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협회의 전체 업무를 세분하여 각 업무가 농업협상대응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거나 업무의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FAO 한국협회에 대한 연례적인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지원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46]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47]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법령 및 예산의 목

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적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방식·규모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그 지원규모가 실제 수행업무와 성과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에 대하여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제절차에 불과할 뿐, 협회에 매년 6억 6,200만원 규모의 국비를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현행 지원규모가 적정한지 자체를 입증하는 설명으로 보기는 어려움.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특히, 협회의 업무 중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제기구 대응업무 또는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의 기능과 유사한 만큼,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회의 전문성과 사업실적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가 무엇인지, ②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③ 협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발생하는 정책적 공백이 무엇인지, ④ 각 사업별 비용에 상응하는 정책적 성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FAO 한국협회 및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업무 현황 】

FAO 한국협회(KFA)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PLO)
○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 '51년 FAO 총회 결의에 따른 '국가위원회' 역할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치 - 일본 등 59개국에 설치	기본개념	○ FAO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 FAO 사업 추진의 협력기관·기금 마련 등을 위한 FAO의 '해외 사무소'(국제기구)로 설치 - 한국,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멕시코(7개국)에 설치
○ **FAO 총회 등 국제회의 모니터링 및 정부 지원** - 회의의제 검토, 정부 미참석 회의내용 종합 등 ○ **국제기구 및 주요국 농림수산식품 정보·정책자료 수집·국내 전파** - FAO, IFAD, OECD, CIE, APEC, UPOV, EU, 미국 등 ○ **국제회의·세미나 개최 지원** - FAO 아태지역총회, FAO·APEC·ADB 워크숍,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등 ○ **농식품분야 해외 일자리 창출** - OASIS 인턴사업,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 **국제농업 관련 연구용역 실시** - 북한 등 체제전환국가 농업변화 분석, 해외농업 개발사업 추진 중간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등 ○ **국민의 이해·인식 제고 활동** - 세계식량의 날, 세계 식품 안전의 날, GIAHS 등 ○ **국제기구 주요 간행물 및 월간지 발간·배포** ○ **개도국 농촌개발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 - 방글라데시 농촌개발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농업개발협력사업 등	주요업무	○ **FAO와 한국정부 간 협력 확대** - 식량안보·빈곤퇴치를 위한 협력·교류 확대 - 한국정부, 비정부기관 등에 FAO 목표·기능·역할 등 정보 제공 - 한국의 식량농업정책, 법안, 사업 등 FAO 보고 ○ **국내 유관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기회 확대** - 한국기업·대학·시민사회 등을 통해 FAO 사업 재원 확보 - 한국의 경험과 기술, 모범 사례 등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 ○ **FAO 관련 국내 행사 개최 및 지원** - 식량안보 관련 국내·외 행사 공동 개최
○ **설립근거 : FAO 총회 결의사항(19/51)** ○ **설립 : 1957년 12월 10일** ○ **재원 : 정부 보조, 회비 등**	기타사항	○ **설립근거 : 한-FAO 간 협정** ○ **설립 : 2019년 9월 25일** ○ **재원 : FAO 예산, 한국정부 협력자금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협회·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 간 업무분장표를 마련하여 협회만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협회 지원사업의 존속 필요성, 협회 지원의 대체불가성, 사업별 정책효과 및 비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협회 고유사업의 공익성, 국가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별 정책 활용성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다른 기관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축소·조정하고, 협회에 대한 지원의 존속 여부 및 지원예산의 적정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국제기구분담금의 반복적 미납으로 인한 권리행사 제한 방지 필요

□ 국제기구분담금은 우리나라가 해당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적 경비로서, 일반적인 재량지출과 달리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월하는 방식으로 지출수요 자체가 해소되는 경비가 아님.

특히, 국제기구별 협정이나 규정은 일정 수준 이상 분담금이 미납될 경우 회원국의 의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담금의 적기 납부는 단순한 회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내에서 회원국으로서 권한과 영향력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음.

【 국제기구별 분담금 미납 시 불이익 규정 】

국제기구	근거 규정	미납·산정 기준	주요 불이익	비 고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	세계동물보건기구 기본규정 General Rules 제5조	미납 분담금 총액이 당해 연도 + 직전 연도에 납부할 분담금 총액을 초과	• **총회 의결권 행사 불가** • **의결권이 인정된 대표에게만 총회 대표·대리대표 수당 지급**	회원국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사정 또는 신속한 체납금 납부 보증이 있는 경우 총회가 예외 승인 가능
국제설탕기구 (ISO)	국제설탕협정 International Sugar Agreement 제18조·제26조	① 납부기한 후 4개월까지 전액 미납 → 집행이사가 납부 요청 ② 요청 후 2개월 추가 미납	• **이사회 및 행정위원회 표결권 정지 (전액 납부 시까지)** • **전액 납부 전 행정위원회 참여 자격 없음** • **2년분 미납 시 회원권 제한 가능**	2년분 미납의 경우 이사회가 특별투표로 회원권 정지 및/또는 예산분담 부과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 (자동 제재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사항)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AO 헌장 제3조 제4항 FAO 일반규정 Rule XXII 제5항	체납액이 직전 만 2년간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	• **총회 투표권 상실** • **이사회(Council) 피선거권 제한**	총회가 미납이 회원국의 불가항력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면 투표권 허용 가능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IFAD 설립협정 Article 6, Section 3 이사회 절차규칙 Rule 40	Contribution votes는 실제 납부한 분담금(paid contributions)에 비례하여 산정 또한 회계상 미납금 설정 여부를 기준으로 이사회 자격 제한	• **미납 시 기여분 의결권 감소** • **분담금 관련 회계상 미납금이 설정된 회원국은 이사회 구성원 선출·재직 자격 제한**	WOAH·FAO·ISO와 달리 특정 체납액 도달 시 일률적 표결권 정지라기보다 실제 납부액에 따른 의결권 감소와 이사회 자격 제한 구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재구성

위 표와 같이 WOAH·ISO·FAO는 일정 수준 이상 미납 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권을 정지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IFAD는 실제 납부액에 따라 기여분 의결권이 감소하며 회계상 미납금이 설정된 회원국은 이사회 구성원 자격이 제한됨.

□ 이와 같이 다수의 국제기구가 분담금 미납 시 의결권 제한 등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담금 미납은 특정 연도나 특정 국

제기구에 한정된 일회성 사례가 아니라, 최근 수년간 여러 국제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1~2025년 주요 미납 사례를 보면, AARDO는 분담금 인상분 미반영으로 차액이 5년간 누적되었고, WOAH·IFAD·IPPC·IGC·ISO·ITPGRFA에서도 6개월~1년 6개월의 차년도 납부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FAO는 2년 연속 차년도 납부가 발생하였음.

【 2021~2025년 주요 국제기구분담금 장기 미납 사례 】

국제기구	미납기간	주요 내용
AARDO	**5년**	분담금 인상분 미반영으로 차액 누적
WOAH	**1년 6개월**	특별기여금 예산 반영 시차
IFAD	**최대 1년 1개월**	이후에도 6개월·11개월 미납 발생
IPPC	**11개월**	차년도 납부
FAO	**최대 11개월**	연속적으로 차년도 납부 발생
IGC·ISO·ITPGRFA	**6개월**	차년도 납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미납은 2025회계연도에도 계속하여 발생하였음. WOAH·ISO·FAO·IFAD 등 4개 기구에서 미납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미납액은 모두 2026년 3월 30일에야 납부 완료되었음.

【 2025년 말 주요 국제기구분담금 미납 현황 】

기구	통화	납부 필요액	2025년 납부액	미납액	후속조치
WOAH	EUR	663,464	521,220	142,244	2026.3.30. 완납
ISO	GBP	77,425	67,645	9,780	
FAO	USD	8,579,109	8,474,833	104,276	
FAO	EUR	5,959,927	5,113,341	846,586	
IFAD	USD	5,915,769	4,700,000	1,215,76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더욱이, 2025년에는 분담금 미납에 따른 회원국 권리 제한 가능성이 단순한 제도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제기구의 경고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하였음.

ISO는 2025년 7월 25일 우리나라의 미납 분담금 9,780파운드에 대하여 표결권 제한을 예고하면서 조속한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미납액은 회계연도 내 납부되지 못하고 2026년 3월 30일에야 납부되었음.

표결권 제한 가능성을 직접 통보받은 이후에도 미납 상태를 차년도까지 지속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내 의사결정 참여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를 적기에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은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는 만큼, 분담금 미납으로 오히려 의결권 등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이 제한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동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납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 부족과 함께, WOAH 특별기여금과 같이 예산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분담금이 있어 예산에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으로, 예산편성 이후 신규 고지나 급격한 환율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됨.

그러나, 최근 수년간 다수 국제기구에서 반복적으로 미납이 발생하였고, 특히, AARDO는 인상분을 5년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환율변동이나 예산편성 이후의 신규 고지 등 일시적·예외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오히려 국제기구별 분담금 변동 가능성과 납부시기, 환율변동 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주무부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25년 FAO와 IFAD 등의 미납액을 2026년 3월에 모두 납부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26년 FAO 분담률 감소 등에 따라 ODA 분담금 예산에 재원 여유가 발생한 영향도 있었으므로,

다른 분담금의 감소로 발생한 재원 여유에 의존하여 전년도 미납액을 해소하는 방식은 반복적 미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납 시 불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별 분담금의 연간 납부일정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고지액과 환율을 반영하여 부족예상액을 갱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납 시 의결권 등 권리 제한 가능성이 있는 분담금은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재원 조정수단을 조기에 검토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제기구 내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분담금의 적기 납부와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동일 통화 의무분담금에 대한 예산편성 환율의 정합성 제고 및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국제기구분담금은 외화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편성 시점과 실제 납부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라 필요한 원화예산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겠으나, 동일한 통화로 지급하는 의무분담금의 경우에는 환율 산정의 기준일·자료원·산정방식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족 가능성을 공통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2025년 국제기구분담금과 국제기구분담금(ODA)은 동일한 달러 및 유로 표시 채무를 지급하면서도 서로 다른 예산편성 환율을 적용하였음.

일반 국제기구분담금은 달러당 1,346.8원, 유로당 1,452.93원을, 국제기구분담금(ODA)은 각각 1,380원·1,490원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납부환율은 두 사업 모두 달러당 1,429.5원, 유로당 1,626.51원이었음.

즉, 동일 통화 분담금에 서로 다른 환율로 예산을 산정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기준도 실제 납부환율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

【 2025년 국제기구분담금의 예산편성·실제 납부환율 】

사업	통화	예산편성 환율	실제 납부환율	차이	상승률
국제기구분담금	USD	1,346.8	1,429.5	+82.7	+6.1%
	EUR	1,452.93	1,626.51	+173.58	+11.9%
	GBP	1,700.34	1,913.31	+212.97	+12.5%
	CHF	1,493.79	1,736.04	+242.25	+16.2%
국제기구분담금 (ODA)	USD	1,380	1,429.5	+49.5	+3.6%
	EUR	1,490	1,626.51	+136.51	+9.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일반 국제기구분담금의 유로·파운드·스위스프랑은 실제 납부환율이 편성환율을 각각 약 11.9%, 12.5%, 16.2% 상회하였고, ODA 사업의 유로 역시 약 9.2% 높았음.

외화지출 비중이 큰 의무분담금에서 이 정도의 환율 차이는 예산부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도 FAO와 IFAD 미납의 원인을 예산 반영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사업의 편성환율이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 국제기구분담금은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국제기구분담금(ODA)은 행정외교예산과 소관으로 각각의 부서가 서로 다른 기준환율을 공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행정적 경위에 대한 설명일 뿐, 기획재정부의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사실이 동일한 달러·유로 채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동일한 외화지출임에도 사업별로 상이한 기준환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 소요액과 부족가능액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두 사업의 외화지출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는 2026년 예산편성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2026년의 경우 달러 기준환율은 두 사업 모두 1,380원으로 일치하였으나, 유로 기준환율은 국제기구분담금 1,587원, 국제기구분담금(ODA) 1,594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두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용 환율을 사전에 조정·점검하여 동일 통화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일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불가피하게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정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0)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 종료과제의 성과 추적관리 및 연구기획 환류 강화 필요 등

○ 검역본부는 2020~2025년 종료과제 394개 중 379개(96.2%)에 대해 종료 이후 사업화 성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고, 사업화 완료로 분류한 과제에서도 실제 기술료 회수액과 제품화·현장활용 등 후속성과의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검역본부는 종료과제의 후속성과를 과제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후속 연구과제의 기획·조정 및 성과관리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 검역본부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 특허 228건 중 기술 노후화·대체기술 출현·시장성 부족 등의 사유가 확인된 특허도 모두 '유지'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보유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관리방향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검역본부 외부 신규 연구과제는 높은 단독응모 비율[2021~2025년 95개 중 60개(63.2%)]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검역본부는 참여제한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구조적으로 경쟁이 곤란한 과제와 경쟁 확대가 가능한 과제를 구분하는 한편, 공고방식·자격요건 등의 개선 결과를 다음 연도 과제기획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5년 R&D 예산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R&D) 1개 세부사업, 8개의 세부내역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제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기초기반기술, 인수공통전염병 제어 등 동물질병 분야, 식물검역기술개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복지기술개발 등 검역·방역 기술분야, 국제공동선도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협력 분야 투자를 위해 총 417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99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600만원을 이월, 17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48)]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연구개발(R&D)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R&D 사업	41,787	-	-	-	41,787	39,934	116	1,737	44,778
-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41,787	-	-	-	41,787	39,934	116	1,737	44,778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관 국가 R&D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연구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나, 가축질병 진단키트 및 백신 개발 등 기술의 민간 협력 및 현장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서는 산업체 공동 연구 및 용역과제를 보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연구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검역본부 훈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R&D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중 2020~2025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394개이고, 이들 과제에 투입된 시험연구비는 970억 9,700만원임. 이 가운데 2025년 말까지 사업화성과가 확인된 과제는 15개이며, 확인된 사업화금액은 7억 8,400만원임.

48)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6234-300)

나) 검토의견

(1) 종료과제의 성과 추적관리 및 연구기획 환류 강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는 연구 종료 시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개별 산출물을 집계하는 데 그치기보다,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원이 어떠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후속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성과개선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49)]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구개발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

---

4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함)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50]

이에 따라,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제12조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나 제17조의 추적조사 제도를 검역본부 사업에 직접 적용하여 성과관리 의무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는 검역본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의 관리·활용 자체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제7호[51]는 연구개발성과의 활

---

5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5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

용·사업화 촉진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5호[52]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제6항[53]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인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역본부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 따라서, 검역본부는 연구과제의 종료와 함께 특허·기술이전 등 성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과 성과가 실제 정책·검역현장 또는 산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성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후속 연구기획과 성과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5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⑥ 연구관리부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0~2025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394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보급 등과 관련한 조사는 실시한 반면,

사업화 성과를 조사한 과제는 15개(3.8%)에 불과하고, 나머지 379개(96.2%)는 사업화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종료과제(2025년)를 제외한 2020~2024년 종료과제만 보더라도 337개 중 322개(95.5%)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이고, 종료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2020~2022년 종료과제 189개 중에서도 175개(92.6%)가 여전히 미조사 상태임.

또한, 성과가 확인된 15개 과제의 사업화금액 7억 8,400만원도 모두 기술이전 계약·약정금액으로, 기술이전 이후 실제 제품화, 매출 발생, 비용절감 또는 현장활용 등 후속성과가 파악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종료연도별 사업화 성과 확인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종료연도	종료과제	성과 확인	미조사	시험연구비[54]	기술이전 계약액
2020	53	3	50	11,640	390
2021	60	8	52	13,411	323
2022	76	3	73	18,002	67
2023	80	1	79	17,562	4
2024	68	0	68	19,179	0
2025	57	0	57	17,303	0
합계	394	15	379	97,097	784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자료

□ 이에 대하여 검역본부는 검역·방역·진단법·위해평가 등 직접 수행 과제의 상당 부분은 민간 매출이나 제품화보다 정책·공익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산업기술 R&D와 동일한 사업화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종료과제의 활용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성과 추적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물론, 검역본부의 이와 같은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화 금액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검역본부 R&D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공익·정책형 연구가 많다는 사정이 종료 이후 해당 연구의 성과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작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5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관 R&D를 시험연구비로 편성·집행

실제로, 검역본부는 산업체 공동연구의 기술이전 성과, 연구시설 공동활용에 따른 시험비용 절감액, 백신 상용화 시기 단축 효과 등을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 단위로 대외에 설명하고 있음.[55]

□ 이는 검역본부 R&D에서도 기술이전·비용절감 등 활용성과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제시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업 특성상 사업화·활용성과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매출 중심의 지표'가 적합하지 않은 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기획 단계에서 연구성과의 진단·검사업무 및 방역지침 반영 여부, 진단키트·표준물질 보급실적, 검사시간·정확도 개선, 수입대체 효과 등 연구목적에 맞는 후속 성과지표와 확인자료를 미리 설정하였어야 했음.

또한, 주관연구기관이 외부기관인 종료과제 89개에서도 사업화성과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종료 이후 성과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검역본부 자체 수행과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56]

---

55) 감사원도 설득한 'K-방역 승부수'…ASF 백신 세계무대 띄운 검역본부(머니투데이, 2026.07.22.)
56) 검역본부는 외부과제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전수·보급 등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검역본부는 향후 종료과제뿐 아니라 이미 미조사 상태인 과제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마련하되,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0~2022년 과제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과제를 공익·정책활용형, 현장보급형, 기술이전·사업화형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성과지표와 증빙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실제 활용 여부와 부진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조사결과를 차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계속·확대·조정 여부, 신규과제 기획 및 예산배분에 환류하고, 외부기관 수행·참여과제에 대해서도 과제유형별 성과보고 및 사후관리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점검하여 연구개발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장기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체계적 재평가 필요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관리 및 활용 촉진은 지식재산처가 관장하되, 권리 포기 시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57]

따라서, 발명기관인 검역본부도 특허의 실제 활용성과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 유지·활용·정리 판단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검역본부의 유효특허는 2021년 428건에서 2025년 521건으로 93건(21.8%) 증가하였으나, 활용특허는 같은 기간 91건에서 110건으로 19건 증가하는 데 그쳐 활용률은 21.3%에서 21.1%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음.

반면, 5년 이상 미활용 특허는 163건에서 228건으로 65건(3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57)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의 관장) 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관리(심판·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
제9조의2(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지식재산처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연도말 유효 보유특허 활용 현황 】

(단위: 건, %)

연도	유효특허	활용특허	활용률	5년 이상 미활용	장기 미활용률
2021	428	91	21.3	163	38.1
2022	450	90	20.0	177	39.3
2023	482	97	20.1	191	39.6
2024	495	105	21.2	207	41.8
2025	521	110	21.1	228	43.8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 2020년까지 등록된 5년 이상 미활용 특허 228건 중 국내특허는 215건, 해외특허는 13건이고, 국내특허의 주요 미활용 사유는 방어적 보유 필요 68건, 시장성 부족 61건, 기술이전 대상기업 발굴 중 39건 등임.

그런데, 기술 노후화 10건, 대체기술 출현 13건뿐만 아니라, '권리 포기 예정'으로 분류된 특허 1건까지 있음에도, 검역본부의 향후 처리계획은 국내·해외 특허 모두 전건 '유지'한다는 입장임.

【 장기 미활용 특허의 주요 미활용 사유 및 처리계획 】

(단위: 건)

구분	5년 이상 미활용	주요 미활용 사유	처리계획
국내	215	대상기업 발굴 39 / 후속연구 17 / 방어적 보유 68 / 시장성 부족 61 / **기술 노후화 10** / **대체기술 13** / **포기 예정 1** / 기타 6	전건 유지
해외	13	대상기업 발굴 6 / 후속연구 1 / 방어적 보유 5 / 시장성 부족 1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 이에 대하여 검역본부는 질병 진단·검역·방역 등 공공안전 분야의 특허가 많아 일반 산업기술보다 민간 사업화 수요가 제한되고, 국가에 속하는 국내 특허는 특허료가 면제되므로 장기 보유에 따른 직접적인 유지비 부담도 크지 않으므로, 전건 유지한다는 입장임.

이러한 주장과 같이 검역·방역 분야의 공공성과 제한된 민간수요를 감안할 때 단순한 기술이전률 비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장기 미활용 특허를 동일하게 '유지'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됨.

또한, 국내 국가직무발명특허의 경우 특허료가 면제되더라도 장기 미활용 특허의 지속적인 보유·관리에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한편, 해외 등록특허 13건은 모두 5년 이상 미활용 상태인데, 검역본부는 해외 등록특허의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처와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해당 권리의 존속 여부와 연차등록료 등의 실제 발생 여부 및 그 부담주체를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역본부는 등록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미활용 특허에 대해 활용실적, 잔여 권리기간, 정책적 필요성, 기술성숙도·노후화, 대체기술 출현 여부, 민간수요 및 해외특허 유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유 필요 특허, 집중적인 기술이전·개방이 필요한 특허, 권리 유지 필요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특허 등으로 관리방향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미 미활용 사유가 조사된 228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유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에 제공 및 논의하여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유지·활용·처분에 관한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신규 연구과제의 반복적 단독응모에 대한 과제기획·공모방식 개선 필요

□ 검역본부가 외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유형에 따라 공고와 평가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3조는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체 공동연구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공고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모·평가 절차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수행기관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경쟁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복수의 적격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기획과 공고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검역본부 외부 신규 연구과제의 단독응모율은 2021년 57.7%, 2022년 68.8%, 2023년 60.0%, 2024년 68.8%, 2025년 64.7%로, 지속적으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음.

5년간 신규 공모·선정한 95개 과제 중 60개(63.2%)가 단독응모였고, 총 응모건수는 147건으로 과제당 평균 경쟁률은 약 1.5대 1임.

【 신규 연구과제의 공모 경쟁성 현황 】

(단위: 개, %)

연도	신규 공모·선정	총 응모	단독응모	단독응모율	경쟁률
2021	26	42	15	57.7	1.6
2022	16	21	11	68.8	1.3
2023	20	32	12	60.0	1.6
2024	16	22	11	68.8	1.4
2025	17	30	11	64.7	1.8
합계	95	147	60	63.2	1.5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단독응모 자체만으로 해당 과제의 선정이 부적정하다거나 연구수행의 질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신규 공모과제의 60% 이상에서 단독응모가 5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과제의 특수성만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러한 현상이 구조적인 수행기관 제약에서 비롯된 것인지, 과제기획이나 공고방식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검역본부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 생물안전등급 시설, 검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기관이 제한되어 특정 연구주제에서는 단독응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물론, 전문시설과 인력의 제약은 일부 연구주제에서 단독응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검역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최다 수행기관은 경북대학교·건국대학교·경상국립대학교·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최다 수행기관의 연도별 신규과제 비중도 11.5~20.0% 수준에 그쳤으며, 과제기획 단계에서 잠재 수행기관을 사전에 검토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 단독응모 현황(50% 이상) 및 최다 수행기관 】

○ '21~'25년 신규과제 기준 (단위: 개, %, 백만원)

연도	세부 사업명	신규 공모·선정 과제수	단독응모 과제수	단독 응모 비율 (%)	시험 연구비	공모 방식	최다 수행 기관명	최다 수행 기관 신규 과제수	최다수행 기관 비중(%)	단독응모 발생사유
'21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26	15	57.7	3,163	지정공모(사전검토X)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	11.5	특정 연구 인프라 보유기관 쏠림현상
'22년	〃	16	11	68.8	1,846	지정공모(사전검토X)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3	18.8	〃
'23년	〃	20	12	60.0	3,054	지정공모(사전검토X)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4	20.0	〃
'24년	〃	16	11	68.8	2,341	지정공모(사전검토X)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	12.5	〃
'25년	〃	17	11	64.7	1,425	지정공모(사전검토X)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	17.6	〃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또한, 2025년 신규과제의 경우 대학 주관 9개 과제 중 7개(77.8%), 중소기업 주관 7개 과제 중 4개(57.1%)가 단독응모로, 대학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단독응모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관연구기관 유형별 분포 】

○ ('25년 신규+계속 과제 기준) (단위: 개, %, 백만원)

기관 유형	과제 수	과제 비중 (%)	시험 연구비	시험 연구비 비중(%)	신규 응모 건수	신규 공모·선정 과제수	단독응모 과제수 (응모기관 1개)	단독응모 비율(%)
대학 (국·공립 ·사립)	**23**	**60.5**	**2,891**	**58.4**	**14**	**9**	**7**	**77.8**
중소기업	**11**	**28.9**	**1,403**	**28.4**	**12**	**7**	**4**	**57.1**
부설·소속 기관	1	2.6	395	8.0	-	-	-	
기타 (협회·재단 등)	3	7.9	259	5.2	4	1	0	0.0
합 계	38	100.0	4,948	100.0	30	17	11	64.7

※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

□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례적으로 높은 단독응모 비율 현상 전체를 수행 가능 기간의 제한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검역본부에 따르면, 5개 연도 모두 단독응모 발생 사유로 검역·방역 R&D의 특수성과 특수 인프라·전공 인력의 한계라는 유사한 설명이 반복되고 있는데,

검역·방역 R&D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단독응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다면 과제별로 실제 참여 가능한 기관이 몇 곳인지,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시설인지 전문인력인지 또는 과업범위·자격요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과제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그럼에도 검역본부는 과제기획 단계에서 어떠한 사전검토도 선행하지 않은 채, 연례적인 높은 단독응모율이 특수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어 과제기획·공모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검역본부는 향후 외부 수행기관을 공모하는 신규 연구과제의 기획 단계에서 잠재 수행기관의 수와 전문분야, 필수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시설 공동활용 가능성, 과업범위 및 참가자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과제와 전문시설 등의 제약으로 참여기관이 제한되는 과제를 구분하여 공모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쟁이 가능한 과제는 공고 전 과제정보의 사전 안내,

관련 학회·협회 등을 통한 공고 확산 및 연구시설 공동활용 등을 통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단독응모가 반복되는 과제는 과업범위·참가자격·필수시설 요건 등 참여제한 요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러한 조치 이후 경쟁 전환 여부와 신규 참여기관 현황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 과제기획에 환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경쟁이 곤란한 과제와 공모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7조 4,15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조 3,523억 7,900만원 등 14조 4,212억 5,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 증가 등으로 17조 5,495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농어촌특별세 9조 2,132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조 4,313억 3,100만원, 전년도이월금 6,520억원 등 총 17조 5,420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부족 및 납기 미도래 등으로 인해 74억 9,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하여 농어촌특별세, 전년도이월금, 계정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으며,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감소하였다는 점임.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예산액은 7조 4,15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증권거래세 증가 등으로 수납액은 9조 2,132억 5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조 7,979억 500만원 증가하였음.

전년도이월금 및 계정간전입금은 2024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으로서 전년도이월금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6,520억원, 계정간전입금은 6,08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의 경우 예비비 배정 등으로 789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융자원금 상환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393억 1,1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농어촌특별세	**7,415,300**	**9,213,205**	**9,213,205**	**-**	**-**	**1,797,905**
재산수입	**7,729**	**20,158**	**19,951**	**-**	**207**	**12,222**
토지대여료	-	-	-	-	-	-
기타민간이자수입	1,205	1,054	1,054	-	-	△151
기타재산이자수입	6,524	19,104	18,897	-	207	12,373
경상이전수입	**120,088**	**137,523**	**130,263**	**-**	**7,260**	**10,175**
과태료	6	7	7	-	-	1
과징금	-	581	-	-	581	-
위약금	71	74	74	-	-	3
가산금	-	4	-	-	4	-
법정부담금	-	△108	△108	-	-	△108
기타경상이전수입	120,011	136,965	130,290	-	6,675	10,27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0**	**251**	**222**	**-**	**29**	**△28**
면허료및수수료	199	185	185	-	-	△14
기타잡수입	51	66	37	-	29	△14
관유물매각대	**23**	**23**	**23**	**-**	**-**	**-**
기계기구매각대	12	1	1	-	-	△11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	20	20	-	-	16
재고자산매각대	1	2	2	-	-	1
유동자산매각대	6	-	-	-	-	△6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58,621**	**19,310**	**19,310**	**-**	**-**	**△39,311**
전년도이월금	**-**	**652,000**	**652,000**	**-**	**-**	**652,000**
전년도세계잉여금	**-**	**-**	**-**	**-**	**-**	**-**
일반회계전입금	**4,352,379**	**4,431,331**	**4,431,331**	**-**	**-**	**78,952**
기금전입금	**-**	**-**	**-**	**-**	**-**	**-**
계정간전입금	**2,466,868**	**3,075,756**	**3,075,756**	**-**	**-**	**608,888**
합 계	**14,421,258**	**17,549,558**	**17,542,061**	**-**	**7,497**	**3,120,803**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조 6,040억 1,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조 6,119억 7,700만원, 예비비 834억 1,000만원이 반영되어 예산현액은 14조 2,994억 300만원으로 증가함.

예산현액 중 계정간거래 3조 757억 5,600만원, 회계기금간거래 2조 9,095억 900만원, 농가경영안정 2조 1,611억 9,900만원, 회계간거래 1조 6,747억 3,1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조 5,958억 4,200만원 등 총 14조 32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종자관리 43억 9,100만원, 축산업진흥및동물복지향상 21억 2,200만원, 농업신산업육성 10억원 등 80억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공사 지연, 설계용역 기한 미도래 등임.

또한, 회계기금간거래 2,232억 400만원, 농가경영안정 138억 900만원 등 총 2,592억 3,0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함.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가경영안정	1,884,452	290,590	-	18,296 △18,296	-	2,175,042	2,161,199	34	13,809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300,077	-	-	-	-	300,077	300,755	-	2
양곡관리	75,393	-	-	-	-	75,393	73,903	-	1,490
농업신산업육성	311,156	1,052	-	-	-	312,208	306,049	1,000	5,159
식품외식산업육성	381,715	1,750	-	-	-	383,465	382,609	-	856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343,193	-	-	-	480 △480	343,193	338,743	-	4,450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72,408	21	83,410	-	-	155,839	153,211	2,122	506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관리	271,970	806	-	1,073 △1,073	2,285 △2,285	272,776	267,499	-	5,277
농업생산기반정비	1,257,844	338,000	-	-	-	1,595,844	1,595,842	-	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570,605	-	-	-	1 △1	570,605	569,810	-	795
농산물품질관리	95,201	-	-	22 △22	982 △982	95,201	93,860	-	1,341
농림축산검역검사	33,460	82	-	100 △100	1,287 △1,287	33,542	32,712	181	649
종자관리	42,890	485	-	108 △108	480 △480	43,375	37,452	4,391	1,532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59,358	285	-	-	23 △23	59,643	59,170	317	157
회계간거래(전출금)	1,304,713	370,018	-	-	-	1,674,731	1,674,731	-	-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3,132,713	-	-	-	-	3,132,713	2,909,509	-	223,204
계정간거래(전출금)	2,466,868	608,888	-	-	-	3,075,756	3,075,756	-	-
합계	**12,604,016**	**1,611,977**	**83,410**	**19,599 △19,599**	**5,539 △5,539**	**14,299,403**	**14,032,129**	**8,044**	**259,230**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실적 저조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품목별 가입실적과 보험료 수준, 재해위험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가입률을 설정하고 실제 가입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농가가 재해를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농가의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가축재해보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8,019억 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96억 8,700만원 및 전용액 △76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39억 2,600만원 중 8,175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음.[58)]

5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재해보험(1031-300)

【 2025회계연도 농업재해보험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재해보험	801,929	29,687	△7,690	823,926	817,563	-	6,363	887,089
-농작물재해보험	484,182	29,687	107,469	621,338	621,338	-	-	501,741
-가축재해보험	109,930	-	7,107	117,037	117,037	-	-	110,167
-농업수입안정보험	207,817	-	△122,266	85,551	79,188	-	6,363	275,181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음.

농업수입안정보험사업은 농업인이 보험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순보험료의 50%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부가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078억 1,700만원이나 1,222억 6,600만원을 내역조정하여 예산현액 855억 5,100만원 중 791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6,300만원은 불용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2025년 예산 편성 당시 9개 본사업 품목 전체에 목표가입률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예상 순보험료를 산출하고, 여기에 국고 지원비율 50%를 곱한 보험료 지원액 1,757억원과 운영비 지원액 306억원 등을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편성 근거 】

(단위: 백만원)

편성 근거
수입안정보험: ('24) 8,100백만원 → ('25) 207,817백만원 (+199,717, 2,465.6%) *** 대상품목/본사업 품목 : ('24) 9개/0개(가입률 1% 수준) → ('25) 15개/9개(가입률 25% 수준)** - (산출) 보험료 지원 175,739 ('25년 예상보험료 351,477 × 국고지원비율 50%) + 운영비 지원 30,578('25년 예상 보험료 351,477 × 운영비 편성비율 8.7%) + 수입파악 기반구축 1,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러나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9개 품목 중 목표가입률 25%를 초과한 품목은 가을감자(28.7%)와 보리(46.8%)의 2개 품목에 불과하며, 시범사업 품목을 포함하여도 25%를 초과한 품목은 가을감자, 고랭지감자, 보리, 가을무 등 4개 품목에 불과함.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의 가입률 현황 】

(단위: ha, %)

구분	품목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면적	가입면적	가입률
본사업	고구마	15,173	1,369	9.0
	콩	64,646	13,920	21.5
	양배추	8,209	1,387	16.9
	가을감자	1,912	549	28.7
	양파	18,050	3,267	18.1
	마늘	21,321	3,660	17.2
	포도	12,770	305	2.4
	옥수수	14,167	400	2.8
	보리	23,174	10,856	46.8
시범사업	봄감자	1,935	315	16.3
	고랭지감자	1,290	401	31.1
	감귤(만감류)	3,324	44	1.3
	가을무	444	114	25.8
	가을배추	2,497	566	22.7
	단감	2,877	151	5.3
	복숭아	4,692	7	0.2
	벼	35,646	6,828	19.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은 가입실적 부진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실제 집행액은 예산액의 38% 수준에 머물렀고, 예산액의 58.8%인 1,222억 6,600만원을 다른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1,151억 5,900만원)과 가축재해보험(71억 700만원)으로 내역변경하였음.

【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내역변경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2.24.)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 안정보험)	320-01	115,159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320-0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가
내역변경 (2025.12.24.)	농업재해보험 (농업수입 안정보험)	320-01	7,107	농업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320-01	가축재해보험 가입 증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와 같은 가입실적 부진 및 내역변경은 품목별 가입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목표가입률을 설정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농업수입안정보험은 품목별 재배 특성, 자연재해 노출 정도 및 가격 변동성 등에 따라 보험 가입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편성 당시 모든 본사업 품목에 동일한 목표가입률 25%를 적용하였음.

또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넓은 반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재배 품목, 지역별 특성 및 농가의 위험회피 성향 등에 따라 실제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품목별 가입 수요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품목별 가입실적과 보험료 수준, 재해 위험 및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목표가입률을 설정하여 실제 가입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농업자금이차보전: 신규 내역사업의 사전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정책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세부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은 신규 내역사업 중 다수의 사업에서 융자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정책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사업지침 마련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신규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은 융자수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정책목표를 적기에 뒷받침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농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790억 1,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59]

【 2025회계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60]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자금이차보전	682,500	188,829	7,690	879,019	879,019	-	-	729,661
- 이차보전금	682,500	188,829	7,690	879,019	879,019	-	-	729,661

59)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자금이차보전(1038-301)

60) 본예산은 6,818억 7,8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 당시 후계농업인육성자금 3,0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해 이차보전액 6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한 추경예산은 6,825억원임.

나) 검토의견

(1) 신규 내역사업의 사전 검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25년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은 29개 내역사업(농업종합자금, RPC운영자금, 농축산경영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에 6,825억원 규모로 운영되었음.

‘농업자금이차보전’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16개 내역사업 2,914억원 규모였으나, 매년 1,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내역사업이 추가되어 2026년 예산 기준으로는 27개 내역사업에 예산규모는 7,297억원에 이르렀음.

【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 확대 추이 】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백만원)	291,367	451,942	557,722	682,500	729,661
내역사업 수(개)	16	23	27	29	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이와 같이 추가되고 있는 내역사업 중에는 융자실적이 전무한 사업이 다수 있어 사업수요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우선, 2025년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①청년2막자금, ②농산업 수출업체 제조시설 현대화, ③농산업 수출업체 운영지원 등 3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총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하기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청년2막자금 사업의 경우 융자금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산업수출업체제조시설현대화, 농산업수출업체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융자계획액 200억원 대비 56억원(28%) 규모의 신청이 있었으나, 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출이 미실행되어 신규 내역사업의 실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신규 내역사업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자금명	지원대상	이차율	융자기간	계획액	신청액	융자액
청년2막자금	농식품 전후방 기업 중 8년차 이상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	2.09	3년거치 일시상환	20,000	-	-
농산업수출업체 제조시설현대화	농기자재 수출 기업	1.09	3년거치 7년상환	5,000	1,043	-
농산업수출업체 운영지원	농기자재 수출 기업	1.09	1년거치 일시상환	15,000	4,550	-

*주: 이차율은 예산수립 기준(기준금리 4.09%) 평균 이차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또한, 2023년 신규 편성된 '해외곡물망확보'와 2024년 신규 편성된 '쌀가루원료구매자금'은 사업 편성 이후 2025년까지 융자가 전혀 실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쌀가루원료구매자금'에서는 융자의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곡물망확보 및 쌀가루원료구매자금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자금명	지원대상	이차율	융자기간	계획액	신청액	융자액
해외곡물망 확보	곡물 유통업체 등	2.44	5년 거치 10년 상환	50,000	- ('23년 500억원 신청)	-
쌀가루원료 구매자금	가루쌀 원료 사용업체	1.09	1년 거치 일시상환	25,000	-	-

*주: 이차율은 예산수립 기준(기준금리 4.09%) 평균 이차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와 같이 저조한 융자 집행 실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 여건상 정책 수요가 부족했던 점과 사업 초기 인지도 부족 등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61)]

'청년2막자금'의 경우 지원조건(농식품 전후방기업 중 8년차 이상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을 충족하는 기업이 제한적이고 자금 용도도 시설개보수 자금에 한정(운전자금 미지원)되어 사업 수요가 낮았고,

'해외곡물망확보'는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해외터미널 신규 매물이 부족하고 해외사업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여 곡물업체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쌀가루원료구매자금'은 가루쌀 산업 육성 초기단계로 가루쌀 원료 수요가 높지 않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임.

61)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2막자금, 쌀가루원료구매자금은 2027년부터 폐지할 계획(해외곡물망확보는 2026년부터 폐지)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농산업 수출업체 제조시설 현대화’ 및 ‘농산업 수출업체 운영지원’의 경우 사업 초기 인지도 부족과 기업의 상환 부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정책수요 부족이라는 사유는 상당 부분 해당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정책적 배경과도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2023년 신규 도입된 ‘해외곡물망확보’ 사업은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수립된 「중장기식량안보 강화 방안(‘22.12.)」에서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저리융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음.

이에 공급망 불안으로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여 투자 유인이 위축될 가능성은 사업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러한 여건에서도 실제 융자가 실행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62]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 지원방식, 지원조건 등을 보다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62)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사업 추진 전 국내 대형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실제 융자를 신청하였으나 기업 내부 투자승인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중장기식량안보 강화 방안('22.12.) 】



□ 또한, 사업 초기 인지도 부족 등의 사유 역시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신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특히, 청년2막자금의 경우 사업지침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사업공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사업 홍보는 물론 신청을 위한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편성되고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당초 융자사업을 편성한 정책목적의 달성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정책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의 사업 규모,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사업지침 마련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신규사업이 당초 목적에 따라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에게 농지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대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경우 2025년 신청액은 1조 4,012억원이나 실제 융자액은 신청액의 72%인 1조 87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수요 대비 융자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신청 및 융자 현황 】

(단위: 백만원, %)

자금명	이자율	융자기간	계획액	신청액	융자액	융자액/신청액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1.5%	5년거치 20년상환	900,000	1,401,216	1,008,703	72.0

*주: 본예산 당시 융자계획액은 6,000억원 규모였으나 2025년 2회 추경 시 국회 심의단계에서 3,000억원 추가 공급 예산을 반영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그런데 동 사업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융자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융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간 동 사업은 수요 대비 충분한 융자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한 융자 규모보다 적은 수준의 융자 실행이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63]」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농을 2027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청년농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23년 4,000명, '24～'25년 각각 5,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리 인하(2%→1.5%), 상환기간 연장(10년→20년), 지원 한도 상향(3억원→5억원) 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융자 조건도 개선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변화로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융자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조기 소진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자금이 8월에 소진되어 정책을 신뢰한 청년농들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음.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 규모 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융자규모	405,000	405,000	405,000	800,000	800,000
융자실행액	323,832	372,524	384,618	916,187	897,592
자금 소진일	-	-	-	11.7.	8.20.

※자료: 감사원,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2026.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후계

6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융자규모가 수요 대비 부족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 대비 축소된 6,000억원 규모로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이 역시 신청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청년농 확대를 위한 핵심 지원수단인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 반복적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당초 법정계획을 통해 제시한 청년농 육성 목표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최근 발표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6.4.)」에 따르면 2025년 40세 미만 경영주 수가 13,691명으로 나타나,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인 21,300명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40세 미만 청년농 유입 계획('22.10월) 】

(단위: 명)

구 분	'22	'23	'24	'25	'26	'27
경영주 규모	12,400	14,700	18,000	21,300	25,600	30,000
자연이탈	-	1,700	1,700	1,700	1,700	1,700
신규유입	-	4,000	5,000	5,000	6,000	6,000

※자료: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

【 2025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

합계	40세 미만	40～49	50～59	60～69	70세 이상
1,241,819	13,691	54,835	194,826	430,880	547,587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6.4.)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차보전 사업의 정책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단계별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공사비 편성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5년 국비 85억 6,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설계 등 선행절차 지연으로 실제 공사가 2026년 7월에야 착공하면서 피보조기관 실집행률은 13.1%에 그치고 81억 800만원이 대규모 이월되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산 편성·교부 시 실제 사업단계와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교부함으로써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실집행률은 32.7%에 머물고 있고, 공정률도 약 5%로 연간 목표인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상당한 공정 진척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별 공정과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사업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구축 사업은 첨단 농업기계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 중인 농업기계의 성능·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85억 6,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64]

【 2025회계연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구축	8,566	-	-	-	8,566	8,566	-	-	10,123
-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구축	8,566	-	-	-	8,566	8,566	-	-	10,12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64)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1067-333)

나) 검토의견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첨단 농업기계 산업 육성을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개발 중인 농업기계의 성능·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검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100ha)으로, 사업 시행주체는 김제시이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예산은 85억 6,6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김제시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피보조기관 기준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7억 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3억 3,500만원 중 12억 2,700만원이 실집행되고 81억 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13.1%에 그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국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피보조기관 예산현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실집행률
8,566	769	9,335	1,227	8,108	13.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개요 】

□ **개요**

- ㅇ **(목표)** 고품질·고성능의 농기계 개발을 위해 개발 중인 농기계를 필드 테스트 할 수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새만금 농생명용지 100ha)
- ㅇ **(사업기간)** '23~'28년
- ㅇ **(시행주체)** 김제시(위탁시행: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ㅇ **(사업비)** 전체사업비 1,066억원[국비 714억원(67%), 지방비 352억원(33%)]
- ㅇ **(사업규모)** 100ha(실증시험단지 95ha, 실증지원센터 5ha)

□ **주요내용**

- ㅇ 개발 중인 농기계의 성능·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 구축
  * 논농업 및 밭농업에 투입되는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ㅇ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 ㅇ 개발한 농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 검·인증 시스템(장비, 시설 등) 구축

□ **추진현황 및 계획**

- ㅇ 사전타당성용역('18.9~'19.5) 완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20.8),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2.4), 신규사업 추진('23년~)
  * B/C 0.90, AHP 0.612 사업 타당성 인정
- ㅇ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기본계획 수립('23.12~'24.6)
- ㅇ 총사업비 협의('24.7~'24.12) → 실시설계 추진('24.12) → 기본계획 고시('25.1)
- ㅇ 실증부지 토목 설계 완료(~'25.9) 및 건축 설계 실시('25.10~'26)
- ㅇ 실증부지(토목) 공사 시공사 선정('26.5월) 및 착공('26.7월)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동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설계와 공사 등 사업단계별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각 회계연도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9조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을 타당성조사·설계·보상·공사 등 사업단계의 순서에 따라 요구·편성하도록 하고 있고,[65]

동법 제50조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의 사업규모·총사업비·사업기간을 미리 예산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66]

이는 선행단계에서 사업규모와 공사내용·사업비 등을 확정한 후 후속단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일정 지연에 따른 대규모 이월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동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러한 선행절차의 지연이 총사업비 협

---

65)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66)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의와 설계 등 후속단계에 연이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당초 기본계획은 2023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완료는 2024년 4월로 약 1년 지연되었고, 총사업비 심의 역시 당초 2023년 5~7월에서 2024년 5~7월로 약 1년 가량 늦어졌음.

이후 부지조성 설계 착수도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건축 기본·실시설계 착수는 약 1년 6개월 지연되었으며, 건축 설계 완료시점도 당초 2024년 11월에서 2026년 12월로 약 2년 늦춰지는 등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지연이 후속 공정 전반으로 누적·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 계획 일정 지연 경과 】

구분	최초 계획 ('23~'26)	현행 계획 ('23~'28)	비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	'23.2~'23.6	'23.11~'24.4	**5개월 지연**
기본계획 수립 완료	'23.4	'24.4	**1년 지연**
총사업비 심의	'23.5~'23.7	'24.5~'24.7	**1년 지연**
부지조성 설계 착수	'23.8~'24.4	'24.12~'25.8	**약 1년 지연**
건축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	'23.8	'25.3	**약 1.5년 지연**
건축 설계공모	'23.9~'23.11	'25.4~'25.8	**약 1.5년 지연**
건축(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23.12~'24.11	'25.9~'26.8	**약 1.5년 지연**
총사업비(부지조성) 조정 완료	'24.6	'25.12	**약 1.5년 지연**
부지조성 공사 발주·착공	'24.9~'26.5	'26.3~'26.7	**약 1.5년 지연**
부지조성 공사·감리 완료	'26.5	'28.3	**약 1.8년 지연**
건축(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24.11	'26.12	**약 2년 지연**
건축 공사 발주·착공	'25.4~'26.6	'27.2~'27.4	**약 1년 지연**
건축 공사·감리 완료	'26.6	'28.5	**약 2년 지연**
실증단지 시설·장비 테스트 및 시범운영	'26.8~'26.12	'28.5~'28.9	**약 2년 지연**
실증단지 준공	'26.12	'28.10	**약 2년 지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또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금액은 2025년 1월 481억 400만원에서 530억 4,200만원으로 다시 조정되었고, 2026년 3월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로 연장되었음.

이에 따라, 실제 부지조성 공사는 2026년 3월 발주, 5월 계약, 7월 착공으로 진행되어, 2025년에는 공사비 집행의 전제가 되는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

□ 이러한 사업추진 여건 조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전년도 9억 4,000만원의 9.1배인 85억 6,6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이 중 공사비와 장비구축·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약 90.9%를 차지하였음.

즉, 선행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어 2025년 중 본격적인 공사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후속 공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편성한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장비비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외, 물가변동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등 세 차례의 총사업비 협의에 총 14개월이 소요되어 실집행 지연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주장과 같이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구체화되고 물가변동 등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협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 것 자체를 사업관리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오히려 연차별 예산을 실제 공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유라고 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5년에는 부지조성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선행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실제 공사도 2026년에 이르러서야 발주·계약·착공되었으므로, 2025회계연도 중 대규모 공사비를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였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사정과 별개로, 예산 요구 단계에서 설계기간, 총사업비 협의기간 및 발주·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실제 집행가능액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했음.

□ 아울러,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역시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국비 85억 6,600만원을 김제시에 4차례에 걸쳐 전액 교부하였는데, 4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연간 교부액의 약 90%인 77억 900만원을 이미 교부하였고, 10월 14일 나머지 8억 5,700만원을 교부하였음.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2025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세목	피보조 기관명	국고 보조율	교부액 ('25년 사업비) 소계	1차 (2.14.)	2차 (3.10.)	3차 (4.9.)	4차 (10.14)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067-333)	330-03	김제시	67%	8,566	4,000	1,996	1,713	857	769	9,335	1,227	8,108	-	13.1
	소 계			8,566	4,000	1,996	1,713	857	769	9,335	1,227	8,108	-	13.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67]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68]는 보조금을 분할 교부하되, 교부 여

6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6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 결정 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전년도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에 집행잔액이 이월된 상태였고, 2025년에도 공사 착수를 위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본격적인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집행 여건을 보조금 교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연간 국비의 90%를 4월까지 교부하였음.

그 결과, 부처 차원에서는 예산액이 전액 집행된 반면, 피보조기관의 실집행률은 13.1%에 그쳐 예산현액의 86.9%인 81억 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적정한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교부시점에서 선행절차의 진행상황과 기존 교부액의 실집행 실적 등을 확인하여 후속 교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한편, 2026년 6월 말 기준 피보조기관의 누적 실집행액을 살펴보면, 30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7% 수준이고, 2026년 7월 기준 공정률도 약 5%로 연간 목표 30%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임.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2026년 집행 및 공정 현황 】

(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세목	피보조기관명	국고보조율	교부액('25년 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C)	집행액 (D)	차년이월	불용액	실집행률 (D/C)
				소계	1차 (2.14.)	2차 (3.10.)	3차 (4.9.)	4차 (10.14)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067-333)	330-03	김제시	67%	8,566	4,000	1,996	1,713	857	769	9,335	3,049	-	-	32.7
	소 계			8,566	4,000	1,996	1,713	857	769	9,335	3,049	-	-	32.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단위 : 백만원)

공정 현황																					
■ '26년 공정 목표 : 30% - '26.7월 공정률 : 약 5% · 사업부지 인근 현장사무소 임차(임시) · 설계도서 검토 및 실정보고 준비 · 현장여건 변화 확인을 위한 시공측량 추진 · 토양 외부반입을 위한 운반경로 최종 검토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작업 착수																					
2026년						2027년												2028년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누적공정률 30%						누적공정률 90%												누적공정률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26년 6~9월 집행계획도 76억 8,200만원 중 45억 4,300만원이 9월에 집중되어 있으

므로, 향후 공정률과 기성실적에 상응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2026년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26년 월별 집행					
내용	6월	7월	8월	9월	합계
[설계]건축	-	-	-	159	159
[공사]부지	536	-	536	4,134	5,206
[감리]부지	64	-	-	64	128
장비	-	1,782	-	104	1,886
운영비	20	-	-	-	20
[기타]용역	-	-	201	82	283
합계	**620**	**1,782**	**737**	**4,543**	**7,68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 사업의 2025년 실집행 부진에는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의 요인도 있었으나, 선행절차의 진행상황과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후속단계 사업비를 앞서 편성하고,

실제 공정이 지연된 이후에도 보조금 교부 규모와 시기를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은 점이 실집행 부진과 대규모 이월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대규모 시설사업의 예산을 요구·편성할 때 총사업비 협의, 기본·실시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발주·계약 및 착공 등 주요 선행절차를 반영한 통합 공정표를 기초로 연도별 실제 집행가능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도 설계완료, 총사업비 확정, 공사계약 체결 및 기성 발생 등 주요 사업단계와 연계하여 교부시기와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대규모 이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말 기준 누적 실집행률은 32.7%, 같은 해 7월 공정률은 약 5%로 연간 목표인 30%에 비해 낮은 수준임.[69)]

향후 부지조성 공사, 건축 설계·공사, 시설·장비 구축 및 시범운영 등 후속 공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현재의 지연이 후속 공정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제시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69)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월된 '25년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26년 9월까지 실집행을 완료하고, 공정률도 목표인 30%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임.

의 단계별 목표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기성·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 대비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인별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추가 연장을 방지하는 한편,

첨단 농업기계 산업 육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8년 10월까지 실증단지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역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의 보조금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전액 교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은 272억 8,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70]

【 2025회계연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고용인력지원	27,288	-	-	27,288	27,288	-	-	42,956
-농촌인력중개센터	12,151	-	-	12,151	12,151	-	-	14,151
-도농인력중개플랫폼	300	-	-	300	300	-	-	300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5,020	-	-	5,020	5,020	-	-	11,840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1,470	-	-	1,470	1,470	-	-	1,470

7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업고용인력 전문기관 운영	700	-	-	700	700	-	-	700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	-	-			-	-	6,84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은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촌 고용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연도별로 10개 부지를 선정하여 지자체가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비용을 3년(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에 걸쳐 지원하며,

2024년까지는 개소당 24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는 거점형과 개소당 1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는 마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유형을 통합하고 개소당 24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현황 】

구 분	대상지역		사업비
1차 (‘22～’23)	거점형	해남, 영양	개소당 24억원
	마을형	부여, 청양,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개소당 15억원
2차 (‘24～’26)	거점형	김천, 봉화	개소당 24억원
	마을형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개소당 15억원
3차 (‘25～’27)	유형통합	충주, 고창, 군산, 남원, 영주, 밀양, 청도, 영천2, 함양	개소당 24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동 사업의 2025년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49억 8,000만원으로, 2024년 선정된 10개소에 대한 2년차 사업비 37억 8,000만원과 2025년 신규 선정된 10개소에 대한 1년차 사업비 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예산 세부내역 】

ㅇ 2년차 사업비 3,780백만원
- 거점형 2개소 × 2,400백만원 × 2년차 45% × 국비 50%
- 마을형 8개소 × 1,500백만원 × 2년차 45% × 국비 50%

ㅇ 1년차 사업비 1,200백만원
- 신규 10개소 × 2,400백만원 × 1년차 10% × 국비 50%

ㅇ 운영비 40백만원(민간경상보조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런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49억 8,000만원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실집행액이 16억 5,2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33.1%)이 매우 저조한 편임.

이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20개소 중 18개소(90%)에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2025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처 집행내역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지자체	교부액(C)	전년이월	예산현액(D)	집행액		차년이월	실집행률(E/D)	실집행률(F/C)
							전년이월포함(E)	전년이월제외(F)			
4,980	4,980	100.0	경기도	338	75	413	96	21	317	23.2	6.2
			충청북도	120	-	120	37	37	83	30.8	30.8
			충청남도	-	71	71	18	-	53	25.4	-
			전북특별자치도	1,035	134	1,169	229	94	941	19.6	9.1
			경상북도	2,573	252	2,824	1,602	1,377	1,223	56.7	53.5
			경상남도	915	141	1,056	264	123	792	25.0	13.4
			소 계	4,980	673	5,653	2,244	1,652	3,409	39.7	3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관리에 있어 사업추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71]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보조금의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여야 함.

그런데 2024년 선정된 사업대상지의 집행실적과 교부현황을 보면, 경북 고령은 사업 진척이 전혀 없어 2024년 사업비도 재이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었고, 경기 안성, 전북 남원, 경남 밀양, 경남 산청 등은 2025년 실집행액이 교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대부분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

---

71)「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지별 보조금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시도	대상지	교부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재이월액('24년)
2024~2026	경기	안성	338	338	21	317	-
	충남	당진	미교부	미교부	-	-	53
	전북	남원	675	675	10	665	-
	전북	완주	미교부	미교부	-	-	-
	경북	고령	338	338	-	338	28
	경북	문경	675	675	661	14	-
	경북	김천	미교부	미교부	-	-	-
	경북	봉화	1,080	1,080	570	510	-
	경남	밀양	338	338	-	338	-
	경남	산청	338	338	3	334	-
2025~2027	충북	충주	120	120	37	83	-
	전북	고창	120	120	14	106	-
	전북	군산	120	120	71	49	-
	전북	남원	120	120	-	120	-
	경북	영주	120	120	22	98	-
	경북	영천	120	120	3	117	-
	경북	영천	120	120	3	117	
	경북	청도	120	120	120	-	-
	경남	밀양	120	120	120	-	-
	경남	함양	120	120	-	120	-
계			4,980	4,980	1,652	3,328	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는 사업비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교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조금의 교부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불필요한 이월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 특히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72)]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당진, 경북 김천 등의 경우 사업추진이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실집행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집행실적이 부진한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은 시정요구에 따른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님비현상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제도개선)

5)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기업의 실질적 성장성과 중심의 성과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고용증감률과 임금수준은 사업화지원 유형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율 또한 장기적으로 하락한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이나 지원기업 수 등 활동실적뿐만 아니라 매출·고용·생존·투자유치 등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2025년 참여자 중 청년층 비중이 29.8%에 그치고 있고,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전문성 및 자금·투자·판로 등 성장단계별 지원수단 간 연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의 특성과 성장단계별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기업의 후속 성장성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분야 벤처 및 (예비)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창업·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 지원 및 컨설팅, 투자유치, 판로·홍보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304억 8,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73]

7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1150-344)

【 2025회계연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30,485	-	-	-	30,485	30,485	-	-	30,350
- 농식품벤처육성지원	14,000	-	-	-	14,000	14,000	-	-	14,000
- 농식품벤처창업센터	3,740	-	-	-	3,740	3,740	-	-	3,740
- 액셀러레이터육성지원	2,900	-	-	-	2,900	2,900	-	-	2,900
- 크라우드펀딩활성화	600	-	-	-	600	600	-	-	600
- 농식품기술평가지원	200	-	-	-	200	200	-	-	200
- 농식품 판로지원	805	-	-	-	805	805	-	-	805
- 농식품창업콘테스트	740	-	-	-	740	740	-	-	605
- 민간투자기반스케일업	7,500	-	-	-	7,500	7,500	-	-	7,5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74] 제85조의2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설정과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사업의 계획 수립·집행과정·결과에 대한 점검·분석·평가로 규정하고 있음.

---

74)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즉, 성과관리는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였는지를 넘어 사업목적의 실제 달성 여부를 측정하여 사업운영에 환류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99.3%에 이르고 지속고용사업장 비율 및 고용창출기업 비율도 비교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사업집행과 창업기업의 생존·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일견 일정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의 목적이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원기업의 존속·고용발생 여부를 넘어 지원 이후의 실제 성장수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지원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성과를 측정·관리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운영에 환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고용성과는 고용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고용의 증가 정도와 질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지속고용사업장 비율은 78.2%, 고용창출기업 비율은 94.3%로 사업화지원 유형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고용

증감률은 14.3%로 유형 평균인 3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임금수준도 유형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고용성과 】

(단위: %)

구분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	고용창출 기업 비율	고용 증감률	임금수준
창업지원사업 전체	70.3	74.7	32.9	151.5
사업화지원 유형 전체	76.6	90.9	34.1	156.3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78.2	94.3	14.3	145.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즉, 지원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고용을 발생시킨 기업의 비율은 높은 반면, 실제 고용이 확대된 정도와 창출된 일자리의 질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둘째,** 참여기업의 매출성과는 목표치의 도전성과 산정방식의 대표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48.9%에서 2022년 46.2%, 2023년 37.0%, 2024년 35.7%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2025년 36.5%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1~2022년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참여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2026 목표
매출액 증가율	48.9	46.2	37.0	35.7	36.5	각 3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경기상황·기저효과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러한 하락추세에도 2024~2026년 성과목표가 매년 35%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고, 2024년 35.7%, 2025년 36.5%로 이미 목표치를 연속하여 초과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실적만 유지하여도 목표가 달성되므로, 성과목표가 사업 개선과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음.

아울러, 현재 매출액 증가율은 지원기업 전체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와 당해연도 매출액 합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어 기업 간 규모차이가 큰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상 소수 고성장기업이 전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목표치의 도전성과 설정 근거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전체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기업별 매출액 증가율의 중앙값, 매출 증가기업 비중, 일정 기간 생존율, 고용증감률 및 투자유치 실적 등을 보완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신규 창업 촉진 기능이 포함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참여현황을 별도로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 】

(단위: 명, %)

전체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 이상)
315	94	196	24	1
100.0	29.8	62.2	7.6	0.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5년 동 사업 참여자 315명 중 청년층(15~34세)은 94명(29.8%)인데,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법률상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년층 비중이 30%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대상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동 사업에는 창업콘테스트, 예비창업자 지원 등 신규 창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단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비·초기창업 단계의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참여 현황을 별도로 점검하고 참여자 확대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에 맞추어 사업화·투자·금융·판로 지원을 연계하고 그 이후의 성과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은 제품개발 이후에도 생산시설 확보, 인증, 유통·판로 개척 및 성장자금 조달 등 연계된 후속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업화자금이나 보육프로그램의 단편적 지원만으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창업·사업화 지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투자·금융지원을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연계하고, 후속투자 유치액, 판로확대, 매출·고용 증가 등 연계지원 이후의 성과까지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창업기획자(AC)는 참여기관 수보다 농식품 분야 전문성과 실제 보육·투자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운영 개선사항으로 참여 창업기획자를 8개에서 10개로, AC 매칭기업을 89개사에서 114개사로 확대한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보육·투자지원 기회를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농식품 분야는 농업생산·식품제조·유통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창업기획자의 수보다 참여 AC가 농식품 분야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투자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창업기획자의 성과를 참여기관 수나 매칭기업 수만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농식품 분야 투자·보육경험, 보육기업의 후속투자 유치, 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창업기획자 선정 및 기업 연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전략작물산업화: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사업에서 이루어지는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은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관하여 재배확대, 규모화·조직화 및 생산·유통 여건 개선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533억 800만원 중 518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75]

【 2025회계연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략작물 산업화	53,308	-	-	53,308	51,818	-	1,490	56,361
-제품화 패키지지원	9,850	-	△100	9,750	9,750	-	-	14,800

7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략작물산업화(2131-35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제품화패키지지원” 사업은 국산 밀·콩·가루쌀을 활용한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마케팅 및 수출·판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97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에서 홈쇼핑 방송(NS홈쇼핑)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본래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가루쌀 제품 제조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사업 중 판로지원 사업 내용 】

차수	제품명	홈쇼핑 방송 내역						지원금액(원)
		방송일정				주문량(개)	주문액(원)	
		구분	일자	시간	분량			
1차	식물성 라이스베이스드 (※ 우유 대체식품)	본방송	7.25.	15:10	40분	285	9,767,659	20,000,000
		재방송	8.3.	02:50	20분	22	792,554	
		재방송	8.21.	03:10	20분	21	746,754	
	가루쌀 스낵 3종 세트	본방송	7.25.	14:30	40분	532	13,911,618	20,000,000
		재방송	7.29.	02:00	20분	64	1,673,436	
		재방송	8.29.	02:00	20분	56	1,468,236	
2차	우리米 3색 쌀국수 세트	본방송	12.5.	18:00	40분	336	11,425,637	25,000,000
	피자바이트	본방송	11.3.	17:10	40분	1,410	46,214,501	25,000,000
		재방송	11.14.	02:00	20분	129	4,404,556	
		재방송	11.15.	03:00	20분	101	3,455,082	

*주: 그 외 언론진흥재단 및 사업 운영비 1천만원 집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일부 재가공)

그런데, 판로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홈쇼핑 방송 지원액보다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여, 홈쇼핑 방송을 활용한 판로지원의 효과성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음.

【 2025년 제품화패키지지원 내역사업 중 판로지원 실적 】

(단위: 개, 원, %)

차수	업체명	제품명	총 방송 주문량	매출액 (A)	지원액 (B)	지원 대비 매출(A/B)
1차	A푸드	식물성 라이스 베이스드	328	11,306,967	20,000,000	56.5
	B주식회사	가루쌀 스낵 3종 세트	652	17,053,290	20,000,000	85.3
2차	C영농조합	우리米 3색 쌀국수 세트	336	11,425,637	25,000,000	45.7
	D푸드	피자바이트[76]	1,640	54,074,139	25,000,000	216.3

*주: 그 외 언론진흥재단 및 사업 운영비 1천만원 집행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일부 재가공)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시간에 폭넓은 전국 단위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가루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제품 신뢰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판로지원에 홈쇼핑 방송을 활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NS홈쇼핑 채널의 시청점유율이 0.1% 수준으로 높지 않은 점, 4개 제품 모두 심야 재방송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의 본방송(40분)만 이루어진 점, 판로지원 사업 이후 추가적인 홈쇼핑 방송 편성이 없었고 오히려 온라인·라이브커머스[77] 등 다른 판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76) 해당 제품은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A사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제품임
77)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형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방식

홈쇼핑 방송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은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TV홈쇼핑 관련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

연번	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전체	본인
1	㈜지에스리테일	GS SHOP	0.199	0.199
2	㈜씨제이이엔엠	tvN, 엠넷, CJ온스타일 등	11.092	10.257
3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0.215	0.215
4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2.417	0.205
5	㈜엔에스쇼핑	NS홈쇼핑	0.136	0.136
6	㈜홈앤쇼핑	홈&쇼핑	0.113	0.113
7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0.098	0.098

* 주1: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시간 중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시청점유율 등을 합산
* 주2: 홈쇼핑 방송인 CJ온스타일의 경우 현재 ㈜씨제이이엔엠 커머스 부문에서 운영 중으로, 시청점유율이 tvN, 엠넷 등 ㈜씨제이이엔엠에서 운영하는 타 방송채널과 분리되지 않음
* 주3: 홈쇼핑 방송인 롯데홈쇼핑의 경우 ㈜티캐스트(태광그룹)에서 운영하는 채널(e채널 등)의 시청점유율 등에서 영향을 받고 있음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4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재가공)

□ 특히, 2026년에 동 내역사업 내 판로지원 예산이 전략작물 생산확대에 따른 소비기반 마련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2억원)대비 300% 증가한 8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고려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로지원을 개선하거나, 홈쇼핑 방송 외의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 내역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과 외 과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의 사업 참여 유도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외 과종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 사업 참여를 통하여 스마트과수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은 재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2억 7,800만원 중 1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78]

【 2025회계연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조성	1,278	-	-	1,278	1,242	-	36	11,235

7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2220-371)

나) 검토의견

□ 스마트과수원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특정한 수형(樹形)[79]을 재배하고, 지면이 평평하며, 수목 간 간격이 확보되는 한편, 재해예방시설 및 ICT·무인화시설을 설치하는 과수원임.

【 스마트과수원 설치 시설 예시 】

구분	세부 내역
재해예방시설	- (저온 예방) 미세살수장치, 방상팬 등 - (폭염 예방)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 송풍팬 등 - (태풍 예방) 방풍망, 지주시설 등 - (야생동물 예방) 야생동물방지시설
과수분야 ICT 장비	- (환경센서) 온도·습도, 토양습도, 풍향·풍속, 감우·강우량, 일사량 센서 등 - (모니터링) IT-페르몬트랩(무인해충감시), 당도 측정 등 - (제어장비)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 제어를 위한 장비
무인화 시설	- 무인방제시설(고정형·이동형) - 무인관수관비시설(점적호스·스프링쿨러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일부 재가공)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개소(2,000ha)의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80]

2025년에는 동 사업이 신규 사업임에 따라 당초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4개소의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가 선정되어 조성 중에 있음.

79) 입체형이 아닌 평면형 재배가 가능한 수형 등
80)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 전략 모색”, 2025. 11. 30.

【 2025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선정 현황 】

연번	소재지		단지명	면적(ha)	과종	선정여부
	광역	기초				
1	강원	양구	양구스마트과수생산단지	38	사과	선정
2	전북	장수	스마트장수가꿈	17	사과	
3	경북	포항	상옥스마트과수특화단지	20	사과	
4	경남	거창	거창사과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22	사과	
5	강원	정선	임계지구	52	사과	미선정
6	충북	충주	충주시	18	사과	
7	경북	청송	청송주왕산단지	13	사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한편, 2026년에는 동 사업에서 당초 16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026년 상반기 기준 12개소만이 선정되어 신규 조성 중에 있음.

【 2026년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선정 현황 】

연번	소재지		단지명	면적(ha)	과종	선정여부
	광역	기초				
1	대구	군위	군위골든볼특화단지	10.9	사과	선정
2	강원	원주	원주스마트특화단지	10.2	사과	
3	강원	태백	태백스마트과수특화단지	20	사과	
4	강원	정선	문래지구스마트과수생산단지	19.1	사과	
5	강원	철원	철원스마트과수단지	10	사과	
6	충북	보은	결초보은	20.8	사과	
7	전북	무주	사과골 무풍	13.1	사과	
8	경북	포항	오덕탑정 스마트과수특화단지	21.7	사과	
9	경북	안동	동안동스마트사과단지	20	사과	
10	경북	청송	현동면 개일단지	19.4	사과	
11	강원	양구	양구스마트과수생산단지	25	사과	
12	강원	인제	심적스마트과수생산단지	16	사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 및 2026년 단지 선정 내역을 살펴보면, 2년간 사과를 재배하는 단지 16개소(2025년 4개소, 2026년 12개소)만이 선정되어 지원 대상 과종이 사과에 한정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로 사업참여 과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비교적으로 평면형 재배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스마트화가 유리한 과종인 사과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집중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복숭아·배·포도 등 과종을 재배하는 과수원 역시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81],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1)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외에도 다축재배 연구가 비교적 정립된 복숭아, 관행방식에도 스마트화가 가능한 배·포도 등의 과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8)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의 단계별 점검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소규모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구축하여 적정품목, 재배기법 등을 실증하고, 농촌 마을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을 통해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3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억 200만원 중 32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82)]

【 2025년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3,128	174	-	3,302	3,252	-	50	895
- 농촌재생에너지통계구축	50	-	-	50	50	-	-	-
- 농촌에너지전환로드맵마련지원	300	-	-	300	250	-	50	-
- 농업농촌RE100실증지원	2,778	174	-	2,952	2,952	-	-	895

8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2240-40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은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며, 공동이용시설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리모델링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83]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의 마을법인에 ①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84] 건설, ②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③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④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으로 구성된 총 4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임.

【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재생에너지 마을발전소 건설	농촌 마을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1,952백만원=976백만원×4개소×국비 50%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설치	농업인 등이 운영하는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지붕, 유휴부지 및 주택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900백만원=450백만원×4개소×국비 50%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 설치 및 단열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건축물로 리모델링·개축 등 ·620백만원=310백만원×4개소×국비 50%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 진단, 최적 설치 방안·용량 등 도출, 마을법인 관련 지원, 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지원 ·200백만원=50백만원×4개소×국비 100%

83)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84) 마을발전소의 운영주체는 발전시설 설치지역의 마을주민(단, 마을 가구의 과반수가 참여하여야 함)으로 구성된 마을법인으로, 이때 마을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음. 한편, 마을법인의 정관에는 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수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동 내역사업의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2년이며, 연부율은 1년차 20%, 2년차 80%임. 2025년의 경우 신규 사업대상은 선정하지 않고 2024년에 지정된 4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2년차 예산 2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억 7,400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억 5,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연내 실집행이 완료된 지역은 충북 음성 1개 지역에 불과하였음.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실증지역	실집행내역							
	교부결정액(A)	교부액(교부시기)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C)	실집행액(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D/C)
충남 공주	694.5	468(25.3월) 226.5(25.5월)	173.5	868	429.9	438.1	-	50
충북 음성	694.5	468(25.3월) 226.5(25.5월)	173.5	868	868	-	-	100
경기 이천	694.5	468(25.3월) 226.5(25.5월)	173.5	868	258	610	-	30
전북 진안	868	138.8(25.2월) 34.7(25.3월) 590(25.5월) 104.5(25.11월)	-	868	-	868	-	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85]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8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전에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음성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기교부액을 합한 금액조차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특히 전북 진안의 경우 사업이 사실상 착수되지 않았음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8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8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 97)

(6) 보조금 교부 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되,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동 내역사업의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연례적인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4개 지자체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2024년까지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2026년 7월 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6개 지자체에 불과하고,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가 2곳이며, 4개 지자체는 전력계통[87] 공사 지연,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 사업 추진현황 】

선정	시군	기본계획 승인	시설공사 추진사항			현황 및 지연사유
			착수	포기	완료	
'22	춘천	22.6.	'23.1.	-	'23.12.	준공완료
	서천	22.6.	'22.12.	-	'26.4.	준공완료
	홍성	22.6.	'23.2.	-	(진행중)	한전 계통공사 지연('~'26.8.)으로 전력수급계약 체결 불가하여 준공 순연
	화순	22.6.	'23.3.	-	'25.3.	준공완료
'23	강릉	23.11.	-	'24.10.	-	사업기간내에 계통연결 불가하여 전체사업 포기
	정선	23.11.	'24.1.	-	(진행중)	한전 계통공사 지연('~'27.12.)으로 전력수급계약 체결 불가하여 준공 순연
	보령	23.11.	'24.2.	-	'26.2.	준공완료
	화순	23.11.	'24.11.	-	'25.11.	준공완료
'24	이천	24.11.	'25.4.	-	(진행중)	기본계획 변경('25.12.)에 따른 사업 순연으로 8월 착공 예정
	음성	24.11.	'25.3.	-	'25.12.	준공완료
	공주	24.11.	'25.1.	-	(진행중)	한전 계통공사 지연('~'26.6.)으로 전력수급계약 체결 불가하여 준공 순연
	진안	25.2.	-	'26.7.	-	사업추진 관련 주민반대로 사업포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7)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전력계통을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용어사전에서는 전력계통을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설비로, 발전설비와 송전·변전·배전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례적 실집행부진 개선을 위해 사업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연부율을 기존 1년차 20%, 2년차 80%에서 1년차 20%, 2년차 20%, 3년차 60%로 개선하며, 주민동의요건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을 2026년 6월 개정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6년 7월말 현재 2026년 대상 사업 공모절차가 진행중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력계통의 문제는 단기간 안에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의 연내 실집행도 부진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 단계별 이행상황과 지연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교부에 반영하는 등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수요 및 집행주체를 고려한 적정 예산 비목 편성 필요

○ 임대형 스마트팜의 내역사업인 공공기관 처우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사업목적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신청·수행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수혜주체·집행주체 및 지출성격의 정합성과 실제 수요·집행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귀농인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업하여 재배역량 향상, 수익 창출 및 자본 축적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및 비축 농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407억원 중 406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공공기관 처우개선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전액 불용되었음.[88]

88)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대형 스마트팜(2220-383)

【 2025회계연도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임대형 스마트팜	40,700	-	-	-	40,700	40,600	-	-	31,500
- 임대형 스마트팜	34,600	-	-	-	34,600	34,600	-	-	28,500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6,000	-	-	-	6,000	6,000	-	-	3,000
- 공공기관 처우개선	100	-	-	-	100	-	-	1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국가 예산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의 실질적 성격과 최종 수혜주체, 집행주체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예산비목과 집행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89]

특히, 인건비·사업관리비 등 경상적 성격의 비용과 시설·장비 취득 등 자본형성 비용은 지출성격과 집행방식이 다르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를 구분하여 적정한 비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공공기관 처우개선사업은 그 목적이 공공기관의 처우개선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여 자본형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되었음.

89)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④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시설·장비 등 자본형성 성격의 지출을 위한 비목인 반면,

공공기관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는 그 성격상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위탁사업비 등 경상적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목적과 지출성격에 맞지 않는 비목을 선택하여 실제 수혜주체와 신청·집행주체가 어긋나는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전액 불용된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 처우개선사업의 예산편성·집행 구조 】

구분	내용
사업목적	공공기관 처우개선
예산비목	자치단체자본보조
신청·집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실제 신청	없음
집행결과	전액 불용
주요 문제	사업목적·수혜주체와 신청·집행주체 및 비목 간 정합성 미흡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용이 경상적 경비인지 자본형성 경비인지 구분하였다면 자치단체자본보조 비목이 사업성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지출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예산 요구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의향과 지방비 부담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어야 했고,

공공기관의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하려는 목적이었다면 해당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수행비용에 반영하는 등 실제 집행구조에 부합하는 비목을 검토하였어야 했음.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예산의 전액 불용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당국(前 기획재정부, 現 기획예산처) 간 상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안이 예산당국의 심사를 거쳐 편성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세출요구를 한 소관부처의 책임이 경감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목적과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수혜주체, 실제 집행주체 및 지출의 경상·자본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 확인한 후 이에 적합한 예산비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인건비 등은 위탁사업비 등 지출성격에 부합하는 비목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의향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10) 농산업 수출활성화: 스마트팜 수출지원의 만족도 중심 성과지표 개편 필요

○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스마트팜 계약실적이 전년 2건·106만달러에서 9건·337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수출액 목표달성도 20%, 지원기업 만족도 80%로 구성되어 실제 수출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만족도 비중을 축소하고 계약실적과 과년도 지원기업의 후속 통관·수출실적 등 실질적인 수출성과 중심으로 성과지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은 국내 농산업(스마트팜·농기계·농약·비료·종자 등)분야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스마트팜 거점 조성, 수주계약 밀착지원 및 농기자재 인허가취득·마케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95억 6,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90]

【 2025회계연도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농산업수출활성화	9,562	-	-	-	9,562	9,562	-	-	11,409
-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5,026	-	-	-	5,026	5,026	-	-	3,383
- 농산업글로벌 성장 패키지지원	1,470	-	-	-	1,470	1,470	-	-	2,620
-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3,066	-	-	-	3,066	3,066	-	-	3,156
- 한국형 스마트팜 글로벌 수출지원센터	-	-	-	-	-	-	-	-	2,2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90)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산업수출활성화(2260-375)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85조의6[91]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적절히 대표하고, 재정투입이 실제 정책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 사업은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해외 마케팅, 인허가, 현지 진출 및 수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지원기업의 계약체결 및 실제 수출 확대 등 객관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91)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기업 수, 상담건수나 만족도 등은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해외시장 진출이나 수출 확대라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임.

□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수출액 목표달성도 20%와 지원기업 만족도 80%를 합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수출성과보다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성과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만족도는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으나, 성과평가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수출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족도가 높으면 전체 성과가 양호하게 평가될 수 있어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보여주기 어려움.

□ 특히, 동 사업에서는 실제 계약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성과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팜 분야의 참가기업은 2024년 98개사에서 2025년 108개사로 증가하였고, 상담은 890건에서 1,015건, MOU는 12건에서 25건, 계

약은 2건에서 9건으로 증가하였음. 계약금액도 106만달러에서 337만달러로 약 3.2배 증가하였음.

농기자재 분야 역시 2025년 114개사가 참여하여 2,17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62건·1,822만달러의 계약실적을 기록하였음.

【 농기자재·스마트팜 수출지원 주요 실적 】

(단위: 개사, 건, 만달러)

분야	연도	참가기업	상담	MOU	계약
농기자재	2024	93	977	7건·394	3건·998
	2025	114	2,176	42건·982	62건·1,822
스마트팜	2024	98	890	12건·369	2건·106
	2025	108	1,015	25건·836	9건·33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현행 성과지표의 문제는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함에도, 공식 성과평가에서 만족도에 훨씬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데 있음.

□ 물론, 스마트팜 수출은 일반적인 농기자재 수출과 달리 설계·시공·제어시스템, 현지 인허가 및 운영 등이 결합된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지원이 이루어진 연

도에 최종 수출실적이 곧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수출성과의 비중을 낮추고 만족도로 대체할 사유라기보다는, 당해연도 계약실적과 함께 과년도 지원기업의 후속 통관·수출실적을 추적하여 다년도 성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기업 만족도는 지원서비스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그 비중을 축소하고, 계약금액 및 실제 수출실적 등 사업목적과 직접 연계되는 결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원에서 최종 수출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스마트팜 수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계약성과뿐만 아니라 과년도 지원기업의 후속 통관·수출실적을 추적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 공모절차 검토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원칙을 준수하고, 타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소관인 식품안전성 검사 대신 산업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는 한편, 사업시행계획을 조기에 확정하여 정산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은 김치·장류·전통주 등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 및 국내외 소비 촉진 지원, 고유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발전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156억 1,000만원 중 14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음.[92)]

【 2025회계연도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통발효식품육성	15,610	15,610	-	15,610	14,977 [11,640]	-	633	18,952
- 전통식품산업육성	1,850	1,850	-	1,850	1,750 [1,738]	-	100	1,800
- 발효식품산업경쟁력강화	2,334	2,334	-	2,334	2,334 [2,300]	-	-	2,334
- 김치산업육성	8,325	8,325	-	8,325	7,792 [4,572]	-	533	11,274
- 한국술산업육성	3,101	3,101	-	3,101	3,101 [3,030]	-	-	3,54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9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통발효식품육성(2832-31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발효식품산업경쟁력강화”의 하위 내역사업인 “전통 장류 기능성 규명”은 ① 전통장류의 안전성 검사, ② 장류의 기능성 연구수행, ③ 연구결과의 홍보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2025회계연도 보조사업 예산 12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0년 및 2021년에 공모 및 재공모(단일업체 참여)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기관의 역량 등 사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공모 절차없이 매년 사업약정 체결을 통해 최초 사업자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순창군 출연기관)에 보조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필요

□ 동 사업은 2021년 공모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공모절차 없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의 약정 체결만으로 매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93] 예외적으로 공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① 특정인이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③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공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먼저,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인 장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이 수행해야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예외 사유 1)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94]

---

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94) 다만, 농식품부는 2020년 및 2021년 사업자 공모시 단일기관 참여로 재공모에도 추가 참여기관이 없어 2022년 이후에는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관과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현황(예시) 】

구분	기관명	사업내용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54개소, 식약처 지정)	한국장류협동조합 등	장류 등에 대한 이화학, 미생물 검사, R&D, 교육 등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16개소, 식약처 지정)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등	식품(장류 포함) 등에 대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전문시험검사 등

*자료:「식품(식품전문, 자가품질위탁검사), 축산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26.6.19.)」(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6.)

또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예외 사유 2)가 아니며, 보조사업의 특성상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예외 사유 3)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5]이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① 공모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거나, ② 출연기관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기관에 단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보조금을

9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임.

(2) 사업 내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025년에 실시한 동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① 제조업자에 대한 전통장류의 유해물질 조사(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② 전통장류의 우수기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연구, ③ 기타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

【 2025회계연도 전통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 수행내역 】

구분	내용	사업 실적
①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통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에 대한 유해물질(바이오제닉아민, 아플라톡신) 및 미생물 모니터링	103개소 업체, 317개 제품 검사
② 기능성 규명 (학술연구)	전통 장류 섭취와 건강의 연관성(장질환, 비만, 당뇨, 치매 등)을 입증하여 전통 장류의 우수기능성을 규명	논문게재 7, 투고 1
③ 홍보 및 교육	장류 우수성에 대한 학술발표 및 소비자 대상 홍보 강화	포럼개최/포스터발표/언론홍보 등 36건
	장류업체 대상 장류 제조관리 매뉴얼 콘텐츠 보급	교육 5회(177명)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런데, 전통장류의 유해물질 조사는, 식품 안전성 검사로서 「정부조직법」[96]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에

96) 「정부조직법」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해당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첩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점검에서 유해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계 전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을 통하여 이를 선제적으로 조사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타 부처 소관사무인 식품위생 검사를 중첩적으로 수행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양 부처가 유사한 유해물질 검사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동일 업체가 중복적인 점검을 받게 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이 안전성 검사보다는 업계 지원에 있다면, 안전성 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질 개선 컨설팅 등 본래의 산업육성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를 포함한 식품들에 대한 품질검사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97]

97)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54개소),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16개소)

(3) 보조사업비 정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보조사업자인 aT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회계연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고 aT는 이후 5월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음.

그런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인 1월 및 2월의 인건비, 논문게재비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하고 있음.

이는 당해연도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임.

【 사업계획 수립·확정 전 지출내역 】

연번	지급일	세부내역	지급액(원)	지출인
1	2025.01.24.	1월 인건비(보수)	47,075,560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2	2025.01.24.	1월 인건비(퇴직급여)	3,922,970	〃

3	2025.01.24.	1월 인건비(보험료-회사분)	4,624,940	〃
4	2025.02.28.	2월 인건비(보수)	47,075,580	〃
5	2025.02.28.	2월 인건비(퇴직급여)	3,922,970	〃
6	2025.02.28.	2월 인건비(보험료-회사분)	4,543,260	〃
7	2025.01.17.	해외논문게재비	2,334,384	〃
8	2025.02.04.	해외논문게재비	3,054,618	〃
9	2025.05.20.	인건비 1월분	3,000,000	○○대학교
10	2025.05.20.	인건비 1월분	2,500,000	〃
11	2025.05.20.	인건비 2월분	3,000,000	〃
12	2025.05.20.	인건비 2월분	2,500,000	〃
13	2025.02.10.	1월분 인건비	2,100,000	주식회사 ○○○
14	2025.02.10.	1월분 인건비	1,800,000	〃
15	2025.02.10.	1월분 인건비	1,575,000	〃
16	2025.03.10.	1월분 인건비	2,100,000	〃
17	2025.03.10.	1월분 인건비	1,800,000	〃
18	2025.03.10.	1월분 인건비	1,575,000	〃
계			138,504,282	

※ 자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제출(2026. 6.)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은 5개년 사업추진 계획('21～'25)에 따라 매년 사업 약정체결을 통해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 연도 초 인건비 등은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확정함으로써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추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된 비용을 사후에 보조금으로 정산하는 데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2)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 중복실시 지양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일한 내용의 해외인증취득 지원사업을 2개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신청창구에 따라 경쟁률과 선정 가능성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일한 지원사업을 여러 보조사업자로 분산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사업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케팅, R&D, 해외인증취득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927억 2,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98]

【 2025회계연도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2,729	-	-	92,729	92,729	-	-	115,751
-생산기반조성	7,126	-	-	7,347	7,347	-	-	4,026
-판매조직육성	26,880	-	-	26,649	26,649	-	-	27,330
-농식품우수기업육성	56,223	-	-	56,233	56,233	-	-	79,795
- 그밖에 내역사업	2,500	-	-	2,500	2,500	-	-	4,6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9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2835-406)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 “농식품우수기업육성”의 하위 내역사업인 “해외인증등록지원”은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6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해외인증등록지원 개요 】

구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대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 업체
지원조건	・국비 70%, 자부담 30%
배정한도	・업체당 연간 2000만원(국비 지원기준)
2025예산 및 보조사업자	・60억원 -aT(40억원), 한국식품연구원(2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지원대상 해외인증과 지원내용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사업임에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하여 각각 추진되었음.

이에 따라, 2개의 보조사업자가 각각 접수・심사・정산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여 신청창구에 따라 경쟁률과 선정 가능성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운영체계 중복으로 인한 예산 집행상 비효율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에 동 사업은 aT와 한국식품연구원 2개 기관이 각각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각 사업은 ① 지원대상 해외인증이 할랄, ISO22000[99] 등 24개 인증으로 동일하며, ② 지원내용도 인증별 2,000만원 한도로 인증취득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하여 동일하고, ③ 지원대상 선정기준 배점표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사업임.

【 2025회계연도 해외인증등록지원 현황(인증 기준) 】

(단위: 건)

지원대상 해외인증	한국식품연구원	aT
FSSC22000	92	238
Halal	64	139
Vegan	24	55
ISO22000	5	48
Global GAP	7	40
NON-GMO	4	10
Kosher	6	5
Gluten-free	4	4
기타	27	37
계	**233**	**5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99) ISO22000: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모든 취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ISO/TC 34 / WG 8 (식품안전경영시스템 표준 위원회) 주도로 ISO 회원국 및 CODEX (국제식품표준위원회), GFSI (국제식품안전협회), BRC (영국소매협회) 등 식품전문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M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규격(출처: 한국품질재단)

그럼에도, 각 기관은 각각 별도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지원신청 및 정산하도록 별개로 운영하면서, ① 공고일 및 지원접수기간 등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② 보조사업자가 각각 별도로 지원자 접수 및 선정심의를 진행하여 양 사업의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 비교 】

구분		한국식품연구원	aT
2025년 사업예산		20억원	40억원
사업신청 및 정산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 (www.foodcerti.or.kr)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신청기간		2025. 2. 13. ~ 3. 7. **(23일간)**	2025. 2. 14. ~ 2. 28. **(15일간)**
지원 신청		255개 업체, 434개 인증	573개 업체, 936개 인증
최종 지원		127개 업체, 233개 인증	380개 업체, 576개 인증
지원자 경쟁률	업체	**2.0 대 1** (선발률 **50.0%**)	**1.5 대 1** (선발률 **66.7%**)
	인증	1.9 대 1 (선발률 52.6%)	1.6 대 1 (선발률 6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런데, 이러한 운영체계의 이원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① 창구별 예산 규모와 신청 수요에 따라 경쟁률과 선정 가능성이 달라져[100] 어느 기관에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

100) 2025년 양 사업의 선정가능성 16.7%p 차이(업체 기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② 수요자인 수출업체 입장에서 사실상 동일한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공고를 각각 확인하고, 다른 접수기간에 어느 창구에 신청할지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③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공고, 접수, 심의, 정산 등 동일한 절차를 2개 기관이 중복 수행하고, 각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행정비용 집행이 발생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2개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추진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푸드서비스선진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추진시 업체별 배달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한 자부담율 설정 검토 필요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650억원)으로 배달업체의 결제액이 증가하였으나, 참여 배달앱 간 수수료율(0~2%)이 서로 달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앱일수록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등 수혜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자부담율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은 외식업체 대상 컨설팅,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69억 2,500만원 중 667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101]

【 2025회계연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푸드서비스 선진화	66,925	-	-	66,925	66,731	-	194	2,486
- 외식업경쟁력 강화 패키지	66,925	-	-	66,925	66,731	-	194	2,48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0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푸드서비스선진화(2837-37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외식업경쟁력 강화 패키지’의 하위 내역사업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은 공공배달앱을 통해 외식을 2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650억원 중 648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음.[102)]

【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개요 】

<table>
<tr><td>사업 목적</td><td>○ 외식업체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배달 활성화 지원</td></tr>
<tr><td>사업 기간</td><td>○ 2025.6.10 ~ 12.1</td></tr>
<tr><td>예산</td><td>○ 650억원</td></tr>
<tr><td>대상</td><td>○ 공모를 통해 공공배달앱 12개사 선정</td></tr>
<tr><td>추진내용</td><td>○공공배달앱을 통해 외식(포장, 배달) 결제 시 할인쿠폰 지급
<table>
<tr><th>기간</th><th>쿠폰 지급기준</th></tr>
<tr><td>6.10. ~ 7.24.</td><td>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 쿠폰 지급</td></tr>
<tr><td>7.25. ~ 9.30.</td><td>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쿠폰 지급</td></tr>
<tr><td>10.1. ~ 사업종료</td><td>2만원 이상 1회 주문시 5천원 쿠폰 지급</td></tr>
</table></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02)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구조에 기인한 높은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배달앱으로서 수수료 2% 이하, 지역화폐 연계, 광고료 없음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계 단계에서 공공배달앱 간의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한 자부담액 설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사업기간(2025.6.~12.) 동안 공공배달앱의 결제액은 7,062억원으로 직전년도 같은 기간 결제액 1,761억원에 비해 5,301억원(+301.1%) 증가하였으며,[103] 공공배달앱 쿠폰은 결제액 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인쿠폰 5천원을 지급하여 할인쿠폰의 4배 이상의 결제액(매출)[104]이 정부 지원사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환산하면 수수료율이 2%인 경우에는 쿠폰지급액의 8% 이상이 수수료 수익으로 발생할 것임.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업체마다 수수료율을 거래액의 2%에서 0%까지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음. 2025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공배달 12개 업체 중 수수료율을 2.0%로 책정한 업체는 7개, 1.5% 1개, 1.0% 1개, 0% 3개임.

일례로 공공배달앱 쿠폰이 가장 많이 지급된 A사는 전체

103)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의 효과평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26. 4.
*기타 반사실적을 차감한 결제액 증가분은 3,443억원으로 추정

104) 쿠폰지급 기준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쿠폰발급액 대비 발생한 결제액은 4~6배인데, 보수적인 추정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4배로 단순화함.

연번	기간	쿠폰 지급기준	쿠폰액 대비 결제액 발생
1	6.10. ~ 7.24.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 쿠폰 지급	6배 이상
2	7.25. ~ 9.30.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쿠폰 지급	4배 이상
3	10.1. ~ 사업종료	2만원 이상 1회 주문시 5천원 쿠폰 지급	4배 이상

쿠폰지급액 648억 6,900만원 중 420억 5,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A사의 배달수수료는 2%이므로 A업체의 쿠폰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약 33억 6,4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됨.

【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관련 수수료율 및 수익 추정 】

(단위: 백만원)

배달앱	쿠폰 지급액	쿠폰으로 인한 결제액(A)	수수료율 (B)	배달앱 수익추정 (A × B)
A사	**42,052**	**168,208**	**2.0%**	**3,364**
B사	12,327	49,308	1.5%	740
C사	4,082	16,328	2.0%	327
D사	3,743	14,972	1.0%	150
E사	754	3,016	2.0%	60
F사	635	2,540	2.0%	51
G사	459	1,836	2.0%	37
H사	291	1,164	없음	0
I사	179	716	없음	0
J사	134	536	2.0%	11
K사	110	440	2.0%	9
L사	104	416	없음	0
계	**64,870**	**259,480**	-	**4,749**

주) 쿠폰으로 인한 거래액: 해당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쿠폰으로 인한 거래액은 2만원 이상 주문시 5천원 쿠폰을 발생하므로, 이를 단순 환산하여 추정함 (사업 도중 세부방식 변경은 미반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각색하여 추정

아울러, 배달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배달앱 운영사는 입점업체의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대출 등 금융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반면, 일부 배달앱 운영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쿠폰 발행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오히려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앱 운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는 배달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수료율 차이 등에 따른 자부담 비율 설정 등 의도한 정책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6년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14)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및 예산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농장주 및 도축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이 544억 1,3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834억 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378억 2,3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35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8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105)]

【 2025회계연도 개식용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	54,413	-	4,700 △4,700	83,410	137,823	135,956	1,866	1	22,270
-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48,597	-	4,700	83,410	136,707	135,147	1,560	-	15,37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0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3741-300)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지원” 사업은 개식용종식법 제11조에 근거하여[106] 폐업신고를 한 개사육농장주를 대상으로 ① 폐업이행촉진금, ② 철거비 및 ③ 시설물잔존가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이행촉진금을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어 처벌이 유예되는 2년 6개월의 기간을 총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폐업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그 외 철거비 및 시설물잔존가액은 폐업시기와 무관하게 지급하되,

위법사항이 존재하는 일부 개사육농장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음.[107]

---

1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개사육농장 시설물 잔존 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해야 한다.

107)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폐업지원의 내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3. 해당 개사육농장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4. 해당 개사육농장이 「농지법」 제35조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된 경우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폐업이행촉진금 구간별 기간 및 두당 지원단가 】

구분	개사육농장주 폐업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간	'24. 8. 7. ~'25. 2. 6.	'25. 2. 7. ~'25. 8. 6.	'25. 8. 7. ~'25. 12. 21.	'25. 12. 21. ~'26. 5. 6.	'26. 5. 7. ~'26. 9. 21.	'26. 9. 22. ~'27. 2. 6.
	6개월	6개월	4개월 15일	4개월 15일	4개월 15일	4개월 15일
두당 지원단가	60만원	52.5만원	45만원	37.5만원	30만원	22.5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폐업구간 중 2025년이 포함되는 구간은 1구간부터 4구간까지의 총 4개 구간에 해당하는데,

2024년 및 2025년 월별 폐업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폐업시기에 따른 구간별로 1구간에 611호, 2구간에 468호, 3구간에 125호의 개사육농장에서 각각 폐업신고가 있었으며, 4구간의 경우 2025년 연내에 폐업신고를 한 개사육농장주는 존재하지 않았음.

【 2024년 및 2025년 개사육농장주 월별 폐업신고 현황 】

(단위: 호)

연도	2024					2025													
구간	1							2							3					4
월	8	9	10	11	12	1	2	2	3	4	5	6	7	8	8	9	10	11	12	12
신고자수	17	-	4	2	13	132	443	4	2	4	12	14	106	326	2	7	1	7	108	-
	611							468							125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에서 예산현액 1,367억 700만원 중 1,35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집행액과 이월액은 모두 1·2구간에 대한 폐업지원금임.

그런데,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폐업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3구간의 경우, 구간 전체가 2025년 연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

【 2025년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폐업이행 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비	기타 비용
총계	135,147	84,824	38,274	11,570	479
1구간	80,384	51,109	21,567	7,403	305
2구간	54,763	33,715	16,707	4,167	174
3구간	-	-	-	-	-

※ 주1: 기타비용은 감정평가비 및 보호비용이 해당됨
※ 주2: 4구간은 2025년 연내 폐업신고자가 존재하지 않음
※ 주3: 5구간 및 6구간은 구간 내에 2025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구간의 마지막 달에 신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 한편, 신고 이후에도 시설물 잔존가액 평가 및 철거에 4~8개월 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연내 3구간 폐업지원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이를 2025년이 아닌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므로,[108] 3구간에 대한 폐업지원금 역시 2025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시설 잔존가액 평가 및 철거에 시간이 소요됨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 중 상당한 비중[109]을 차지하는 폐업이행촉진금은 사육시설과는 무관하게 연평균사육마릿수(단,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양식 】

[별지 제1호서식]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농장명(명칭)		농장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농장 주소		농장 전화번호	

현재 사육마릿수 (신고일 기준)	연평균 사육마릿수	실 사육면적 (케이지, 평사 등)	농장 총 면적
마리	마리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의 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2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10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09) 2025년 동 내역사업 집행액 기준 62.8%

폐업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폐업이행촉진금의 일부(농가별 지급총액의 80%이내)는 시설물잔존가액 및 철거비보다 조기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폐업을 신고한 농장의 연평균사육마릿수는 이미 시장·군수·구청장이 2024년 5월 6일까지 제출받은 운영신고서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인 점,

폐업이행촉진금 산정 시 농장주의 폐업지원 신청 이후 해당 농장 시설의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약 10일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비에 비해 폐업이행촉진금의 산정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에 3구간 신고자에게 지급할 폐업이행촉진금의 재정소요를 별도로 추계한 후 적정 금액을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별도 추계 없이 단순히 3구간 신고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전액을 202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및 예산 집행에 있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반려동물 산업육성: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의 별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급수별 자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급 자격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1급 자격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반려동물 산업육성 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35억 1,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35억 3,200만원 중 34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110]

【 2025회계연도 반려동물 산업육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반려동물 산업육성	3,511	21	-	3,532	3,405	-	127	3,454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운영	680	-	-	680	680	-	-	75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10)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반려동물 산업육성(3741-344)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운영” 사업은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111]에 따라 신설된 국가자격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112]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참고로, 동 자격시험은 202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24년 제1회 시험에서는 1·2급 중 2급 시험만을 시행하였으나, 2025년 제2회 시험에서는 모든 급수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격시험의 운영을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위탁하고 있음.

---

111) 2023년 4월 27일 시행

11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1. 제3항에 따라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의 취소를 받은 사람
2. 제32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의 별도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시험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1급과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2급으로 급수를 분리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1급 자격의 경우 2024년이 아닌 2025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는 13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최종 4명이 합격한 결과 아직 1급 자격자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시험 시행 결과 】

(단위: 명, %)

회차	1급 1차시험(필기)				1급 2차시험(실기)			
	원서 접수자	응시자 (A)	합격자 (B)	합격률 (B/A)	응시자격자 [당해년도 1차면제자]	응시자(C) [당해년도 1차면제자]	합격자 (D)	합격률 (D/C)
제1회 (2024년)	미 시 행							
제2회 (2025년)	13	13	12	92.3	12 [-]	11 [-]	4	36.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시험 시행 결과 】

(단위: 명, %)

회차	2급 1차시험(필기)				2급 2차시험(실기)			
	원서 접수자	응시자 (A)	합격자 (B)	합격률 (B/A)	응시자격자 [당해년도 1차면제자]	응시자(C) [당해년도 1차면제자]	합격자 (D)	합격률 (D/C)
제1회 (2024년)	2,318	1,905	1,733	91.0	1,733 [-]	768 [-]	356	46.4
제2회 (2025년)	693	576	517	89.8	1,894 [1,377]	670 [383]	274	40.9

※ 주: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에게 당해연도 1차시험을 면제하는 유예제도 시행 중으로,
t년도 2차시험 응시자격자 = $(D_{t-1}-B_{t-1})+B_t$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1급 시험은 18세 이상인 자 중 ① 관련 분야[113]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② 2급 자격 획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만이 응시할 수 있어,[114]

아직 2급 시험이 최초로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10년 이상 실무경력자만 응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1급 시험의 응시자격자가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동 자격제도는 현재 제도 시행 초기로서 아직 자격을 활용하는 기관이 많지 않은 한편, 활용하더라도 급수에 관계없이 자격 보유 여부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13) 관련 분야 경력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곳,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봉사동물을 동반하여 활동한 경력

※ 「동물보호법」 제69조 반려동물영업(허가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반려동물영업(등록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114)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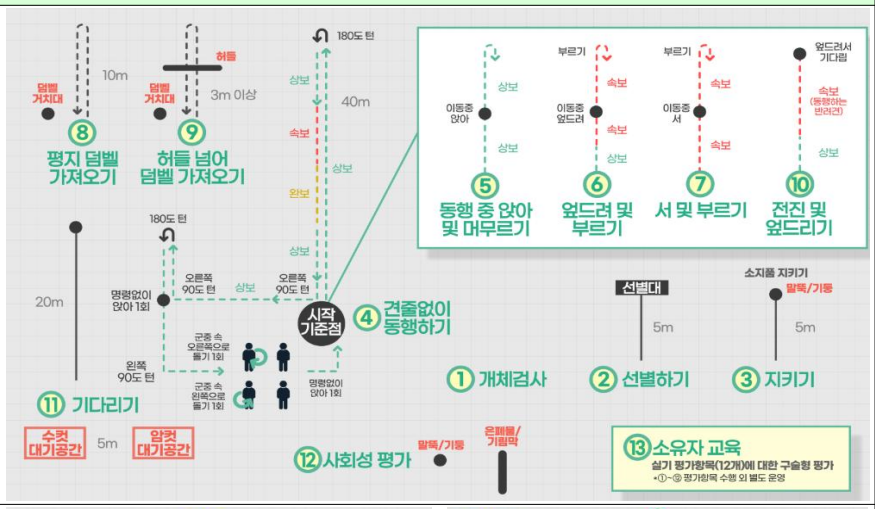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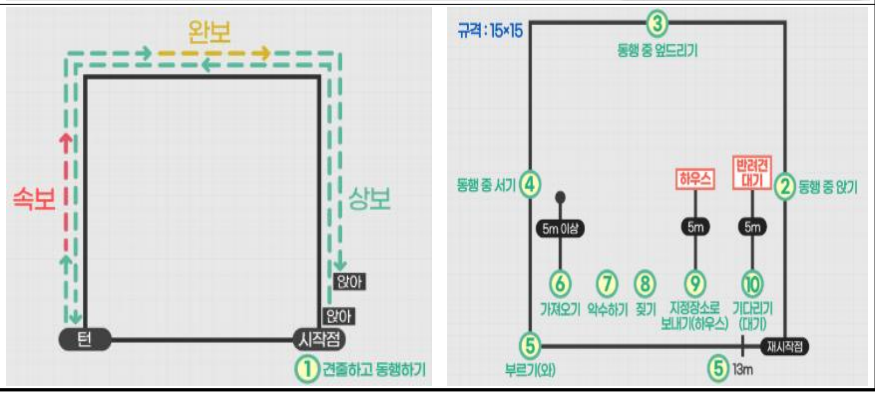
1. 등급구분·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구분 \ 등급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나.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을 갖출 것 1)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18세 미만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18세 이상인 사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1급 시험이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 평가를 위하여 2급 시험에 비해 세부적이고 다양한 실기 과목을 진행하고 있어 별도의 준비가 요구됨을 고려할 때,

향후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1급 자격을 취득할 유인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및 2급 시험 실기과목 】

구분	실기과목	시험장 규격
1급		가로 50m × 세로 30m 이상
2급		가로 15m × 세로 15m 이상

※ 자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홈페이지(apms.epis.or.kr/pet/home/kor/main.do)

□ 그러므로, 향후 예상되는 1급 자격시험 응시자격자 확대에 대응하여 급수별 자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2급 자격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1급 자격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는 1급 자격을 행동교정 상담 및 맹견 기질평가에 특화된 자격으로서 계획하였으며,[115][116]

국가자격에 관한 일반법인 「자격기본법」에서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등록이나 근로자의 채용 등에 있어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17]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정계획과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맹견의 기질평가를 수행하거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행동지도 및 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위촉하는 등에 있어 1급 자격을 우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

115)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16)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2025, p. 51.

117)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승진·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허가·등록 대상인 반려동물 영업[118]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지도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1급 자격 보유자를 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급 자격 시험 응시자격자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수별 자격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급 자격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1급 자격 활용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의·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8)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2)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 근거규정 마련 필요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제3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19)]

이에 따라, 현재 전문기관인 농정원은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필기시험의 경우 5만원, 실기시험의 경우 15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납부받고 있으며,

제1회 시험에서는 2억 4,600만원, 제2회 시험에서는 1억 5,100만원의 응시수수료 수입이 각각 발생하였음.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회차 (연도)	수입(A)	지출			잔액 (A-B)
		소계(B)	시험 시행비	부가가치세 등	
제1회 (2024년)	246	246	220	26	-
제2회 (2025년)	151	94	78	16	57

※ 주: 시험 시행비는 시험인력, 필기/실기 시험장 대관, 자격관리시스템 유지 등으로 지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9)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현재 농정원은 동 응시수수료 수입을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수입의 경우 2억 4,6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2025년 수입은 1억 5,100만원 중 9,400만원(62.3%)을 지출하고 잔액인 5,700만원(37.7%)은 농정원이 잉여금으로서 보유하였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발생한 잉여금의 경우 농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 자격시험 비용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응시수수료 50% 경감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런데, 동 응시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 간의 업무위탁 계약서, ② 농정원 회계규정 및 ③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서도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120]

120) 참고로, 농정원 회계규정 중 제73조(잉여금처리)에서는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을 전년도 이월 손실금의 보전 및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응시수수료 수입 잔액 관리 및 활용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은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이, 농정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응시수수료 수입 잔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의 잔액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6)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추진 여건 관리 미흡에 따른 실집행 부진 개선 필요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은 2025년 실집행률이 41.1%에 그쳐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별 사업추진 여건에 대한 사전 파악 및 관리,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가축사체처리지원은 가축사체처리 과정,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살처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77억 3,700만원 중 55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121)]

【 2025회계연도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축사체처리지원	7,737	-	-	7,737	5,522 [4,228]	-	2,215	5,051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480	-	-	1,480	1,480 [622]	-	-	1,2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2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사체처리지원(3940-34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매몰지가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리 중인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현장조사·점검, 환경오염 우려 가축매몰지의 발굴·복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첫째, 지자체의 실집행률 저조 및 발굴·소멸 계획 대비 실적 미달 등 전반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 14억 8,0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15억 1,400만원 중 실집행한 금액은 6억 2,200만원(실집행률 41.1%)에 그쳤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계약·업체 선정을 완료하고도 실집행률이 6.7%에 그쳤고, 전라남도 역시 10.7%에 그쳤음.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매몰지 발굴·소멸 계획은 70개소였으나 실제 발굴 완료는 44개소(62.9%)에 불과하였음.

【 지자체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농식품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 행액(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율 (B/A)
인천	50	50	50	-	50	35	-	15	70.0
경기	455	455	455	-	455	252	-	203	55.4
강원	310	310	310	14	324	121	80	123	37.3
충북	15	15	15	-	15	15	-	-	100.0
충남	79	79	79	-	79	71	-	8	89.9
전북	120	120	120	-	120	8	112	-	6.7
전남	280	280	280	-	280	30	-	250	10.7
경북	131	131	131	20	151	66	-	85	43.7
경남	40	40	40	-	40	24	-	16	60.0
합계	1,480	1,480	1,480	34	1,514	622	192	700	4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추진 실적 】

(단위: 건)

구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유보	합계
계획	-	22	13	-	3	6	14	6	2	4	70
실적	1	21	8	1	5	-	3	3	2	-	4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ASF 등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방역 대응과 민원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있었고, 조성이 오래된 매몰지(10년 이상)의 경우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려워 계획 대비 실집행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매몰지 발굴·소멸 사업은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매몰지 조성 지역 주민의 악취 민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온 위험요인으로 사업 착수 전 단계에서 조정·관리되었어야 함.

또한, 매몰지의 조성 시기와 규모는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조성된 지 오래된 매몰지라 하더라도 사업 착수 전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발굴·소멸 가능 여부와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던 바, 사업 착수 전 단계의 사전 관리가 미흡하여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점검이 이를 대응하는 데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내용은 용역 입찰절차 준수 여부, 용역계약 증빙서류 확인 등 부정수급 발생 요소 확인에 집중되어 있을 뿐,

주민 민원이나 계약 지연과 같은 실집행 부진 요인에 대한 점검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현지점검이 이루어졌던 경기와 전남의 경우 실집행률이 각각 55.4%와 10.7%로 교부받은 예산의 절반 또는 그 이하밖에 집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점검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으로 그쳤고, 실집행률이 6.7%로 가장 낮았던 전북의 경우 현지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이는 현장점검이 부정수급 여부라는 절차적 적정성 확인에 그치고, 실집행 부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로는 이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 2025년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현지점검 결과 】

구분	점검일	점검 대상	주요 점검내용	결과
상반기	7.24.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 용역 입찰 과정 적정 여부 • 용역계약 증빙서류 점검	이상없음
하반기	12.12.	전남 함평군	• 용역 입찰 과정 적정 여부 • 용역계약 증빙서류 점검	이상없음
	12.16.	충남 당진시, 서산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영상회의·연찬회 등을 통해 우수 시·군의 사례를 공유하도록 환류 단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AI 방역 결의 및 평가대회에서 '가축매몰지 효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악취저감 시설 연결을 통한 악취 발생 예방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 1회, 1박 2일의 단기 행사에 그쳐 상시적 환류 체계로 보기 어려우며, 공유된 내용 역시 악취 저감 등 환경관리 측면에 국한되어 있어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환류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몰지 발굴·소멸 대상지 선정 시 주민 수용성, 매몰지 노후 정도 등 지역별 사업추진 여건을 사전에 파악·관리하여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기별 현장점검의 범위를 부정수급 여부 확인 위주에

서 벗어나 지자체별 사업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통해 파악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실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저조한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전파·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가축백신지원: 수요예측 미흡에 따른 백신 재고 증가로 인한 백신 관리 비효율 개선 필요

○ 말 예방백신 등 지원 사업은 백신 사용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재고가 급증하고 일부 백신은 폐기가 예정되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요 감소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매계획에 반영하고 백신 접종 및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축백신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약, 말 예방백신,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49억 2,500만원 중 648억 6,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122)]

【 2025회계연도 가축백신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축백신지원	66,983	280	△2,338	64,925	64,867 [59,937]	-	58	55,569
-말 예방백신 등 지원	1,827	-	-	1,827	1,827 [1,459]	-	-	1,337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2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축백신지원(3940-34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말 예방백신 등 지원’은 국내 말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말 전염병 예방백신, 수의사 백신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에 민간경상보조를 통하여 말인플루엔자·선역·일본뇌염 등 예방백신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말 예방백신 구매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구매계획이 수립되어 백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25년 말인플루엔자 백신은 구매량이 35,148병에서 36,500병으로 늘어난 반면 사용량은 34,174병에서 29,429병으로 감소하여, 차년 이월량이 3,653병에서 10,390병으로 2.8배 증가하였음.

일본뇌염 백신 역시 구매량이 3,600병에서 3,700병으로 늘어난 반면 사용량은 3,412병에서 3,046병으로 감소하여, 차년 이월량이 176병에서 685병으로 3.9배 증가하였음.

【 말 예방백신 최근 5년간 구매 및 사용현황 】

(단위: 병)

백신명	연도	재고량(A)	구매량(B)	사용량(C)	폐기량(D)	차년이월 (A+B-C-D)
말 인플루엔자	2021년	2,945	37,730	38,163	306	2,206
	2022년	2,206	38,364	37,647	373	2,550
	2023년	2,550	36,485	35,641	286	3,108
	2024년	3,108	35,148	34,174	429	3,653
	2025년	3,653	36,500	29,429	334	10,390
선역	2021년	2,651	20,023	19,601	1,313	1,760
	2022년	1,760	20,400	19,601	207	2,352
	2023년	2,886	18,400	18,281	391	2,614
	2024년	2,614	17,000	17,118	179	2,317
	2025년	2,317	14,000	14,201	198	1,918
일본뇌염	2021년	0	4,300	3,729	571	0
	2022년	0	4,150	3,732	143	275
	2023년	275	3,600	3,487	225	163
	2024년	163	3,600	3,412	175	176
	2025년	177	3,700	3,046	146	68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3종 백신(인플루엔자·선역·일본뇌염) 합산 차년 이월량은 2024년도 6,146병에서 2025년도 12,993병으로 2.1배 증가하였고, 이 중 차년 이월된 선역 백신 1,318병은 현재 유효기한 경과로 폐기가 확정되어 있어 2026년도 폐기량은 2025년도 폐기량인 678병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임.

【 2025년 차년 이월된 말 예방백신별 유통기한 】

백신명	기한	수량
인플루엔자 (10,390병)	2027.01.09.	3,790병
	2027.06.18.	100병
	2027.10.29.	6,500병
선역 (1,918병)	2026.05.31.	1,318병(폐기확정)
	2027.05.31.	600병
일본뇌염 (685병)	2026.12.19.	685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백신 사용량 감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말 예방백신 접종비용을 농가가 한국마사회로부터 전액 지원받았으나, 2025년부터 상반기 접종비만 지원받고 하반기 접종비는 농가가 전액 부담하게 됨에 따라 농가의 백신접종 참여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 접종비 미지원 방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간 업무협의를 통해 2024년 9월 이미 확정되었으며, 백신 구매계획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5년 3월에야 승인된 것으로, 접종비 지원방식 변경 등 정책 변경에 따른 수요 변화를 구매량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대로라면 접종비 지원이 유지된

2025년도 상반기의 사용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어야 하나, 연 1회 상반기에만 접종을 실시하는 일본뇌염의 사용량(3,046병) 조차 최근 4개년 평균 사용량(3,590병)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방식이 변경된 2025년뿐 아니라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농가·접종두수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말 예방백신 상·하반기 접종 내역 】

(단위: 개소, 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참여농가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290	1,283	1,237	1,218	1,100	1,180	1,147	1,110	1,016	905
접종두수	18,526	19,601	18,580	19,067	17,360	18,281	17,056	17,118	15,228	14,201

※말인플루엔자 연 2회(상·하반기), 일본뇌염 연 1회(상반기), 선역 연 1회(하반기) 접종 실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지원 방식과 별개로 나타나는 전반적 감소 추세는 하반기 접종비 미지원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만으로는 사용량 감소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량 감소의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접종비 지원 정책 변경 등 백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우선 소진하는 등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방백신에 대한 비효율적 관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말 예방백신 접종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농가 대상 백신접종 필요성 홍보 및 참여 독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빈집 매물화·거래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간의 연계 등 사업효율성 제고 필요

○ 빈집 매물 정보가 별개의 정보화시스템에 분산 등록되어 접근성이 저하되고, 각각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상호 간에 데이터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 및 불용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은 농촌소멸 극복을 위해 농촌 체험 기회 확대와 빈집 활용 제고로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19억 8,900만원 중 1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123)]

【 2025회계연도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1,989	-	-	1,989	1,236	-	753	4,555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1,350	-	-	1,350	597	-	-	1,030
-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189	-	-	189	189	-	-	825
-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450	-	-	450	450	-	-	2,7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2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4160-448)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 지역에 빈집실태조사를 통하여 빈집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매물화함으로써 민간의 빈집 거래 및 활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8억원 중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② 빈집 매물화 작업 및 거래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활동수당 예산 5억 5,0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을 집행함.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내역사업 개요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하위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5회계연도	
			예산	결산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빈집실태조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 현황 파악 (편성근거: 20개 시·군 × 80백만원 × 국비 50%)	800	345
	빈집 거래 활성화 (빈집은행)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매물화 및 거래 (편성근거: 2,200호×50만원 ×국비 50%)	550	252
합 계			1,350	597

※자료: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5. 3.)

(1) 빈집은행 관련 정보화시스템 연계 필요

□ 동 사업의 하위 내역사업인 "빈집 거래 활성화(빈집은행)"는 빈집 소유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빈집을 정보화시스템에 매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협업 공인중개사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빈집 매물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빈집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빈집 매물화를 위한 정보화시스템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 종합포털 “그린대로”(2023. 7. 서비스 개시)를 활용하여 농어촌 빈집의 주소, 가격, 담당 부동산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통합관리시스템 “빈집애(愛)”(2025. 3. 서비스 개시)를 통하여 도시·농어촌 구분 없이 전국의 빈집 매물에 대한 주소, 가격, 담당 중개사 등의 정보를 등록·공개하고 있음.

【 빈집 매물화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현황 】

구분	그린대로	빈집애(愛)
운영 목적	귀농·귀촌 단계별 정보·서비스 통합 제공	전국 빈집정보 통합 제공·관리
관리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추진 경과	· ‘그린대로’ 사이트 오픈(’23.7.) · ‘그린대로’ 내 빈집은행 구축(’25.5.) 및 오픈(’25.8.)	· ‘빈집愛’ 사이트 오픈(’25.3.) · 시스템 고도화(’25.6.~’25.12.) * 빈집매물 조회, AI기반 빈집 발생 위험 예측 기능 등 추가
주요 기능	· 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농지·주거·일자리·빈집 등 정보 제공, 귀농·귀촌 교육 등 ·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보, 청년농통합플랫폼 연계	· (대민用) 전국 빈집 현황, 정비실적·활용사례 소개 등 · (업무用) 신규 빈집 모니터링, 실태조사·정비이력 등 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물화한 빈집은 “그린대로”에만 등재되고 있고, 국토교통부가 매물화한 빈집은 “빈집애(愛)”에만 등재되어, 농어촌 빈집 매물이 각각의 정보화시스템에서 별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빈집을 거래하려는 수요자는 두 플랫폼을 각각 확인하여야 하므로 접근성이 저하되고 매물의 검색·비교가 어려우며, 유사 시스템의 이중 운영에 따른 재정 비효율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025. 5.)에서 빈집 매물 공개 등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빈집애(愛)”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여 매물을 등록하는 방식은 범정부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025. 5.) 】

종합계획 중 빈집애(愛)를 통한 전국 빈집 관리 내용(일부)



○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업공인중개사 활동비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체계**(소유자·수요자·중개업자) 발굴 및 도입 추진(‘25.上)

- **농촌지역***은 **17개 시·군****과 **협업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 발굴, 상세 정보 제작 및 **민간 빈집 거래지원** 추진(‘25.上)

* 농식품부, 농촌 빈집은행 사업, 국비 5.5억원, 2,200호 발굴 목표로 추진

**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 발굴한 매물은 귀농귀촌포털(그린대로, 농정원),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과 연계하며, 하반기 빈집애(愛) 플랫폼(부동산원)으로 확산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물 정보 등록 플랫폼을 “빈집애(愛)”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최소한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어느 플랫폼에서든 전체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빈집 거래 활성화(빈집은행) 사업의 집행부진 및 사업비 이월

□ 동 사업의 하위 내역사업인 "빈집 거래 활성화(빈집은행)"는 2025년 예산 5억 5,0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은 2,200만원(실집행률 4.0%)에 그쳤으며, 보조사업자의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중 1,600만원은 반환되고 2억 1,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빈집 거래 활성화(빈집은행)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교부액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550	252	22	16	214	4.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는 동 사업의 예산이 2025년에 2,200호의 빈집매물등록 및 거래를 목표로 호당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규모(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빈집 매물 등록은 130건, 거래 완료는 42건에 그치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것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저조했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준비로 빈집은행이 2025년 8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등록 및 거래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수요나 시스템 구축 기간은 사업설계 단계에서 조사하여 예측 및 관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실적 부진은 특별한 외부변수가 아닌 사업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차 이월·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편성 및 교부규모를 산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빈집실태조사의 계획적 추진 필요

□ 하위 내역사업인 “빈집실태조사”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124]에 따라 농촌지역의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을 빈집으로 판정하고, 빈집별 등급을 산정하는 사업임.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5년 단위)과 이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24)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빈집실태조사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에 신규 반영되어 1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2026년에는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농촌을 포함하는 시·군·구가 전국 179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사업 규모는 전체 대상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임.

또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국비 지원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2026년 35개, 2025년 82개, 2024년 61개, 2023년 18개 지자체(서울 자치구 제외)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며, 26개 시·군·구는 관계부처 합동[125]으로 빈집 기준·평가 체계를 마련한 이후(2023년)부터 현재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한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126]

【 연도별 빈집실태조사 실시 현황 】

연도	2023	2024	2025	2026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	18	61	82	35
조사물량(호)	13,759	38,618	55,214	31,356

주)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외. 2026년은 진행 중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제출

125)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6)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특히, 2026년 6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빈집정비계획(5년 단위)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68.1%, 이행계획(1년 단위)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는 55.1%에 불과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실태조사의 공백이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연으로 이어져 빈집 관리체계가 상당수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태조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집실태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법정 의무의 이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도시지역은 빈집실태조사 주기가 5년이고, 농어촌지역은 1년으로 조사주기가 상이하여,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2025. 5.)은 도시와 농어촌 간 실태조사 주기 등 상이한 빈집 관리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는 도시지역 빈 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2026.5.)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임.

19) 성과지표 관리: 사업의 성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성과지표인 '종자 충실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와 실적이 모두 99.8%로 동일하여 시설현대화 등에 따른 성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선수율·정상종자 손실률 등 공정효율 지표와 시설투자 전·후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종자수매·공급) 현행 성과지표는 전체 보급종 공급량이 감소하여도 신품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어 실제 공급규모와 농가의 우량종자 접근성을 나타내기 어려우므로, 국립종자원은 향후 신품종 공급량·전체 공급량·공급비중 및 작물별 수요충족도를 함께 관리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사업은 종자건조, 선별 등 종자정선 및 위탁 농가의 재배현황 파악 등 종자검사를 위한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85억 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1,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87억 5,800만원 중 8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127]

【 2025회계연도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8,540	218	-	-	8,758	8,338	-	420	8,512
-기존정선시설현대화	5,655	218	123	-	5,996	5,584	-	412	5,542
-종자검사및품질관리	2,817	-	△124	-	2,693	2,685	-	8	2,902
-직원역량강화	68	-	1	-	69	69	-	-	68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

127)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종자원)(6432-300)

□ 종자수매·공급 사업은 농가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을 수매·공급하고 우수 신품종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품종 전환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727억 4,400만원 중 72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음.[128)]

【 2025회계연도 종자수매·공급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종자수매·공급	72,744	-	-	-	72,744	72,738	-	6	68,428
- 종자 수매	71,260				71,260	71,260			66,675
- 종자 신청·공급 홍보	90				90	90	-	-	90
- 밀 종자 구입비 지원	1,394				1,394	1,388		6	1,663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

128)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종자수매·공급(6435-334)

나) 검토 의견

□ 「국가재정법」 제85조의6[129]은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7[130]에 따라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성과지표는 해당 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어떠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국립종자원 소관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사업과 종자수매·공급 사업의 성과지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129)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30)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종자 충실도 지표의 변별력 제고 및 보완지표 마련 필요

□ 시설현대화 및 품질관리 사업의 성과지표인 종자 충실도[131]의 실적은 2020년 이후 계속 99.8%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목표와 실적이 모두 매년 99.8%로 동일하게 설정·달성되고 있음.

【 연도별 종자 충실도 목표 및 실적 】

(단위: %)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	99.4	99.4	99.7	99.8	99.8	99.8	99.8	99.8
실적	99.3	99.6	99.8	99.8	99.8	99.8	99.8	99.8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

□ 성과지표는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운영에 환류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어떠한 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변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동 사업은 최근 수년간 목표와 실적이 동일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어 시설현대화 등에 추가적인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그에 따른 성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립종자원은 충실도를 무리하게 높일 경우 정상 종자까지 부산물로 배출되어 종자손실이 증가할 수

131) 벼 보급종의 정선과정에서 물에 뜨는 종자의 비율인 부상률을 100%에서 차감하여 산출

있고,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의 영향도 있어 목표를 계속 상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는 목표치를 매년 기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반드시 적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종자 충실도는 정부 보급종의 품질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으나, 목표와 실적이 장기간 동일한 수준에 머물 경우 시설현대화나 정선공정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성과를 식별하기 어렵고, 정선과정에서 정상 종자가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등 공정효율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기관 전체 평균값만으로는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개별 정선센터의 투자 전·후 성과를 구분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지표만으로 시설현대화의 직접적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립종자원은 동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종자 충실도를 정부 보급종의 품질수준을 확인하는 지표로 유지하되, 정선수율[132] 또는 정상종자 손실률 등 공

132) 수확한 종자에서 이물질, 미숙립·피해립, 규격 미달 종자 등을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보된 정상 종자의 비율

정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보완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정선센터에 대해서는 종자 충실도와 정선수율 등 주요 성과의 투자 전·후 변화를 일정 기간 별도로 추적하여 시설투자가 실제 품질 유지와 공정 효율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보완지표의 산식·자료원·측정주기 및 목표치 설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종자수매·공급: 공급규모와 수요충족도를 반영하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국립종자원은 종자수매·공급 사업의 성과지표로 신품종 보급종 공급량을 전체 보급종 공급량으로 나눈 '신품종 공급비중'을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품종 공급비중은 신품종의 실제 공급규모뿐만 아니라 전체 보급종 공급규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상대지표이므로, 지표의 상승이 반드시 신품종 공급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현행 성과지표 체계 】

구분	내 용	문제점
분자	농가에 실제 공급된 신품종 보급종의 규모	전체 공급량(분모)이 신품종 공급량(분자)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 신품종 공급량이 동일하거나 감소하여도 성과목표인 신품종 공급비중은 상승
분모	신품종을 포함한 전체 보급종 공급규모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자료 재구성

예를 들어, 일반벼 보급종 수매단가의 경우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연동되어 확정되므로,

산지 쌀값이 예산편성 당시의 예상보다 상승하면 동일한 예산으로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어 분모인 전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밖에도 전체 공급량은 작물별 재배면적, 농가의 신청수요, 품종 전환계획, 채종 실적 및 민간종자 공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즉, 성과지표인 신품종 공급비중이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품종이 더 많이 공급되었거나 농가의 우량종자 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농가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립종자원은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첫째, 신품종 보급종 공급량, 전체 보급종 공급량 및 신품종 공급비중을 동일한 시계열에서 함께 관리하여 신품종의 절대 공급이 확대된 것인지, 전체 공급량 감소로 비중만 상승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요 작물별 신품종 공급실적을 함께 관리하고, 신품종의 분류기준과 인정기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요 작물별 농가 신청량과 실제 공급량을 함께 관리하고 신청량 대비 공급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농가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분석할 때에는 작물별 재배면적, 농가 신청량, 채종·생산 실적, 품종 전환계획 및 수매단가 등 주요 변동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신품종 공급량과 전체 보급종 공급량의 증감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 성과관리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률 제고 필요

○ 국립종자원은 무병 모수포 조성을 위해 5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2025년 실집행액은 8,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40.0%에 그쳤고, 특히, 상주시·문경시·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연도 내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지방비 확보와 계약·착공 등 선행절차 및 기교부액의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보조금의 교부 여부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연도 말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은 과수 묘목산업 선진화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수 5대 과종의 무병묘목 생산·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종자원은 2025회계연도 예산 33억원 중 31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0만원을 불용하였음.[133]

【 2025회계연도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과수무병묘목 생산공급지원	3,300	3,300	3,171	120	9
-과수우량묘목(원종) 생산지원	1,400	1,400	1,392	-	8
-과수무병묘목(보급종) 생산공급지원	1,900	1,900	1,779	120	1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자료

13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6432-305)

나) 검토의견

□ 무병 모수포 조성사업의 경우 국립종자원 단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피보조기관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이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였음.

2025년 국립종자원은 옥천군·영주시·상주시·문경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각각 4,000만원씩 총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연도 내 실제 집행된 금액은 8,0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40.0%에 그쳤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특히, 상주시·문경시·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도 2025년 중 실집행이 전무하였음.

□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134]에 따르면,

---

13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의 기교부액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보조금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부시점마다 사업 추진상황과 기교부액의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에 반영하려는 데 있음.

□ 그런데, 국립종자원은 2025년 동 사업의 보조금을 3월부터 12월까지 7차례로 구분하여 교부하였으나, 보조금 교부 시 개별 사업의 지방비 확보, 사업자 선정, 계약·착공 등 실제 추진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25년 무병 모수포 조성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세목	피보조기관명	국고보조율(%)	교부액								이월액	예산현액(C)	집행액(D)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D/C)
				소계	1차(3.21.)	2차(6.16.)	3차(8.7.)	4차(9.10.)	5차(11.6.)	6차(11.24.)	7차(12.9.)						
과수무병묘목생산공급지원(6432-305)	320-07	옥천군농업기술센터	40	40	14	14	12	-	-	-	-	-	40	40	-	-	100
	320-07	영주시농업기술센터	40	40	-	-	-	20	20	-	-	-	40	40	-	-	100
	320-07	상주시농업기술센터	40	40	-	-	-	20	20	-	-	-	40	-	40	-	0
	320-07	문경시농업기술센터	40	40	20	20	-	-	-	-	-	-	40	-	40	-	0
	320-07	제주특별자치도	40	40	-	-	-	-	-	20	20	-	40	-	40	-	0
	소 계			200	34	34	12	40	40	20	20	-	200	80	120	-	40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자료

특히, 상주시('25.12. 지방비 확보), 문경시(낙찰업체의 계약 포기로 '26.3. 계약·착공) 및 제주특별자치도('25.11. 대상자 선정)는 연도 내 계약·착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국고보조금 4,000만원이 각각 전액 교부됨에 따라, 이후 실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었음.

【 2025년 실집행이 전무한 사업의 추진현황 】

(단위: 백만원)

지역	2025년 교부액	2025년 실집행액	주요 추진현황
상주	40	-	'25.8. 재공모 선정 → '25.12. 지방비 확보 → '26.8. 입찰 추진 예정
문경	40	-	'24.9. 대상자 선정 → '25년 계약추진 지연 → '26.3. 계약·착공
제주	40	-	'25.11. 재공모 선정 → '26.4. 계약·착공·준공

※ 자료: 국립종자원 제출자료 재구성

□ 물론, 사업자 또는 낙찰업체의 포기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사정을 모두 국립종자원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기교부액의 집행 여부와 사업 추진가능성을 재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분할교부 제도의 취지임.

그럼에도 국립종자원이 연도 내 집행가능성이 낮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단계와 무관하게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 결과, 국가 단계에서는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사업현장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였음.

즉, 2025년 실집행률이 40%에 그친 것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연을 넘어 국립종자원이 사업 추진상황을 잔여 보조금 교부 여부와 충분히 연계하지 못한 데 주요 원

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립종자원은 향후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시 지방비 확보, 사업자 선정, 입찰·계약, 착공 및 기교부액의 실집행 여부 등 사업단계별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시기와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지연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선교부되어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1) 농산물원산지관리: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단순히 활동일수를 기준으로 수립된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을 보다 실적 중심의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산물원산지관리 사업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78억 7,300만원에 이·전용등 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78억 8,100만원 중 17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135]

【 2025회계연도 농산물원산지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산물 원산지관리	17,873	-	8	17,881	17,380	-	501	18,307

135)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산물원산지관리(6032-311)

나) 검토의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소속 공무원 1,466명 중 농산물 원산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에 해당하는 인원 1,110명(75.7%)을,

① 기동단속반(175명), ② 일반단속반(110명) 및 ③ 지원단속반(825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인원은 현재 농관원 본원, 9개 지원 및 121개 사무소에 각각 산재하여 근무 중임.

【 농관원 소속 특사경 구분 】

구분	역할	정원
기동단속반	- 전담반으로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상시 수행**	175명
일반단속반	-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와 타 업무를 **병행 수행**	110명
지원단속반	- 평시 타 업무 수행, **필요시**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 **지원**	825명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재가공)

【 농관원 소속 특사경 부서 및 정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합계	본원	시험소	지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110	24	2	199	91	73	112	110	174	162	137	26
기동단속반	175	8	-	46	14	10	19	12	21	21	20	4
일반단속반	110	-	-	14	11	12	11	11	15	14	19	3
지원단속반	825	16	2	139	66	51	82	87	138	127	98	19

※ 주: 지원 인원 중 기동단속반은 지원(도 단위)·사무소, 일반·지원단속반은 사무소(시·군 단위)에 소속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재가공)

□ 동 사업의 예산액 중 “특정업무경비”(250-03목) 13억 2,500만원은 농관원 소속 특사경 1,110명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농관원은 ① 단속·수사활동 일수와 ② 정보수집 또는 단속·수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각 단속반별로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을 설정한 후,

특사경 인원이 본인이 속한 단속반의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특정업무경비(기동단속반 20만원, 일반단속반 16만원, 지원단속반 6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강제수사 실적이 있는 특사경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음.

【 농관원 소속 특사경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구분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금액(월당)
기동단속반	- 단속·수사활동 일수가 **월 5일 이상** - 정보수집(보고서) 또는 단속·수사활동 실적 존재	20만원
일반단속반		16만원
지원단속반	- 단속·수사활동 일수가 **월 2일 이상**	6만원
공통	- 강제수사 실적(구속, 압수·수색, 체포영장 등) 존재	추가 10만원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재가공)

□ 그런데, 이와 같은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은 단순히 특사경의 소속 단속반과 단속·수사활동 수행 여부와 연계되는 것으로서, 해당 특사경이 실제로 달성한 실적 건수와는 연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단속·수사일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기동단속반을 제외하고는 월 평균 단속·수사일수가 지급기준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서, 그 이상으로 단속·수사 활동을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2025년 농관원 소속 특사경 평균 단속·수사일수 현황 】

(단위: 명, 일)

구분	인원		연내 단속·수사일수			특경비 지급기준 (E)	차이 (F=D-E)
	정원	현원 (A)	전체 (B)	평균 (C=B/A)	월 평균 (D=C/12)		
기동단속반	175	169	18,834	111.4	9.3	5	4.3
일반단속반	110	110	7,630	69.4	5.8	5	0.8
지원단속반	825	754	19,798	26.3	2.2	2	0.2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재가공)

□ 이에 따라, 농관원의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을 보다 실적 중심의 기준이 되도록 개선한다면 소속 특사경 인원에게 추가적인 단속·수사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수산물에 관련한 단속·수사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의 경우 소속 특사경에 대하여 단속반 또는 수행 업무 등과 무관하게,

원산지 제도 관련 과태료 부과 또는 벌칙 처분 실적 건수 등을 기준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품원 소속 특사경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

연번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	금액(월당)
1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활동(현장출장)을 **월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 적발 **실적이 없는 경우**	3만원
2	- 원산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월 1건**인 경우	5만원
3	- 원산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월 2건 이상**인 경우	7만원
4	- 원산지 **벌칙 처분 실적이 월 1건 이상**인 경우	12만원
5	- 원산지 거짓표시 범죄를 **직접 수사한 후 월 1건 이상 검찰에 송치**한 경우(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20만원
6	- 원산지 거짓표시 범죄와 관련하여 **전문수사(영장,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를 실시**한 경우(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20만원

※ 주1: 연번 1~4번 중 해당하는 기준으로 지급하되, 연번 5번 또는 6번에 해당하는 경우 1~4번 중 어느 하나와 중복하여 지급
※ 주2: 특정업무경비는 개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재가공)

□ 따라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단순히 활동일수를 기준으로 수립된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을 보다 실적 중심의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예산내역의 명확성 제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예산에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를 함께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행사별로 내역을 구분하여 그 규모와 집행내용이 드러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대표 종합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26억 6,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136]

【 2025회계연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대한민국농업박람회	2,662	-	-	2,662	2,662	-	-	2,662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2,662	-	-	2,662	2,662	-	-	2,662

13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대한민국농업박람회(7035-343)

나) 검토의견

□ “대한민국농업박람회”는 농업분야 대표 종합박람회로서 2019년 최초 개최된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혁신이 만드는 성장과 행복”을 주제로 개최되었음.

【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요 】

구분	주요내용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정	○ 2025. 9. 25.(목) ~ 9. 28.(일), 4일간
장소	○ aT센터(서울 양재동) 1·2전시관, 회의실 등
전시장 구성	① 농업과 삶, ② 농업의 혁신, ③ 활기찬 농촌, ④ 색깔 있는 농업으로 4가지 테마의 전시·체험관 구성 - 사진공모전, 사생대회, 생성형 AI 활용 영상공모전, 온오프라인 추석맞이 농축산물 판매기획전 등 부대행사 운영

※출처: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설명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1.)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은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시장 임차 등에 16억 5,200만원, 전시기획·대행에 8억원, 그 밖에 운영·관리비 2억 1,000만원 등 총 2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사업명	편성근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 26억 6,200만원 ○ 전시장 임차 및 전시부스 조성: 16억 5,200만원 ○ 전시기획・대행비: 8억원 ○ 박람회 운영・관리비: 2억 1,000만원

※출처: 「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II-1)」(농림축산식품부, 2026. 5.)

그런데,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외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 5,971만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됨.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위한 기념행사로, 2025년에는 정부와 원주시가 합동으로 체험프로그램 및 포상 등을 실시하였음.

【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요 】

구분	주요내용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주시
일정	○ 2025. 11. 11.(화)
장소	○ 강원 원주시 젊음의 광장 일원
행사구성	① 식전행사, ② 기념식, ③ 어울림한마당, ④ 포상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농업인의 날 30주년, 농정혁신과 미래를 말하다, 2025.11.11.)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농업인의 날 행사가 2019년까지는 개별 세부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유사사업의 통폐합 과정에서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유사사업이 통합되었더라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 목적, 시기, 개최장소가 구별되는 별개의 행사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 편성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 편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박람회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등 행사별 예산규모와 집행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하고,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비비 활용, 추경 편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430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및 국고보조금 반납 등에 따라 33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33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1,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특징은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납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200억 9,900만원 감소하였고,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융자원금 상환액 감소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90억 6,200만원 감소하였음.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655	108	89	-	19	△566
기타민간이자수입	533	33	33	-	-	△500
기타재산이자수입	122	75	56	-	19	△66
경상이전수입	20,911	812	812	-	-	△20,099
과징금	-	49	49	-	-	49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1	763	763	-	-	△20,14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1,481	2,419	2,419	-	-	△19,062
합 계	43,047	3,339	3,320	-	19	△39,727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본예산 및 세출예산현액은 164억 9,500만원임.

예산현액은 전액 농업신산업육성으로 지출하였음.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업신산업육성	16,495	-	-	-	-	16,495	16,495	-	-
합 계	16,495	-	-	-	-	16,495	16,495	-	-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3,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9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특징은 재산수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고, 국유재산 사용료 증가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5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4	49	49	-	-	15
건물대여료	34	49	49	-	-	15
합 계	34	49	49	-	-	15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액 및 지출액은 없음.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4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으로 298억 5,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270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28억 1,500만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특징은 경상이전수입 및 재산수입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임.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증가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8억 9,500만원 증가하였고, 재산이자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76억 6,300만원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03**	**7,398**	**6,198**	**-**	**1,200**	**5,895**
기타재산이자수입	303	7,398	6,198	-	1,200	5,895
경상이전수입	**3,178**	**22,455**	**20,841**	**-**	**1,614**	**17,663**
기타경상이전수입	3,178	22,455	20,841	-	1,614	17,663
합 계	**3,481**	**29,854**	**27,039**	**-**	**2,815**	**23,558**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3,89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1,678억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576억 2,300만원임.

예산현액 중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7,446억 6,5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5,101억 6,400만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099억 4,100만원 등 총 1조 4,67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정부 실집행 지연으로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에서 835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53억 6,100만원,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16억 1,500만원 등 총 69억 9,200만원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증감				
농가경영안정	29,499	-	-	-		29,499	29,484	-	15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15,302	-	-	-	1 △1	115,302	109,941	-	5,361
농업신산업육성	67,217	-	-	-	-	67,217	67,217	-	-
축산업진흥및동물복지향상	5,643	-	-	-	-	5,643	5,643	-	-
농업생산기반정비	510,164	-	-	-	-	510,164	510,164	-	-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661,995	167,803	-	-	-	829,798	744,665	83,518	1,615
합 계	**1,389,820**	**167,803**	**-**	**-**	**1 △1**	**1,557,623**	**1,467,113**	**83,518**	**6,992**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기계임대: 일률적 임대료 감면의 재검토 및 법정 임대료 기준 준수 필요

○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이후 장기간 연장되고 있으므로, 한시적 위기대응 수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효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분석하여 취약농가 중심으로 감면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 임대료 설정 및 감면 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기계임대 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294억 9,900만원 중 294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137]

137)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기계임대(1067-300)

【 2025회계연도 농기계임대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농기계임대	29,499	-	-	-	29,499	29,484	-	15	550
- 농기계임대사업소	5,850	-	-	-	5,850	5,850	-	-	-
- 주산지일관기계화	15,450	-	-	-	15,450	15,450	-	-	-
- 노후농기계대체	8,049	-	-	-	8,049	8,049	-	-	-
- 농기계임대사업운영평가	150	-	-	-	150	135	-	15	150
- 국제농기계박람회	-	-	-	-	-	-	-	-	4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138](50%)을 시행하였고, 이후 감면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은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농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고령화[139]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성격의 사업임.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사업 운영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138)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료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

139) 2025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2년 49.8% → '23년 52.6% → '24년 55.8% → '25년 51.0%(잠정)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의 공공성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도입한 임대료 감면을 이용자의 경영상황이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있음.

현재의 50%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따른 농가경영 안정대책으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면 연장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특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대료 감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감면정책의 성격이 한시적 위기대응에서 사실상 상시적인 경영비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면방침은 농가의 규모·소득·재해피해 등 지원 필요성에 따른 별도의 대상자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상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감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농가까지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감면 혜택이 농가별 지원 필요성과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임대료 감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 시행된 감면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감면 연장 여부 결정 시 감면 전후의 이용농가 수 및 임대일수, 농가 규모·연령별 수혜현황, 정상 임대료 대비 감면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분석하여 정책 편익과 재정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장기간의 일률적 감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시·도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평균 운영수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지역의 임대료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조사대상 시·도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음.

【 '24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균 운영수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단위: 천원)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수입	임대료	70,429	102,329	157,032	208,295	199,442	220,986
	농작업대행	5,720	-	4,608	-	-	-
	운송비등	7,620	-	-	-	-	-
수입합계		83,769	102,329	161,640	208,295	199,442	220,986
지출	인건비	181,500	330,500	148,674	83,210	22,234	150,250
	부품비	25,131	103,435	65,530	45,000	33,000	97,600
	유류비	2,388	4,400	2,769	-	5,000	-
	보험료	11,478	44,000	27,307	40,539	35,000	77,000
	사무관리비	16,760	18,477	37,121	10,300	27,120	20,450
	농기계수리비	13,587	-	20,036	71,400	12,000	-
	차량유지비	1,000	29,125	2,267	-	-	-
	기타	4,150	-	24,850	-	299,000	-
지출합계		255,994	529,937	328,554	250,449	433,354	345,300
손익		△172,225	△427,608	△166,914	△42,154	△233,912	△124,31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수입	임대료	151,325	228,765	301,677	188,947	387,059	282,680	267,273	269,596	110,501
	농작업대행	5,802	19,097	25,470	2,768	3,479	406	28,983	637	-
	운송비등	6,006	3,527	25,345	3,177	8,177	6,971	3,437	4,203	-
수입합계		163,133	251,389	352,492	194,892	398,715	290,057	299,693	274,436	110,501
지출	인건비	164,702	445,207	265,940	196,552	439,018	253,377	293,795	160,252	134,034
	부품비	64,483	178,965	83,617	61,959	136,444	48,755	117,953	77,726	65,700
	유류비	4,744	18,863	6,397	4,810	11,057	8,271	8,269	6,827	4,025
	보험료	36,814	48,306	65,690	42,592	71,035	31,795	56,902	53,376	36,050
	사무관리비	24,593	44,929	51,172	26,481	31,114	35,317	30,783	32,218	4,265
	농기계수리비	46,706	111,080	73,977	74,689	77,233	35,079	50,921	56,242	20,500
	차량유지비	2,219	28,121	21,073	5,581	10,162	3,002	8,127	2,144	3,750
	기타	81,951	71,407	178,059	102,366	46,638	25,352	112,429	175,419	5,860
지출합계		426,212	946,878	745,925	515,030	822,701	440,948	679,179	564,204	274,184
손익		△263,079	△695,489	△393,433	△320,138	△423,986	△150,891	△379,486	△289,768	△163,68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러한 운영수지 적자구조의 지속은 장비의 유지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통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률적 감면정책의 적정성과 별개로 감면의 기준이 되는 정상 임대료 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운영되어야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4항[140]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141]은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서 농업기계 구입가격별 기준임대료와 일정 범위의 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140)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원 등)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4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는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 및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농기계 임작업료 및 임대농기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15%) 내에서 1일 임대료를 달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에 따른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정상 임대료를 책정한 후 별도의 감면근거에 따라 정책적 감면을 적용하여야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음.

□ 그런데, 2024년·202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규칙상 임대료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거나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142]

농기계임대사업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소 운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법정 임대료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특히, 법정 기준과 다른 자체 요율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요율에 다시 50% 감면을 적용하면, 동일한 국가정책에 따른 감면임에도 지역별 부담액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감면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상 임대료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음.

---

142) **(정부합동감사 주요내용)**
○ 2024년 옥천군의 농업기계 임대료 법정기준 조례 미반영 지적, 감사 지적에 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료 기준을 반영하여 2024. 9. 30. 관련 조례 개정
○ 2025년 함안군의 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상 기준과 상이하게 운영된 점 지적, 기존 42단계 임대료 기준을 법령상 18단계 기준으로 정비하는 조례 개정 추진
- 대구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상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정비 추진

또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143]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임대료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가 종료된 이후 인건비·농자재비 등 일반적인 생산비 상승을 이유로 감면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계속적인 경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감면의 정책목표와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도입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적 효과가 있으나,

당초 한시적인 위기대응 수단이 2026년 연말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일률적 감면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감면 전후의 이용실적, 농가별 수혜분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분석하여 감면의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143)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에 따른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영세농·고령농·재해피해농가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가에 혜택을 집중하거나, 농가별 여건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등 감면체계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책적 감면은 법령에 따른 정상 임대료가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적용요율, 조정·감면 근거 및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법정 임대료 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제5차 육성계획의 목표 미달 및 지표 불연속 개선 필요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2020년 5.2%였던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최종 실적은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5.2%보다도 0.4%p 낮은 수준으로 최종목표의 48.0% 수준에 그쳤으므로, 제5차 육성계획상 목표 미달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6차 육성계획의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은 제5차 육성계획의 핵심 성과지표임에도 계획기간이 종료된 현재까지 2025년 최종실적이 확정되지 않아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최종평가가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실적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제6차 계획에서 농약 사용량 지표를 합성농약 사용량으로 변경한 만큼 종전 지표와의 비교·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제5차 계획의 성과를 명확히 평가하고 계획 간 성과의 연속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에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50억 8,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44](자율계정 44억 8,900만원, 제주계정 6억원)

144) 회계(기금)-세부사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2274-30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2274-302)

【 2025회계연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089	-	-	-	5,089	5,089	-	-	5,642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4,489	-	-	-	4,489	4,489	-	-	5,642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600	-	-	-	600	600	-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검토의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145]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육성계획에 합성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14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이하 생략)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축,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음.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법정계획인 만큼, 계획에 설정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계획 종료 시점에 평가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6차 계획[146]의 이행과정 및 정책수단 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농업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상호 연계되는 분야이므로,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 보다 농업생산 현장에서 나타난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전체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146)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2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여 2030년까지 유기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5%에서 5%로, 무농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2%에서 4%로 확대하고, 학교급식 공급 확대와 친환경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농업인·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도자료(2025. 12. 29.)]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주요 목표 및 실적 】

지표	2025년 목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47]
화학비료 사용량 (kg/ha)	233	266	286	255	242	229	산출 예정
농약 사용량 (kg/ha)	**9.5**	**10.5**	**11.8**	**12.4**	**12.7**	**12.3**	산출 예정
환경가치 인식(%)	50.0	27.5	30.2	32.8	35.9	40.8	47.3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 (%)	**10.0**	**5.2**	**4.9**	**4.6**	**4.6**	**4.5**	**4.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한편, 제5차 육성계획의 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은 2020년 27.5%에서 2025년 47.3%로 19.8%p 상승하여 목표 50%에 근접하였고,

화학비료 사용량도 2024년 229kg/ha로 2025년 목표 233kg/ha를 하회하는 등 일부 개선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확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은 제5차 계획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하여 최종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제5차 계획은 2020년 5.2%였던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을

147)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학비료·농약의 2025년 실적을 2026년 3분기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025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비율은 2024년 4.5%까지 하락하였다가 2025년 4.8%로 반등하여 최종목표의 48.0%에 그쳤으며,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보다도 0.4%p 낮아 생산기반이 오히려 퇴보한 실정임.

특히, 인증면적 비율이 계획 첫해인 2021년부터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계획 종료시점에 목표 미달을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계획기간 중 핵심지표의 악화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수단을 조정하는 성과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인증면적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신규 인증면적이 1만 947ha, 갱신면적도 6만 801ha로 전년보다 증가하고, 포기면적은 감소하는 등 일부 개선이 나타났으나, 같은 해에도 취소면적이 1,890ha 발생하는 등 기존 인증면적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동 현황 】

(단위: ha)

연도	신규	갱신	포기	취소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취소
2023	8,951	60,272	991	2,400	-
2024	8,566	59,637	837	1,893	1.1
2025	10,947	60,801	759	1,890	1.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이처럼 2025년 신규 인증 확대와 포기면적 감소는 긍정적인 변화이나, 인증면적 비율이 기준연도보다 낮은 상황에서 포기·취소면적도 계속 발생했으므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약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친환경 인증면적을 단순한 총량지표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진입, 갱신·유지, 자발적 포기 및 인증취소를 구분하여 각각의 변동 규모와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신규 인증 확대와 기존 인증농가의 유지에 필요한 정책수단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농가의 전환비용·소득, 판로 및 가격, 인증관리 부담, 농약 비산 등 요인별로 인증면적 증감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등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도 이러한 최종 결과지표와 연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은 중앙부처 기준으로 50억 8,9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피보조기관 단계의 실집행률은 70.3%에 그쳤음.

특히, 충남은 실집행률이 2.8%에 불과하였고, 전북은 실집행이 전무하여 3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025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세목	피보조 기관명	국고 보조 율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D/C)
				소계	1차 (3.21.)	2차 (자율6.17. 제주7.24.)	3차 (8.1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자율) (2274-301)	330-01	인천광역시	30	230	172.5	-	57.5	-	230	105	125	-	45.7
	330-01	경기도	30	300	225	-	75	38	338	333	-	5	98.5
	330-01	충청북도	30	600	450	-	150	-	600	600	-	-	100.0
	330-01	충청남도	30	284	213	-	71	-	284	8	276	-	2.8
	330-01	전북특별 자치도	30	300	-	225	75	-	300	-	-	300	-
	330-01	전라남도	30	2,475	1,856	-	619	-	2,475	1,708	732	35	69.0
	330-01	경상남도	30	300	225	-	75	26	326	326	-	-	100.0
	소 계			4,489	3,141.5	225	1,122.5	64	4,553	3,080	1,133	340	67.6
친환경농업기반구축(제주) (2274-302)	330-01	제주특별 자치도	30	600	300	300	-	-	600	545	-	55	90.9
	소 계			600	300	300	-	-	600	545	-	55	90.9
합 계				5,089	3,441.5	525	1,122.5	64	5,153	3,625	1,133	395	70.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와 같이 제5차 계획의 핵심 결과지표인 인증면적 비율이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한 상황에서, 생산기반 확충을 직접 지원하는 재정사업의 실집행 역시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점 또한 문제인 것으로 보임.

인증면적 감소가 동 사업의 집행 부진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인증면적 확대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수단마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것은 동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지역별 실집행 부진 원인을 사업대상 선정 지연, 지방비 확보, 인허가·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집행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제6차 육성계획에서는 동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별로 단순 집행률뿐만 아니라, 지원지역의 인증농가·인증면적 등 최종 정책성과와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상 목표가 부진한 경우 관련 재정사업의 지원대상·규모 및 방식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5차 육성계획의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은 계획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25년 최종실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현재 확인되는 2024년 실적은 화학비료 229kg/ha로 2025년 목표를 하회한 반면, 농약은 12.3kg/ha로 목표 9.5kg/ha를 상회하고 있어 당초 계획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실적을 2026년 3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최종연도 실적이 계획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산출되면 목표달성 평가와 차기 계획으로의 환류가 지연되므로, 향후 최종연도 실적의 산출시기를 계획 종료 시점과 연계하고 산출이 늦어지는 지표는 잠정실적 등을 활용하는 등 성과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6차 육성계획에서 제5차 계획의 '전체 농약 사용량'을 '합성농약 사용량'으로 변경하였는데, 친환경적 방제수단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상 감축대상인 합성농약을 중심으로 관리하려는 지표 변경의 취지는 인정할 수 있음.[148)]

다만, 제6차 계획에서 합성농약 지표로 전환하더라도 일정 기간 전체 농약과 합성농약을 병행 산출하거나 과거 실적을 동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표 변경으로 인해 제5차

148) 농식품부는 종전 농약 사용량 지표에는 미생물제·천연식물보호제 등 친환경적인 방제수단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자재의 사용 확대까지 감축실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6차 계획에서는 유기자재 등을 제외한 합성농약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계획의 종점과 제6차 계획의 출발점 사이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환경가치 인식 제고와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친환경 인증면적은 최종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준연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농약 사용량 또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면적의 변동요인과 관련 재정사업의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5차 계획의 목표 미달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제6차 계획의 연차별 목표와 재정사업의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조속히 확정하여 제5차 계획의 최종성과를 평가하고, 농약지표 변경에 따른 시계열 비교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반납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	39	39	-	-	39
기타재산이자수입	-	39	39	-	-	39
경상이전수입	-	121	121	-	-	121
기타경상이전수입	-	121	121	-	-	121
합 계	-	160	160	-	-	160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본예산 및 세출예산 현액은 156억 9,700만원임.

예산현액은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15,697	-	-	-	-	15,697	15,697	-	-
합 계	15,697	-	-	-	-	15,697	15,697	-	-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 양곡관리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미곡판매수입 4,741억 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조 2,715억 4,900만원 등 총 2조 7,925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미곡판매수입, 부산물판매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3조 1,411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미곡판매수입 6,946억 8,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조 2,715억 4,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0만원 등 총 3조 1,397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 부족 등으로 14억 4,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해 미곡판매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건물 및 토지매각대 등이 증가했다는 점임.

미곡판매수입은 4,741억 8,1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46.5% 증가한 6,946억 8,500만원으로, 이는 판매물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액은 66억 900만원이었으나, 실제 195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정부양곡매입비 정산금, 정부양곡관리비 반납액 등 과년도 사업비를 정산하여 수납하였기 때문임.

건물매각대와 토지매각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었으나, 각 1억 800만원과 4억 800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양특회계 소유의 국유재산을 지방정부에 매각하여 수납하였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손익계정	**2,792,542**	**3,141,159**	**3,139,718**	**-**	**1,441**	**347,176**
미곡판매수입	474,181	696,052	694,685	-	1,367	220,504
부산물판매수입	4,725	7,162	7,102	-	60	2,377
기타재산이자수입	1,059	17,353	17,353	-	-	16,294
기타경상이전수입	6,609	19,544	19,544	-	-	12,935
기타잡수입	2,759	3,669	3,655	-	14	896
건물매각대	-	108	108	-	-	108
토지매각대	-	408	408	-	-	408
전년도세계잉여금	31,660	125,314	125,314	-	-	93,654
일반회계전입금	2,271,549	2,271,549	2,271,549	-	-	-
자본계정	**-**	**1**	**1**	**-**	**-**	**1**
전년도이월금	-	1	1	-	-	1
합 계	**2,792,542**	**3,141,160**	**3,139,719**	**-**	**1,441**	**347,177**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조 7,925억 4,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조 7,935억 4,200만원임.

예산현액 중 정부양곡매입비 1조 7,681억 9,300만원, 수입양곡대 4,836억 9,600만원, 정부양곡관리비 5,195억 800만원, 쌀소비기반구축 191억 9,800만원 등 총 2조 7,905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납품기한 미도래로 26억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기타 증감				
손익계정	**2,792,542**	**1,000**	**-**	**77,320 △77,320**	**56,757 △56,757**	**2,793,542**	**2,790,594**	**2,645**	**303**
정부양곡 매입비	1,732,193	-	-	-	36,000	1,768,193	1,768,193	-	-
수입양곡대	592,206	-	-	△72,510	△36,000	483,696	483,696	-	-
정부양곡 관리비	456,100	1,000	-	70,165 △4,810	20,757 △20,757	522,455	519,508	2,645	303
쌀소비기반구축	12,043	-	-	7,155	-	19,198	19,198	-	-
자본계정	**-**	**-**	**-**	**-**	**-**	**-**	**-**	**-**	**-**
합 계	**2,792,542**	**1,000**	**-**	**77,320 △77,320**	**56,757 △56,757**	**2,793,542**	**2,790,594**	**2,645**	**303**

* 예산액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수입양곡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양곡대 사업에 관하여 현재의 성과지표 대신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입양곡대 사업은 WTO 협정에 따른 쌀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수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이 5,922억 600만원이었으나 이·전용등으로 감액된 1,085억 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836억 9,600만원이었으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149)]

【 2025회계연도 수입양곡대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입양곡대	592,206	-	△108,510	483,696	483,696	-	-	548,214

149) 회계(기금)-세부사업: 양곡관리특별회계-수입양곡대(2131-362)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를 통해 저율관세 5%가 적용되는 쌀인 WTO TRQ 40만 8,700톤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쌀 WTO TRQ는 다자조약인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이하 “쌀 관세화 다자조약”)에 따라 국가별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 조약에 따른 쌀 WTO TRQ 국가별 할당 물량 현황 】

(단위: 톤, %)

구분	총계	국가별 배분 물량					최혜국 대우 물량
		호주	중국	태국	미국	베트남	
할당 물량	408,700 (100.0)	15,595 (3.8)	157,195 (38.5)	28,494 (7.0)	132,304 (32.4)	55,112 (13.5)	20,000 (4.9)

※ 주: 최혜국대우(MFN) 물량은 5개 조약 당사국을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음
※ 자료: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에 총 39만 7,450톤의 쌀을 WTO TRQ로 수입하여, 계획 물량인 40만 8,700톤보다 1만 1,250톤을 적게 수입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할당된 물량이 해당 국가 사정으로 3회 유찰되어 수입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유찰건이 aT와 중국측 국영무역업체(COFCO[150]) 간에 의견 교환 및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이후 중국측에서 추가로 제기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임.

【 2025년 쌀 WTO TRQ 수입 현황 】

(단위: 톤, %)

구분	총계	국가별 배분 물량					최혜국 대우 물량
		호주	중국	태국	미국	베트남	
할당 물량 (A)	408,700	15,595	157,195	28,494	132,304	55,112	20,000
실제 수입물량 (B)	397,450	15,595	145,945	28,494	132,304	55,112	20,000 (베트남)
A-B (달성률)	11,250 (97.2)	- (100.0)	11,250 (92.8)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2024년부터 “TRQ 쌀 의무도입량”으로 설정한 결과,[151] 동 사업은 미도입 물량에 대한 우리나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9%p 감소한 97.1%의 성과 달성도를 기록하였음.

150) China National Cereals, Oils Foodstuffs Import Export Corporation

151) 2023년까지 성과지표로 활용되었던 국제곡물 정보이용자 만족도는 내역사업인 “양곡류 해외시장조사비”가 타 세부사업(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으로 이관되어 현재 성과지표로 사용되지 않음

【 수입양곡대 사업 최근 5년간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국제곡물 정보이용자 만족도(점) (~'23)	목표	91.8	92.0			
	실적	91.8	92.0			
	달성도(%)	100.0	100.0			
TRQ 쌀 의무도입량(천톤) ('24~)	목표	신규	신규	409	409	409
	실적	-	-	409	397	-
	달성도(%)	-	-	100.0	97.1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동 성과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152]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양곡대 사업에 관하여 현재의 성과지표 대신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걸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152) **「국가재정법」**
제85조의2(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당초 융자원금회수 1조 4,756억 3,100만원, 관유물매각대 7,410억 200만원 등 총 2조 7,254억 6,2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유자금회수,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감소 등으로 2조 3,672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570억 7,900만원, 관유물매각대 수입으로 6,120억 9,400만원,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수입으로 1조 4,158억 4,300만원 등 총 2조 3,637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수입 중 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한 미수납액 35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계획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3,080**	**18,295**	**18,295**	-	-	**5,215**
토지대여료	45	19	19	-	-	△26
기타민간이자수입	2,716	7,603	7,603	-	-	4,887
기타재산이자수입	10,319	10,672	10,672	-	-	353
경상이전수입	**131,050**	**160,604**	**157,079**	-	**3,525**	**26,029**
몰수금및추징금	32	-	-	-	-	△32
변상금	-	2,140	2,140	-	-	2,140
위약금	2,575	5,294	5,294	-	-	2,719
가산금	-	165	-	-	165	-
법정부담금	57,519	72,964	72,964	-	-	15,445
기타경상이전수입	70,924	80,041	76,681	-	3,360	5,75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50**	**50**	**-**	**-**	**50**
기타잡수입	-	50	50	-	-	50
관유물매각대	**741,002**	**612,094**	**612,094**	**-**	**-**	**△128,908**
재고자산매각대	741,002	612,094	612,094	-	-	△128,90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475,631**	**1,415,843**	**1,415,843**	**-**	**-**	**△59,78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475,631	1,415,843	1,415,843	-	-	△59,788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37,033**	**32,725**	**32,725**	**-**	**-**	**△204,308**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37,033	32,725	32,725	-	-	△204,308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7,666**	**127,666**	**127,666**	**-**	**-**	**-**
기금예수금	127,666	127,666	127,666	-	-	-
합 계	**2,725,462**	**2,367,277**	**2,363,752**	**-**	**3,525**	**△361,710**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5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경상이전수입의 수납액 실적이 예산액 대비 증가하고, 관유물매각대,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310억 5,0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119.9%인 1,570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매납입금 평균낙찰가 상승 및 보조금 반납액 증가에 따른 것임.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7,410억 2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82.6%인 6,120억 9,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연초 참깨 재고 부족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와 판매단가 하락 등에 따른 것임.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1조 4,756억 3,1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산액의 95.9%인 1조 4,158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시중금리가 기금 대출금리보다 높아 조기상환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5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계획은 2조 7,254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3억 6,700만원을 포함하여 지출계획현액은 2조 7,318억 2,900만원임.

지출계획현액 중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1조 5,258억 9,100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사업 6,294억 7,500만원, 종자관리 727억 3,800만원 등 총 2조 3,637억 5,225만원을 지출하였음.

그리고,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8억 5,400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133억 9,400만원 등 총 142억 4,8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시설공사 지연임.

또한,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사업 115억 9,200만원, 식품외식산업육성 84억 7,800만원, 예수이자상환 10억 2,800만원 등 총 211억 8,900만원을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1,538,085	252	-	-	△4,000	1,538,337	1,525,891	854	11,592
종자관리	72,744	-	-	847 △847	4,000	72,744	72,738	-	6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59,327	396	-	-	-	59,722	59,638	-	84
식품외식산업육성	645,628	5,719	-	-	-	651,347	629,475	13,394	8,478
예수이자 상환	17,419	-	-	-	-	17,419	16,391	-	1,028
여유자금 운용	392,259	-	-	-	-	392,259	59,620	-	-
합 계	**2,725,462**	**6,367**	**-**	**847 △847**	**4,000 △4,000**	**2,731,829**	**2,363,752**	**14,248**	**21,189**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자조금지원: 공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조금단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실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조금지원 사업은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131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53]

【 2025회계연도 자조금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자조금지원	13,110	13,110	-	13,110	13,110	-	-	16,045

153)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자조금지원(3031-325)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제5조[154]에 따라 농산물에 설치된 자조금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의무자조금단체와 ② 설립 2년 이내의 임의자조금단체를 보조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보조대상 중 의무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가 법적으로 강제됨에 따라 자조금 조성·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특히 요구될 것이므로, 매년 자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공시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155]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단체는 ①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의 12월 31일까지, ②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각각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156]

---

154)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6)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그런데, 의무자조금단체의 2025년 공시 의무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기한을 상당 기간 경과하여 뒤늦게 공시한 사례가 있어, 법률상의 공시 제도를 관리하여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의무자조금단체의 공시 의무 이행 현황(2025년 기준) 】

* 자료요청일: 2026년 5월 26일

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자금운용계획 공시일 (기한: '24.12.31.)	결산보고서 공시일 (기한: '25.3.31.)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일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24. 12. 30.	'25. 3. 19.	'15. 5. 14.
친환경	(사)한국친환경 농업협회	'24. 12. 23.	'25. 3. 6.	'16. 7. 1.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 중앙연합회	'24. 12. 30.	'25. 2. 28.	'17. 1. 1.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24. 12. 30.	'25. 2. 27.	'17. 2. 15.
배	(사)한국배연합회	'24. 12. 30.	'25. 3. 26.	'17. 7. 6.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 생산자자조회	'24. 9. 3.	'25. 3. 27.	'17. 7. 14.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24. 12. 30.	'25. 3. 4.	'17. 7. 21.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24. 12. 31.	'25. 2. 28.	'17. 9. 29.
콩나물	(사)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24. 12. 31.	'24. 12. 31.	'17. 11. 30.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자금운용계획 공시일 (기한: '24.12.31.)	결산보고서 공시일 (기한: '25.3.31.)	의무자조금 단체 전환일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 협의회	'24. 12. 23.	'25. 1. 6.	'18. 11. 8.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 협의회	'24. 12. 26.	'25. 3. 13.	'19. 9. 18.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24. 12. 19.	'25. 3. 5.	'19. 12. 30.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24. 12. 30.	'25. 2. 28.	'20. 7. 24.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25. 1. 15.	'25. 3. 3.	'20. 7. 24.
감	(사)한국감협회	'24. 9. 27.	'25. 2. 28.	'21. 12. 22.
복숭아	(사)한국복숭아 생산자협의회	'24. 12. 31.	'25. 3. 24.	'21. 12. 2.
차	(사)한국차자조회	'26. 5. 27.	'26. 5. 27.	'22. 8. 22.
자생란	(사)한국난 재배자협회	'25. 12. 16.	'25. 3. 12.	'22. 8. 22.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 연합회	('25년) 공시 의무 없음		'25. 6. 23.
밤	(사)한국밤 재배자협회	('25년) 공시 의무 없음		'25. 7. 4.

※ 주1: 블루베리와 밤은 2025년에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되어 2025년 공시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
※ 주2: 동일 사항을 여러 차례 공시한 경우 최초 공시일에 해당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재구성)

□ 또한, 동 사업에서 자조금단체별 차등 보조 근거로서 활용되는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157]의 2025년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157) 의무자조금단체는 평가가 100점 만점(서면평가 90점, 대면평가 10점)으로 진행

공시 의무 미이행이 감점 요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1점 감점에 불과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무자조금단체의 공시 의무 이행을 적절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임.

【 2025년 의무자조금단체 서면평가 중 가·감점 사항 】

구분	연번	심사기준(사유)	점수
가점 (최대12)	1	- 타 자조금단체에 귀감이 되는 모범(우수)사례를 창출하여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점
	2	- 경작 및 출하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도입 및 지속 운영	3점 (항목별 1점)
	3	- 재배면적 조정 등 선제적 수급조절 조치	2점
	4	- 전화상담 업무 직접 운영 또는 통합콜센터 참여('25. 1.~)	2점
	5	- 농산업자 대상 자조금 및 재배기술 교육 직접 운영('25. 1.~)	2점
감점 (최대△12)	1	- 외부 회계감사(검증) 대상 단체가 회계감사(검증) 미실시	△2점
	2	-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 기한 내 단체별 홈페이지 미공시	△1점
	3	- 평가조사서 지연제출(△1점/지연일당) 및 허위자료 제출 확인(△2점/건당)	최대 △3점
	4	- 농식품부 또는 외부기관의 자조금 보조사업 및 운영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2점/건당)	최대 △6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자조금단체 운영실적 평가계획", 2025. (재가공)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단체가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미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조금단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실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9. 농지관리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농지관리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1,580억 8,800만원, 경상이전수입 7,504억 7,600만원, 관유물매각대 234억 9,9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03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254억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7,110억 9,200만원으로 총 2조 3,289억 1,500만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법정부담금 부과 이후 납부 기한 미도래액 발생에 따른 경상이전수입 증가, 농지연금 미수이자 발생에 따른 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7,883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조 1,172억 4,500만원임.

징수결정액 중 재산수입 1,012억 1,600만원, 경상이전수입 6,618억 9,700만원, 관유물매각대 357억 5,3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 2,818억 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2,570억 4,3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7,034억 2,300만원 등 총 2조 411억 9,100만원이 수납되었고, 농지보전부담금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납기미도래에 따른 미납금 등으로 인해 1조 757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체납자의 재산 부족 등 사유로 3억 3,600만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계획 (A)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58,088**	**240,980**	**101,216**	**-**	**139,764**	**△56,872**
관유물대여료	12,363	11,085	11,085	-	-	△1,278
기타이자수입	145,725	229,895	90,131	-	139,764	△55,594
경상이전수입	**750,476**	**1,529,035**	**661,897**	**336**	**866,802**	**△88,579**
가산금	2,129	2,192	2,192	-	-	63
법정부담금	748,347	1,521,956	654,821	336	866,799	△93,526
기타경상이전수입	-	4,887	4,884	-	3	4,884
관유물매각대	**23,499**	**104,905**	**35,753**	**-**	**69,152**	**12,254**
재고자산매각대	23,499	104,905	35,753	-	69,152	12,254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0,360**	**281,859**	**281,859**	**-**	**-**	**△178,50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0,360	281,859	281,859	-	-	△178,501
전년도이월금	**225,400**	**257,043**	**257,043**	**-**	**-**	**31,643**
정부내부수입및기타	**711,092**	**703,423**	**703,423**	**-**	**-**	**△7,669**
기금예탁원금수입	700,000	700,000	700,000	-	-	-
기금예탁이자수입	11,092	3,423	3,423	-	-	△7,669
합 계	**2,328,915**	**3,117,246**	**2,041,191**	**336**	**1,075,718**	**△287,724**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2025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수입 결산의 특징은 예산액에 비해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및기타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재산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1,580억 8,800만원이었으나, 실제수입은 예산액보다 36.0% 감소한 1,012억 1,600만원으로, 정책금리 선호에 따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등 융자사업의 융자금 조기회수가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원금과 함께 회수되는 이자 등이 감소한 데 기인함.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7,504억 7,6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11.8% 감소한 6,618억 9,700만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농지전용 수요 감소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민간융자원금 회수로서 4,603억 6,0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예산액보다 38.8% 감소한 2,818억 5,900만원으로, 이는 정책금리 선호로 경영회생사업 등의 사업 유지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융자금 회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또한,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7,110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입은 1.1% 감소한 7,034억 2,3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및 예탁기간 축소 등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기인함.

2) 지출결산

□ 2025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지출계획은 2조 3,289억 1,5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총지출계획은 변경이 없어 지출계획현액은 지출계획과 동일하나 사업별 지출계획이 변경됨.

지출계획현액 중 농가경영안정 1,824억원, 농업인력육성및창업지원 1조 1,515억 2,5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560억 1,600만원, 농촌복지및지역활성화 2,880억 8,700만원, 국제협력협상 88억 3,500만원,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692억 7,500만원, 기금간거래(예탁금) 900억원, 여유자금운용 950억 5,300만원으로 총 2조 411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1,600만원, 기금운영비 100만원, 공자기금 예탁 1,100억원 등 총 1,110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농가경영안정	182,400	-	-	-	-	182,400	182,400	-	-
농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1,151,541	-	-	-	-	1,151,541	1,151,525	-	16
농업생산 기반정비	156,016	-	-	-	-	156,016	156,016	-	-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260,417	-	-	-	27,670	288,087	288,087	-	-
국제협력협상	8,835	-	-	-	-	8,835	8,835	-	-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67,319	-	-	-	1,957	69,276	69,275	-	1
회계기금 간거래 (전출금)	-	-	-	-	-	-	-	-	-
기금간거래 (예탁금)	200,000	-	-	-	-	200,000	90,000	-	110,000
여유자금 운 용	302,387	-	-	-	△2,627	272,760	95,053	-	-
합 계	**2,328,915**	**-**	**-**	**-**	**29,627 △2,627**	**2,328,915**	**2,041,191**	**-**	**110,016**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농지관리기금: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농지관리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수입 기반 확대 등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농지관리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라 영농규모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설치·운용한 기금임.

2025년 수입은 계획액 2조 3,289억원보다 2,877억원 감소한 2조 412억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여유자금운용 제외)은 계획액 2조 561억원 대비 1,100억원 감소한 1조 9,461억원을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결산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A)	결산(B)	증감(B-A)	계획
수입	○자체수입	1,392,423	1,080,725	△311,698	1,426,472
	-토지대여료	11,125	9,215	△1,910	11,125
	-기타관유물대여료	1,238	1,870	632	1,418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39	149	110	39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A)	결산(B)	증감(B-A)	계획
	-기타민간이자수입	50,233	43,742	△6,491	54,914
	-기타재산이자수입	95,453	46,240	△49,213	95,453
	-가산금	2,129	2,192	63	2,189
	-법정부담금	748,347	654,821	△93,526	763,527
	-기타경상이전수입	-	4,884	4,884	-
	-재고자산매각대	23,499	35,753	12,254	37,44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60,360	281,859	△178,501	460,360
	○정부내부수입	711,092	703,423	△7,669	1,051,350
	○여유자금회수	225,400	257,043	31,643	302,387
합 계		2,328,915	2,041,191	△287,724	2,780,209
지출	○사업비	1,789,761	1,789,745	△16	2,595,847
	○기금운영비	66,394	66,393	△1	65,334
	○정부내부지출	200,000	90,000	△110,000	6,900
	○여유자금운용	272,760	95,053	△177,708	112,128

나) 검토의견

□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158]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15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 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상환금(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포함한다)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이 중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과[159] 경영회생지원사업,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등 융자사업 운용에 따른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액’은 기금의 주요 자체수입원이 되어 왔음.

□ 그런데 2025회계연도 기금수입 결산을 보면, 법정부담금은 계획액 7,483억원 대비 87.5%에 해당하는 6,548억원을 수납하였고,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액은 계획액 4,604억원 대비 61.2%에 불과한 2,81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체수입이 계획액 1조 3,924억원 대비 77.6%에 불과한 1조 807억원에 그치게 되었음.

반면, 2025년 농지관리기금 지출을 살펴보면, 사업비와 기금운영비는 계획액과 동일한 수준인 1조 7,897억원을 지출함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은 계획액 2,000억원

159)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대비 45%에 불과한 900억원으로, 여유자금 운용은 계획액 2,728억원 대비 34.9%에 불과한 951억원 규모로 축소되었음.

□ 즉, 농지관리기금은 2021년까지는 자체수입이 사업비를 상회하는 구조였으나, 2022년 이후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사업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면서 2023년 이후에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예탁금 등 정부내부지출과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임.

【 2020~2024년 농지관리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자체수입	1,562,193	1,605,167	1,603,857	2,046,324	1,611,796	1,690,304	1,963,623	1,329,179	1,697,569	1,186,818
정부내부수입	406,816	397,542	348,680	334,390	1,258,881	1,245,932	1,441,589	1,434,286	1,890,920	1,449,653
여유자금회수	1,298,156	1,181,814	898,156	415,460	409,269	530,705	316,772	389,824	417,841	231,692
합계	3,267,165	3,184,523	2,850,693	2,796,174	3,279,946	3,466,941	3,721,984	3,153,289	4,006,330	2,868,163
일반지출	1,568,701	1,551,056	1,715,472	1,715,469	1,789,790	1,789,789	1,834,358	1,829,800	2,039,364	2,039,324
정부내부지출	1,218,007	1,218,007	550,000	550,000	1,287,328	1,287,328	1,491,797	1,091,797	1,171,797	571,797
여유자금운용	480,457	415,460	585,221	530,705	202,828	389,824	395,829	231,692	795,169	257,0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런데 이와 같은 재정구조는 향후 수입 기반의 약화와 사업비 지출 증가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우선, 수입 측면을 보면,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농지보전부담금은 최근 농지전용 수요 감소 및 부담금 감면 확대 등의 요인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액 또한 정책자금에 대한 선호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농지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1만 6천ha를 초과하였던 전용면적이 2024년에는 1만 4천ha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최근 10년간 농지 전용면적 】

(단위: ha)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용면적	14,145	16,296	16,303	16,467	17,429
연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용면적	19,435	16,666	16,763	14,111	-

주: 2025년 전용면적 통계는 취합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또한, 2024년 6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160] 단위 전용면적당 농지보전부담

160) 「농지법 시행령」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금 부과액도 감소하게 되었음.

한편,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액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농지거래 위축 등으로 경영회생지원사업 및 농지연금 사업의 중도해지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면서 정책자금의 조기상환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농지거래 위축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액의 감소 추세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영농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지관리기금의 농지 매입 및 농지연금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농지관리기금은 농지의 원활한 이전 및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은퇴농 및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0분의 30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2025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의 유형별 신청 및 지원면적 현황을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신청면적 대비 지원비율이 54.2%에 불과한 실정임.

【 2025년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유형별 신청 및 지원면적 현황 】

유 형	신청면적(A)	지원면적(B)	지원비율(B/A)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4,562ha	2,195ha	48.1%
농지매매	413ha	355ha	86.0%
임차임대	554ha	450ha	81.2%
선임대후매도	84ha	43ha	51.2%
전 체	**5,613ha**	**3,043ha**	**5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또한, 농지관리기금은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 역시 2024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신규가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1～2026년 농지연금 신청·선정·대기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신청건수	2,080	2,530	2,882	5,111	3,907	2,713
선정건수	2,080	2,530	2,882	3,115	2,015	943
대기건수	-	-	-	1,996	1,892	1,7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인용

아울러, 최근 「농지법」 개정('26.6.16.공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사항이었던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장을 통한 처분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기금을 통한 매입 필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기금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관리기금은 자체수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면서 재정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실제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자체수입과 여유자금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기금예수금 4,600억원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입금 5,000억원 등 추가적인 정부내부수입을 편성하여 부족재원을 보전한 바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부족재원을 정부내부수입을 통해 보완하는 현행 구조는 기금 운용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지관리기금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기반 확대 등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추가 사업지연 방지 및 민간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은 사업 추진일정의 지연으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농 지원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기반조성 이후에도 민간 농업법인의 투자 및 운영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은 고령은퇴·이농·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임차하고, 이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의 이용효율화, 영농규모화 및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161]

2025년 계획액은 1조 1,134억 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13,440	-	-	1,113,440	1,113,440	-	-	1,807,690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962,500	-	-	962,500	962,500	-	-	1,617,000
-농지매매	95,300	-	-	95,300	95,300	-	-	95,300

161)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임차임대	17,820	-	-	17,820	17,820	-	-	17,820
-교환분합	150	-	-	150	150	-	-	150
-선임대후매도	19,250	-	-	19,250	19,250	-	-	77,000
-대규모스마트팜 창업단지	18,000	-	-	18,000	18,000	-	-	18,000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420	-	-	420	420	-	-	420

나) 검토의견

(1)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는 집단화된 유휴부지, 국·공유지 등을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80억원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2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지 매수비와 기반조성비를 각각 융자와 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임.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총사업비 산출 내역 】

연도	내 용	
2024년	용지매수	40ha(20ha, 2개 지구) × 700백만원
	기반조성	40ha(20ha, 2개 지구) × 500백만원 × 10%(1년차 사업비(설계))
2025년	기반조성	40ha(20ha, 2개 지구) × 500백만원 × 90%(2년차 사업비(공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런데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이월된 용지매수비(융자)는 총 280억원 중 40억 1,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8.7%에 불과하고, 2개년도의 기반조성비(보조)는 총 200억원 중 8억 6,0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24~2025년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

지자체	연도	구분	부처		한국농어촌공사					
			계획액	교부액	전년이월	계획현액(A)	실집행액(B)	차년이월	불용액	실집행률(B/A)
전남고흥	2024	보조	1,000	1,000	-	1,000	30	970	-	3.0
		융자	14,000	14,000	-	14,000	-	14,000	-	-
	2025	보조	9,000	9,000	970	9,970	425	9,000	545	4.2
		융자	-	-	14,000	14,000	4,012	9,988	-	28.7
	2026	보조	-	-	9,000	9,000	2,540	-	-	28.2
		융자	-	-	9,988	9,988	290	-	9,698	2.9
전북남원	2024	보조	1,000	1,000	-	1,000	29	971	-	2.9
		융자	14,000	14,000	-	14,000	-	14,000	-	-
	2025	보조	9,000	9,000	971	9,971	376	9,000	595	3.8
		융자	-	-	14,000	14,000	-	14,000	-	-
	2026	보조	-	-	9,000	9,000	501	-	-	5.6
		융자	-	-	14,000	14,000	7,920	-	6,080	56.6

주: 2026년은 5월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와 같이 저조한 실집행률은 사업추진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024년 1월 사업지구 선정을 마치고,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기반공사에 착수하며, 2025년에는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같은 해 말 해당 부지를 농업법인에 매각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2024년 7월에서야 사업대상지가 전남 고흥과 전북 남원으로 선정되었고 부지매입 절차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게 되었음.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사업 당초 계획 및 변경 일정 】

구 분	당초 계획	변경 일정
사업대상지 선정	'24.1.	'24.7.17.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4.4.	'25.4.
부지매입	'24.5.	~'26.6.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24.7.~9.	'25.5.~12.
기반공사 착공	'25.1.	'26.2.
기반공사 완료 및 매각	'25.12.	'26.1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업 추진일정의 변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2차년도 기반공사비 180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음.

그 결과 2025년에도 상당 금액의 용지매수비와 기반공사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였고, 총사업비의 87.5%에 달하는 419억 8,800만원의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이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 한정된 재원이 실제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지관리기금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원의 효율적 운용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농지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 대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계획	결산
2023년	395,829	231,692
2024년	795,169	257,042
2025년	272,760	95,053

※자료: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재구성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방지 필요

□ 한편,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부지 공급 및 스마트팜 시설 조성 등 사업목적 달성이 더욱 늦어질 우려가 있음.

□ 그런데 2026년 6월 기준 전남 고흥지구는 사업대상 부지 내 잔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절차를 추진 중이고, 전북 남원지구 또한 토지 소유주 매수협의 및 보상 등 매입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매입이 완료된 부지부터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2026년 말까지 기반공사 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계획한 일정에 따라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당초 사업목적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민간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동 내역사업의 정책목적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을 완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음.

참고로, 동 사업은 본래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농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지를 매입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이를 청년농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내용의 사업이었음.

그런데 2024년 예산 편성 이후 집행 과정에서 농업법인이 사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반조성을 완료한 부지를 농업법인에 매각하면, 해당 농업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한 후 청년농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이 변경된 것임.

□ 이에 따라 현행 사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 및 청년농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민간 농업법인의 후속 투자와 운영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법인 간 MOU 체결 현황 】

지자체	체결 일시	민간사업자
전남 고흥	2025.4.10.	홍양영농조합법인
전북 남원	2025.12.15.	㈜케이티팜훼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우선, 스마트팜 적기 조성을 위해서는 농업법인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공급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농 지원은 농업법인이 전체 조성부지 20ha 중 3ha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될 것이나,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이 직접 스마트팜을 조성·운영하면서 청년농을 고용하거나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즉, 동 사업은 민간 농업법인이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운영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부지매입, 스마트팜 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3)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률 제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관계기관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은 체계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지행정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계획액은 381억 100만원으로 계획현액 381억 100만원 중 380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162)]

【 2025회계연도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지관리기능 강화구축	38,101	-	-	38,101	38,085	-	16	39,308
-농지상시관리 조사	3,923	-	-	3,923	3,923	-	-	5,018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276	-	-	276	276	-	-	281
-지자체 교육 및 법률컨설팅	444	-	-	444	444	-	-	546
-농지은행전자 계약시스템	321	-	-	321	321	-	-	324

162)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지관리기금-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1160-354)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지상시조사 분석시스템	607	-	-	607	607	-	-	607
○농지은행제세 공과금	32,500	-	-	32,500	32,500	-	-	32,500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0	-	-	30	14	-	16	30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농지정책 등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163]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지의 이용·보전 정책 수립 및 중요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자문을 통해 농지 정책의 타당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2025년 사업비는 당초 민간위원 14명에 대한 위원 수당 1,680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인쇄비, 여비, 경비 등 총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 저조 등으로

163)「농지법」
제37조의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해 1,449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1,551만원(51.7%)은 불용처리되었음.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 산출 및 집행내역 비교 】

산출내역	집행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21백만원 가. 일반수용비 (20,840천원) ・위원수당 : 200천원 × 14명(외부위원) × 6회 = 16,800천원 ・인쇄비 : {200천원(30p×20부)×6회}+{2840천원(284p×100부)}=4,04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900천원 가. 일반수용비 (11,900천원) ・위원수당 : 180천원 × 11명(외부위원) × 6회 = 11,9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백만원 가. 국내여비 (1,960천원) ・ 당일여비 70천원(식비, 교통비)×14명×2회 = 1,96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1천원 가. 국내여비 (271천원) ・ 당일여비 33.9천원(식비, 교통비)×4명×2회 = 27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백만원 가. 사업추진비 : 7,200천원 ・위원회 경비 30천원×20명×12회=7,2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318천원 가. 사업추진비 : 2,318천원 ・위원회 경비 29.7천원×13명×6회=2,318천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르면 농지관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촌・토지이용・공간정보・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정부위원(6명)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됨.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

위원명	소 속	비고	임기
서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예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김 O O	민간위원	위촉직	'24.5.30~'26.5.29
이 O O	민간위원	위촉직	'24.5.30~'26.5.29
채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성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배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김 O O	국토OOO	위촉직	'24.5.30~'26.5.29
채 O O	(사)OOO	위촉직	'24.5.30~'26.5.29
윤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박 O O	한국OOO	위촉직	'24.5.30~'26.5.29
김 O O	대한OOO	위촉직	'24.5.30~'26.5.29
박 O O	세종OOO	위촉직	'24.5.30~'26.5.29
최 O O	법무OOO	위촉직	'24.5.30~'26.5.29
윤 O O	농림축산식품부	당연직	
김 O O	산림청	당연직	
위 O O	농촌진흥청	당연직	
남 O O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연직	
장 O O	국토교통부	당연직	
송 O O	환경부	당연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그런데 최근 3년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을 살펴보면,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전용 심의 등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참석률을 살펴보면, 민간 위원의 참석률은 75%(220/294회) 수준이나, 정부위원의 참석률은 약 29%(36/126회)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개최된 21회의 위원회 중 8회의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관계 부처 정부위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위와 같은 실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회의, 출장 등 다른 일정과 중복 등으로 정부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설명임.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음.[16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회의 일정 중복 등을 이유로 저조한 참석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 기관의 관심과 책임성이 부족한 결과로 보임.

---

164)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8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간사 및 서기
3. 대규모 농지전용사업 시행자 등 해당 안건의 담당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참석 현황 】

(단위: 회, %)

연도	방식	일자	안건	참석계획 (A)		참석횟수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2023	대면	2.22.	'22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1	1	78	16
	대면	3.29.	신규 국가산단 입지적정성 검토 사전협의 결과 보고,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3	2	92	33
	대면	4.26.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0	3	71	50
	대면	5.31.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9	3	64	50
	대면	6.28.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1	2	78	33
	대면	7.26.	농지전용 심의 2건	14	6	10	2	71	33
	대면	8.30.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0	1	71	16
	대면	10.25.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0	1	71	16
	대면	12.20.	'23년도 농지법 개정사항 보고, 농지전용 심의 2건	14	6	10	2	71	33
2024	대면	1.31.	'23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1	2	78	33
	대면	4.24.	농지전용 심의 2건	14	6	9	4	64	66
	대면	5.29.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1	1	78	16
	대면	6.26.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1	1	78	16
	대면	9.25.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9	2	64	33
	대면	12.5.	'24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농지법령 개정사항	14	6	9	2	64	33
2025	대면	3.26.	농지제도 개선(안) 보고	14	6	11	2	78	33
	대면	5.28.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9	2	64	33
	대면	9.24.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3	-	92	-
	대면	10.29.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0	1	71	16
	서면	11.27.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3	1	92	16
	대면	12.30.	농지전용 심의 1건	14	6	10	1	71	16
합 계				294	126	220	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이러한 정부위원의 참석률 저조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법정 자문기구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종합적 검토 기능을 약화시키고, 농지정책 및 중요 농지전용에 대한 자문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기관의 위원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 :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 사업 참여자 전수조사를 통한 정책성과 재평가 필요

○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 사업은 2021~2025년 총 45명을 지원하여 22명(48.9%)이 인턴 종료 후 참여기업에 고용승계되는 등 단기적인 고용연계 성과는 나타났으나, 2026년 6월 말 현재 같은 기업에 재직 중인 인원은 6명에 불과하고 퇴사자의 해외농업·농식품 분야 재취업 여부 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유지율과 관련 분야 정착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진출기업의 인력확보 및 해외농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의 정책성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사업개발·정착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계획현액 28억 3,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65]

【 2025회계연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	2,835	-	-	-	2,835	2,835	-	-	2,71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16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5032-300)

나) 검토의견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인재 발굴과 채용지원을 통한 해외농업개발 분야 인력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턴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항공료, 비자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사업 지원 현황 】

연도	기업명	파견국가	인원	근무기간	지원금액(천원)
2021년	IN	러시아	1명	‘21.06.09~‘21.12.09	10,938
	SCP	캄보디아	1명	‘21.07.01~‘21.12.31	10,938
	HI	베트남	2명	‘21.07.19~‘22.02.15	22,065
	YM	캄보디아	2명	‘21.08.01~‘21.09.30	6,360
	JB	캄보디아	2명	‘21.08.03~‘22.02.02	22,376
	IW	키르기스스탄	2명	‘21.09.07~‘22.03.06	32,566
	AMB	캄보디아	1명	‘21.10.01~‘22.03.31	11,214
	GG	라오스	3명	‘21.10.25~‘22.04.25	36,350
	소계		14명		
2022년	SOL	캄보디아	2명	‘22.05.02~‘22.11.02	26,081
	WGW	캄보디아	1명	‘22.05.20~‘22.11.20	12,716
	IW	키르기스스탄	1명	‘22.06.06~‘22.12.06	13,781
	BT	캄보디아	1명	‘22.06.20~‘22.12.20	12,569
	IN	러시아	1명	‘22.06.20~‘22.12.20	11,490
	GG	라오스	2명	‘22.07.08~‘23.01.08	24,922
	SCP	캄보디아	1명	‘22.08.08~‘23.02.07	11,655
	KH	캄보디아	1명	‘22.09.01~‘23.02.28	11,682
	PI	인도네시아	1명	‘22.11.01~‘23.04.30	14,804
	소계		11명		
2023년	FA	러시아	1명	‘23.05.01~‘23.10.31	13,255
	GG	라오스	2명	‘23.05.24~‘23.11.23	23,721
	SCP	캄보디아	1명	‘23.07.01~‘23.12.31	12,066
	EN	캄보디아	1명	‘23.07.18~‘24.01.17	12,066
	KC	캄보디아	2명	‘23.08.10~‘24.02.09	20,965
	소계		7명		
2024년	EN	캄보디아	1명	‘24.05.20~‘24.11.19	12,366
	BT	캄보디아	1명	‘24.06.03~‘24.12.02	14,757
	PI	인도네시아	2명	‘24.06.17~‘24.12.16	32,778
	SCP	캄보디아	1명	‘24.07.01~‘24.12.31	12,940
	NRT	캄보디아	2명	‘24.12.27~‘25.06.26	24,732
	소계		7명		
2025년	WGW	캄보디아	1명	‘25.05.01~‘25.10.31	13,876
	EO	캄보디아	1명	‘25.05.01~‘25.10.31	12,576
	JF	캄보디아	1명	‘25.07.01~‘25.12.31	12,576
	KH	캄보디아	1명	‘25.10.01~‘26.03.31	12,576
	PI	인도네시아	2명	‘25.10.23~‘26.04.22	31,552
	소계		6명		
합 계			45명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동 사업의 정책적 의의는 실무경험의 제공 자체보다 해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진출기업의 인력확보로 연결되는 데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선발·파견·수료 등 과정상의 실적보다 참여자가 종료 이후 관련 분야에 취업·정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고용승계 등 현황을 살펴보면, 2021~2025년 총 45명이 동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중 22명(48.9%)이 인턴 종료 후 참여기업에 고용승계되었음.

그러나, 2026년 6월 30일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전체 지원자 45명 중 6명으로, 지원인원 대비 현재 재직률은 13.3%에 불과하며,

고용승계된 22명 기준으로도 현재 같은 기업에 재직 중인 인원은 27.3%인 6명에 그치고 있음.

【 해외농업자원개발 인턴 고용승계 및 재직 현황 】

지원 연도	지원인원 (A)	고용승계 (B)	2026.6.30. 재직(C)	고용승계율 (B/A)	지원인원 중 현재 재직률 (C/A)	승계자 중 현재 재직률 (C/B)
2021	14	9	0	64.3%	0.0%	0.0%
2022	11	7	2	63.6%	18.2%	28.6%
2023	7	2	0	28.6%	0.0%	0.0%
2024	7	2	2	28.6%	28.6%	100.0%
2025	6	2	2	33.3%	33.3%	100.0%
합계	**45**	**22**	**6**	**48.9%**	**13.3%**	**27.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특히, 사업 종료 후 상대적으로 기간이 경과한 2021~2023년 지원자들의 경우 32명 중 18명이 고용승계되었으나, 2026년 6월 말 현재 같은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2022년 지원자 2명뿐인 실정임.

즉, 인턴 종료 직후의 고용연계가 장기적인 고용유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 현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장기적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고용승계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 공급과 현장 인력확보 측면의 정책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45명 중 22명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점은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로 보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인한 것은 종료 직후의 고용승계와 2026년 6월 말 현재 동일기업 재직 여부뿐이며, 1년 고용유지율 등 장기적인 고용성과를 산출한 것은 아님.

더욱이, 퇴사한 인원이 다른 해외농업·농식품 기업에 재취업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는지, 전혀 다른 분야로 이탈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핵심목적 역시 현재 자료만으로는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특히, 동 사업은 지원인원이 2021년 14명에서 2025년 6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5년 전체 지원 인원도 45명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이 이처럼 제한적이라면 기존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규모임.

그럼에도 사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종료 이후의 관련 분야 정착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이 실제로 전문인력을 얼마나 양성하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성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지속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2025년 참여자 45명을 포함한 전체 과거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용승계 여부, 실제 재직기간, 퇴사 시점·사유, 현재 취업상태 및 관련 분야 종사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지원연도별 고용유지율과 관련 분야 정착률을 산출하고, 투입예산 대비 효과를 포함한 동 사업의 장기적인 사업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5)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개선 필요 등

○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품목 우선지원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5년 융자지원 기업의 국내 수입기여도는 콩 0.34%, 옥수수 0.18%에 불과하고 밀·카사바·오일팜·배추는 반입실적이 전무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융자에 따른 반입성과와 비상시 대체공급능력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동 사업이 식량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24~2025년 실제 융자액 127억원이 전액 대·중견기업에 지원된 반면, 중소기업 D협동조합은 2025년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담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음. 따라서, 대기업 및 반복지원 기업은 민간금융 조달 가능성과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담보 부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집중으로 공급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반복지원 심사 시 기업·국가·품목별 누적지원액과 집중도를 점검하여 후속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새로운 국가와 물류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대체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사업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 기반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사업개발·정착 및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66)]

【 2025회계연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6,000	-	-	-	6,000	6,000	-	-	4,0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16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지관리기금-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5032-302)

나) 검토의견

(1) 전략품목 국내반입 성과를 기준으로 현행 융자사업의 실효성 검토 필요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종합계획에 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된 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비상시 국내 반입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과 운송·반입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2023~2027)은 주요 곡물 등의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와 국내 반입역량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고, 2025년에는 배추를 전략품목에 추가하였으며, 2027년까지 전략품목 해외 확보량을 2021년 208만톤에서 600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 한편, 동법 제25조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제4차 종합계획에 따른 전략품목 진출기업을 우선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실제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39억 6,600만원 전액이 비전략품목 분야에 지원되었으나, 2024년에는 67억원 중 27억원(40.3%)이 콩·옥수수 사업에 지원되었고, 2025년에는 60억원 전액이 콩·옥수수 사업에 지원되는 등 최근에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제4차 종합계획 시행 이후 전략품목 융자지원 비중 】

(단위: 백만원, %)

연도	전체 융자액	전략품목 융자액	비중	전략품목 대상
2023	3,966	-	0.0	-
2024	6,700	2,700	40.3	콩·옥수수
2025	6,000	6,000	100.0	콩·옥수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전략품목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융자지원기업의 국내반입 성과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책지원과 국내 공급망 안정화라는 정책성과 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융자지원기업의 전략품목 국내반입 실적 】

(단위: 톤, %)

품목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누적 반입 비중
콩	4,094	2,359	3,560	5,220	5,910	0.34%
옥수수	10,930	9,794	19,629	14,385	48,422	0.18%
밀	-	-	-	-	-	0.00%
카사바	-	-	-	-	-	0.00%
오일팜	-	-	-	-	-	0.00%
배추	-	-	-	-	-	0.00%

※ 21~25 누적 반입 비중은 2021~2025년 융자지원기업의 품목별 반입량 합계를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정함.
※ 제4차 종합계획은 2023년 밀·콩·옥수수·카사바·오일팜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였고, 2025년 배추를 추가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융자지원기업의 국내 반입 실적을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과 비교하면, 콩은 2021~2025년 총 2만 1,143톤을 반입하여 같은 기간 전체 수입량 619만 9,829톤의 0.34%에 불과하고,

옥수수도 총 10만 3,160톤으로 전체 수입량 5,753만 8,159톤의 0.18%에 그치고 있음.

전략품목에 정책자금을 우선 배분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국내 수입시장에서 융자지원 기업이 담당한 비중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인 것임.

더욱이, 2025년에 전략품목으로 추가된 배추를 제외하더라도, 당초 제4차 종합계획이 전략품목으로 정한 밀·카사바·

오일팜은 최근 5년간 융자지원 기업의 국내반입 실적이 전무한 실정임.

즉, 6개 전략품목 중 4개 품목의 국내 반입경로가 실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콩·옥수수도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점은 전략품목에 대한 우선지원이 실질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물론, 해외농업자원개발은 생산기반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평상시 국내반입량만으로 개별 융자의 성과를 단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다만, 이러한 사업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평상시 국내 공급으로 연결되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면 비상시에 실제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함.

비상시 반입명령 역시 확보된 물량과 저장·항만·운송경로가 실제 가동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단순한 해외 생산량이나 진출면적만으로는 식량안보를 위한 대체공급능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반입실적은 ‘최근 5년 중 융자를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기업’의 전체 반입량을 합산한 자료로, 개별 융자의 지원시점과 반입성과가 직접 대응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P사는 2025년에 처음 5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미 2022~2024년에도 해당 품목을 반입하고 있었고, AK사도 반복적으로 융자를 지원받아 개별 융자에 따른 반입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움.

【 주요 융자기업의 콩·옥수수 반입실적 】

(단위: 톤)

기업	융자연도	반입연도	콩	옥수수	비고
AK	2021·2024·2025	2022	840	4,900	
		2023	2,160	5,000	
		2024	2,140	-	전략품목 융자 27억원
		2025	1,630	29,000	전략품목 융자 10억원
P	2025	2022	1,519	4,894	융자 이전 반입실적
		2023	1,400	14,629	
		2024	3,080	14,385	
		2025	4,280	19,412	융자연도 반입실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 융자사업은 원금 회수를 전제로 하더라도 한정된 재정자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정책금융인 만큼, 기업의 사업성이나 상환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의 자체 투자와 구별되는 추가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융자지원 이후 추가로 확보된 생산량·국내반입량 및 비상시 대체공급 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융자지원이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 공급기반 확충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융자지원 방식이 전략품목의 안정적 확보와 비상시 국내 공급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개별 융자건별로 지원 이전 생산량·확보량·국내반입량을 기준선으로 설정하여 지원 이후의 순증성과를 측정하고, 비상시 국내로 반입 가능한 물량과 저장·항만·운송경로 등 실제 공급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복 또는 후속 지원 시에는 종전 융자의 성과를 의

무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간 추가 확보·반입 또는 비상대응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기업·품목에 대해서는 후속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규모와 지원대상·방식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여 한정된 정책자금이 실질적인 식량공급 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반복지원이 정책금융의 추가성과로 이어지는지 엄격히 점검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5년 융자지원 내역을 보면 2021~2023년에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24년 67억원은 전액 대기업인 AK에, 2025년 60억원은 중견기업인 P에 50억원, 대기업인 AK에 10억원이 지원되어 최근 2년간 실제 융자액 127억원 전액이 대기업(3회) 또는 중견기업(1회)에 지원되었음.

【 최근 5년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	기업	규모	대상품목	지원액	전략품목
2021	러시아	AK	대기업	대두·옥수수	1,000	전략
2021	인도네시아	H	대기업	양계	3,000	-
2021	라오스	AP	중소기업	양계	870	-
2021	키르기스스탄	AQ	중소기업	야채	2,000	-
2022	베트남	AR	중소기업	야채·감자	3,170	-
2022	튀르키예	AS	중소기업	올리브	700	-
2022	우즈베키스탄	AT	중소기업	녹두	2,900	-
2023	키르기스스탄	AU	중소기업	야채	3,000	-
2023	파키스탄	AV	중소기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366	-
2023	라오스	AW	중소기업	아보카도·마카다미아	390	-
2023	캄보디아	AX	중소기업	축산	210	-
2024	호주	**AK**	**대기업**	축산	4,000	-
2024	러시아	**AK**	**대기업**	콩·옥수수	2,700	전략
2025	러시아	**P**	**중견기업**	콩·옥수수	5,000	전략
2025	러시아	**AK**	**대기업**	콩·옥수수	1,000	전략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최근 5년 총 융자액 303억 600만원 중 AK사는 총 87억원을 지원받아 전체의 28.7%를 차지하였음.

제4차 종합계획은 전략품목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여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의 공급기반을 확대한다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생산·물류기반을 활용하여 전략품목의 확보와 국내 반입을 보다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정책자금이 단순히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추가적인 식량안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2024~2025년 융자액 127억원이 전액 대·중견기업에 지원되고 2025년 융자액 전액이 콩·옥수수 사업에 투입되었음에도, 융자지원기업의 국내 수입기여도는 콩 0.34%, 옥수수 0.18%에 불과한 실정임.

□ 한편, 2025년에는 중소기업인 D협동조합이 10억원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

기하였고, 그 결과 2순위였던 대기업 AK사에 10억원이 지원되었음.

이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은 담보요건으로 실제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반면, 기존 대기업에는 정책자금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례로 보임.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고착화되고, 신규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사업진입 단계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는 단순한 기업규모별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진출국가·품목·사업모델의 다양화를 저해하여 해외 공급망의 분산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민간 금융 조달능력이 높은 기업의 기존 사업에 정책자금이 대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규모별 신청·선정·융자실행·포기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담보요건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상환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연계, 단계별 융자 등 참여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면, 대기업 및 반복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과 기존 융자의 정책성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원 이전과 비교한 전략품목의 추가 확보·국내반입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 후속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정책자금이 민간 기업의 단순한 자금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특정 국가 및 품목 집중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분산투자 필요

□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전쟁·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수출제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연해주·동남아 중심의 진출에서 미주·CIS·오세아니아로 추가 거점을 발굴하고 진출지역과 공급기반을 다변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평상시 수익성뿐 아니라, 특정 생산국이나 운송경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의 공급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성과이므로, 상기 계획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자금 배분을 살펴보면, 2024년 융자액 67억원은 모두 AK사의 호주·러시아 사업에 지원되었고, 2025년 60억원은 전액 P사와 AK사의 러시아 콩·옥수수 사업에 지원되었음.

2025년의 경우 지원기업은 2개사이나, 국가와 품목이 모두 러시아의 콩·옥수수에 집중되어 정책자금이 공급망 분산보다 기존 거점에 대한 집중투자에 운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러시아가 제4차 종합계획에서 추가 거점으로 제시한 CIS

권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집중을 다변화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국가	기업	규모	대상품목	지원액	전략품목
2024	호주	AK	대기업	축산	4,000	-
	러시아	AK	대기업	콩·옥수수	2,700	전략
2025	**러시아**	P	중견기업	콩·옥수수	5,000	전략
	러시아	AK	대기업	콩·옥수수	1,000	전략

이처럼 특정 국가에 생산·저장·항만·운송기반이 집중된 경우 전쟁, 수출제한, 통관·물류 차질 등 위험이 발생하면 공급망 위험이 증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공급이 필요한 위기 시기에 반입하지 못하여 그동안 식량안보를 명분으로 투입한 정책자금의 효과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규 융자 및 반복지원 심사 시 기업·국가·권역·품목별 누적지원액과 집중도를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 집중되는 경우에는 후속지원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

1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은 당초 정부내부수입 2조 9,872억 1,300만원 등 총 3조 1,044억 6,1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운용 수입 및 여유자금회수액 증가 등으로 3조 2,108억 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3조 2,017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잔액 등 지방정부로부터 반납받아야 할 불용액의 반납지연 등으로 경상이전수입 89억 8900만원, 재산수입 4,300만원 등 90억 3,2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 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사업운용 수입	**7,066**	**93,702**	**84,670**	**-**	**9,032**	**77,604**
- 재산수입	3,076	16,028	15,985	-	43	12,909
- 과태료	2,000	-	-	-	-	△2,000
- 경상이전수입	1,990	77,674	68,685	-	8,989	66,695
정부내부수입	**2,987,213**	**2,764,009**	**2,764,009**	**-**	**-**	**△223,204**
여유자금회수	**110,182**	**353,093**	**353,093**	**-**	**-**	**242,911**
합 계	**3,104,461**	**3,210,804**	**3,201,772**	**-**	**9,032**	**97,311**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5회계연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수입 결산의 특징은 여유자금회수 및 경상이전수입은 계획액 대비 증가, 정부내부수입은 감소하였다는 점임.

여유자금회수액은 여유자금 예치액 및 운용수익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 증가하였음.

사업운용수입, 여유자금회수액 증가 등으로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감소하였음

2) 지출결산

□ 2025회계연도 지출계획 및 지출계획현액은 3조 1,044억 6,100만원임.

지출계획현액 중 사업비(농가경영안정) 2조 7,846억 9,500만원, 기금운영비 1억 9,900만원, 여유자금 운용 4,168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2,102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2,995,105	-	-	-	-	2,995,105	2,784,894	-	210,211
- 사업비	2,994,862	-	-	-	-	2,994,862	2,784,695	-	210,167
- 기금운영비	243	-	-	100 △100	-	243	199	-	44
여유자금운용	109,356	-	-	-	-	109,356	416,878	-	-
합 계	3,104,461	-	-	100 △100	-	3,104,461	3,201,772	-	210,211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농가의 참여 유인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2020년 시행)」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선택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2조 9,536억 2,200만원 중 2조 7,436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099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음.[167]

【 2025회계연도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공익기능증진직불	2,953,622	-	-	2,953,622	2,743,677	-	209,945	2,969,914
- 기본형공익직불	2,633,487	-	△1,774	2,631,713	2,448,500	-	183,213	2,453,487
- 경관보전직불	16,830			16,830	12,187		4,643	16,830
- 친환경농업직불	31,913		8,774	40,687	38,075		2,612	40,687
- 친환경축산직불	4,085			4,085	2,345		1,740	4,085
- 전략작물직불	244,000			244,000	226,588		17,412	419,600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23,307	-	△7,000	16,307	15,981	-	326	35,625

16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축산 분야는 ①저메탄사료 급이, ②질소저감사료 급이, ③분뇨처리방식개선으로 구분됨.

【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지원 활동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만원)
저메탄사료 급이	▸관행 사료 급여 대비 메탄 발생이 최소 10% 이상 저감되는 사료 급이	2.5~5/두
질소저감사료 급이	▸적정 단백질을 공급하여 잉여 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료 급이	0.02~1/두
분뇨처리방식개선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 및 가동	0.05~0.15/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동 내역사업의 2025회계연도 계획액은 100억 6,000만원으로 저메탄사료 27억원, 질소저감사료 34억 2,500만원, 분뇨처리방식개선 34억 200만원과 활동이행 확인 등에 필요한 운영관리비로 5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70억원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으로 계획변경되어 계획현액은 30억 6,000만원이며, 이 중 2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5회계연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결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B)	전년도 이월액 재원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C/A)
	당초(A)	수정						예산현액	집행액(C)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10,060	3,060	2,734	2,734	317	2,518	1,620	2,734	2,240	28	709	22.3
-축산환경관리원	533	533	533	533	-	-	533	533	533	-	-	100.0
-지방자치단체	9,527	2,527	2,201	2,201	317	2,518	1,781	2,201	1,707	28	709	17.9

□ 동 내역사업의 지원활동별 계획액 대비 지급액을 살펴보면 저메탄사료의 경우 한육우에 대해 3,800만원이 지급되었을 뿐, 젖소는 이행 실적이 전무하였고, 질소저감사료는 돼지 13억 9,500만원, 산란계 2억 6,700만원에 집중되어있음.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3,400만원만 지급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임.

【 2025년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활동	축종	계획액(A)	실적	
			지급액(B)	지급률(B/A)
저메탄사료 급이	한육우	2,250	38.3	1.7%
	젖소	450	0.0	0.0%
	소계	**2,700**	**38.3**	**1.4%**
질소저감사료 급이	한육우	1,000	0.0	0.0%
	돼지	1,925	1,395	72.5%
	산란계	500	267.3	53.5%
	소계	**3,425**	**1,662**	**48.5%**
분뇨처리방식개선		**3,405**	**34**	**1.0%**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10,060**	**1,734***	

* '25년 이행금액 중 일부 지자체 추경 편성 애로로 이월 금액 포함(28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처럼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저메탄사료 급이는 사업의 전제가 되는 저메탄사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음.

저메탄사료 급이의 2024년 집행률을 살펴보면, 계획액 27억 중 2억 1,9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실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

【 2024년 '저메탄사료 급이'활동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축종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저메탄사료	한육우	2,250	219	-	0.0%
	젖소	450	-	-	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한우용 저메탄사료의 경우 2024년 10월에 처음 출시되어 2024년에는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었고, 젖소용 저메탄사료는 2024년 말까지 상용화되지 않아 2025년에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5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여 실집행실적의 부진을 초래하였음.

□ 또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은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 등으로 농가 참여가 저조하여 계획 대비 1.0%만 집행되는 데 그쳤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시설 설치 등의 번거로움 등으로 농가의 사업 참여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나, 실제 소요비용에 비해 지원단가가 낮은 수준이어서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사업 구조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분뇨처리방식개선 참여시 축산농가 실소요비용 】

활동명	축종	현 지원단가	실소요비용
분뇨처리방식개선	강제송풍·기계교반	‣ 1,300~1,500원 전력비 570원/톤 x 50%	‣ 8,056원 전력비 외 기후환경요금 등 실소요비용
	강제송풍	‣ 500원 전력비 570원/톤 x 50%	‣ 3,822~5,095원 전력비 외 기후환경요금 등 실소요비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반이 실제로 갖추어졌는지, 지원 수준이 농가의 참여를 유인하기에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 여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5회계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FTA기금”)은 당초 재산수입 111억 3,800만원, 경상이전수입 1,360억 5,000만원,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944억 2,400만원, 여유자금회수 1,410억원, 내부수입 226억 7,200만원 등 총 5,052억 8,4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유자금회수 및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감소 등으로 인해 2,568억 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FTA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경상이전수입,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등이 계획 대비 수납이 감소하였다는 점임.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1,360억 5,0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계획액의 86.2%인 1,172억 4,700만원임.

세부내역별로 보면 법정부담금은 한중 FTA 참깨 낙찰단가 하락 및 이행물량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보조금 실집행률 증가 등으로 실제 수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1,944억 2,4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계획액의 52.4%인 1,018억 8,900만원인데, 이는 시중 고금리 등 정책자금 실수요 증가에 따라 반납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1,410억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계획액의 5.5%인 78억 900만원인데, 이는 2024년도 수납 실적이 예산액 대비 감소함에 따라 줄어든 여유자금 운용액이 2025년 여유자금 회수금액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2025회계연도 FTA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 계획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1,138**	**7,263**	**7,263**	-	-	**△3,875**
기타민간이자수입	7,555	5,063	5,063	-	-	△2,492
기타재산수입	3,583	2,200	2,200	-	-	△1,383
경상이전수입	**136,050**	**117,247**	**117,247**	-	-	**△18,803**
과징금	-	15	15	-	-	순증
위약금	-	1,330	1,330	-	-	순증
법정부담금	91,680	85,641	85,641	-	-	△6,039
기타경상이전수입	44,370	30,261	30,261	-	-	△14,109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94,424**	**101,889**	**101,889**	-	-	**△92,535**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41,000**	**7,809**	**7,809**	-	-	**△133,19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41,000	7,809	7,809	-	-	△133,19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2,672**	**22,672**	**22,672**	-	-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	-	-	-	-	-
기금예수금	22,672	22,672	22,672			-
합 계	**505,284**	**256,880**	**256,880**	-	-	**△248,404**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지출결산

□ 2025회계연도 FTA기금 지출계획은 5,052억 8,4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0억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5,052억 8,400만원임.

지출계획현액 중 농업신산업육성 104억 4,600만원, 농산물수급안정및유통효율화 1,157억 8,900만원,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으로 1,131억 6,600만원 등 총 2,56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연재난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축산업진흥 465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 등으로 362억 5,621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FTA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농가경영안정	24,895	-	-	-	-	24,895	3,137	-	21,758
농업신산업육성	9,846	-	-		600	10,446	10,446	-	-
농산물수급안정 및유통효율화	118,979	-	-	-	-	118,979	115,789	-	3,190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155,917	15,000	-	-	-	155,917	113,166	46,529	11,221
농림축산식품 행정지원	1,717	-	-	55 △55	-	1,717	1,717	-	-
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272	-	-	-	-	272	185	-	87
여유자금운용	193,658	-	-	-	△600	193,058	12,440	-	-
합 계	**505,284**	**15,000**	**-**	**55 △55**	**600 △600**	**505,284**	**256,880**	**46,529**	**36,256**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축사시설현대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동 사업의 집행 특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사시설현대화(보조, 융자) 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축사시설개선 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스마트축산단지조성 사업,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1,335억 1,700만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하여 224억원이 증액되어 수정된 계획액 1,559억 1,700만원 중 113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465억 2,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2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168)]

168) 회계(기금)-세부사업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융자, 보조)(3760-332, 346)

【 2025회계연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축사시설현대화(보조융자)	133,517	155,917	15,000	-	170,917	113,166	46,529	11,222	142,653
- 축사시설 개선	77,521	105,194	15,000	-	2,026	66,888	46,529	6,777	82,400
- 축산분야ICT융복합 확산	49,721	44,448	-	-	44,448	41,210	-	3,248	53,425
- 스마트축산단지조성	6,275	6,275	-	-	6,275	5,071	-	1,204	2,075
- 오리사육시설개선	-	-	-	-	-	-	-	-	4,753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임.

□ 동 내역사업의 2025년 계획액은 당초 ① 일반축종 축사시설 200개소에 대한 융자액 319억 4,600만원(개소별 약 2억원, 융자 80%)과 ② 산란계 사육시설 30개소에 대한 융자액 360억원(개소별 약 15억원, 융자 80%)으로 총 679억 4,600만원이었음.

그런데 2024년 11월 경기 일대 대설과 2025년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축사 붕괴 또는 전소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28일 자체변경을 통해 내역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서 52억 7,300만원을 감액하여, “축사시설개선”사업에 52억 7,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이와 더불어 ① 산불 등 피해 농가의 축사 신·재축 50개소(당초 200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80억원, ② 산란계 사육시설 면적 기준이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0.05㎡/마리당 → 0.075)됨에 따라 사육시설(케이지) 개선 12개소(당초 30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14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224억원을 증액하여 동 내역사업의 계획현액은 1,106억 1,900만원(전년도 이월액 150억원 포함)이었음.

그런데 2025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한 집행액은 574억 9,600만원으로 집행률이 52%이며, 실집행액은 351억 4,600만원(실집행률 31.8%)에 불과하여 내역변경 및 추경으로 증액한 금액을 모두 집행하지는 못하였음.

【 축사시설개선(융자) 실집행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C)	집행률 (C/A)	실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2	52,154	52,154	-	△500	-	51,654	51,654 [20,900]	100	40.5	-	-
'23	38,400	38,400	-	-	-	38,400	38,400 [18,614]	100	48.5	-	-
'24	51,200	51,200	-	3,200	-	54,400	39,400 [28,102]	72.4	51.7	15,000	-
'25	**67,946**	**90,346**	**15,000**	**5,273**	**-**	**110,619**	**57,496 [35,146]**	**52**	**31.8**	**46,529**	**6,59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신·개축 및 중장비 시공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축사 준공 이후 담보를 설정한 후 융자가 실행되는 사업구조, 폭설·산불 등 특별재난과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설명하면서, 사업 전년도에 사업자를 조기 선정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지연, 축사 준공 이후 융자가 실행되는 사업구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특성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169]

16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p54, 202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자체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 집행은 수정예산의 4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향후에는 사업의 집행 특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1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당초 기타재산이자수입 97억 5,0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463억 1,500만원, 여유자금회수 2,497억 7,300만원 등 4,058억 6,200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 감소로 2,301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 기금의 수입 결산 특징은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여유자금회수는 계획 대비 감소, 재산수입은 증가하였다는 점임.

면허료 및 수수료는 원수보험[170] 사업 결과에 대한 국가재보험 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재보험료 수입으로, 당초 1,463억 1,5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4년 원수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재보험 정산 결과 국가 부담액[171]이 재보험금으로 처리되어 농작물 재보험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70억 4,500만원으로 계획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70) 재보험(Reinsurance)이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이고, 원수보험(DIRECT BUSINESS)은 재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을 말함.

171) 국가 부담액이란 원수보험 사업 결과에 대한 국가재보험 정산 결과 국가가 부담하거나 수취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사업 손익이 양수(+)인 경우에는 재보험료를 수납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재보험금을 지급함.

여유자금 회수는 전년도 기금 전체수입에서 재보험금, 기금운영비 등 지급 소요액 차감 및 중장기자산 운용액 제외 후 당해 회계연도에 회수하는 자금으로, 당초 2,497억 7,3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2024년도 수입 대비 지출금액이 커서 계획 대비 여유자금 운용액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 수납액은 2,098억 9,200만원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25년 연기금 투자풀 완전위탁펀드[172] 내 중장기 자산 운용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이 실현되어 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 계획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9,750**	**13,190**	**13,190**	**-**	**-**	**3,440**
- 기타재산이자수입	9,750	13,190	13,190	-	-	3,440
경상이전수입	**24**	**51**	**51**	**-**	**-**	**27**
- 기타경상이전수입	24	51	51	-	-	27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46,315**	**7,045**	**7,045**	**-**	**-**	**△139,270**
- 면허료및수수료	146,315	7,045	7,045	-	-	△139,270
여유자금회수	**249,773**	**209,892**	**209,892**	**-**	**-**	△39,881
합 계	**405,862**	**230,178**	**230,178**	**-**	**-**	**△175,684**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72) 완전위탁펀드란 기금 여유자금을 자산운용사에 일괄 위탁하여, 운용사가 유형별 통합펀드로 분산 투자·운용하는 방식을 말함.

2) 지출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계획액은 4,058억 6,200만원이며, 지출계획현액도 이와 동일함.

재보험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손해 발생 시 국가가 재보험을 통해 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금으로, '25년 산불 등 복합재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에 대응하여 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계획현액 중 재보험금 2,240억원을 집행하였고, 기금운영비 6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0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음.

【 2025회계연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일반지출	50,605	-	-	8 △8	174,000 △174,000	224,605	224,605	-	-
- 재보험금 지급	50,000	-	-		174,000	224,000	224,000	-	-
- 기금운영비	605	-	-	8 △8	-	605	605	-	-
정부내부지출	-	-	-		-	-	-	-	-
여유자금운용	355,257	-	-		△174,000	181,257	5,573	-	-
합 계	405,862	-	-	8 △8	174,000 △174,000	405,862	230,178	-	-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3. 축산발전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5년도 축산발전기금은 당초 경상이전수입 986억 2,300만원, 융자원금회수 4,931억 3,800만원, 여유자금회수 50억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855억원 등 총 1조 2564억 4,6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수입 증가 및 융자원금회수,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감소로 9,912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징수결정액 중 경상이전수입 1,528억 3,000만원, 융자원금회수 4,445억 1,300만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355억원 수납 등 총 9,907억 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기 미도래로 인해 경상이전수입 5억 7,200만원 등 총 5억 7,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계획 (A)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1,032**	**14,301**	**14,298**	**-**	**3**	**3,266**
관유물대여료	13	14	14	-	-	1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019	14,287	14,284	-	3	3,265
경상이전수입	**98,623**	**153,402**	**152,830**	**-**	**572**	**54,207**
과징금및위약금	-	74	33	-	41	33
법정부담금	2,832	5,744	5,538	-	206	2,706
민간출연금	75,000	118,860	118,860	-	-	43,860
기타경상이전수입	20,791	28,724	28,399	-	325	7,608
관유물매각대	**32,153**	**29,375**	**29,375**	**-**	**-**	**△2,778**
고정자산매각대	864	1,074	1,074	-	-	210
재고자산매각대	31,289	28,301	28,301	-	-	△2,988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93,138**	**444,513**	**444,513**	**-**	**-**	**△48,625**
융자원금회수	493,138	444,513	444,513	-	-	△48,625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00**	**14,185**	**14,185**	**-**	**-**	**9,185**
정부예금회수	5,000	14,185	14,185	-	-	9,18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85,500**	**335,500**	**335,500**	**-**	**-**	**△50,000**
농특회계 전입금	145,500	145,500	145,500	-	-	-
공자기금 예수금	240,000	190,000	190,000	-	-	△50,000
합 계	**1,025,446**	**991,276**	**990,701**	**-**	**575**	**△34,745**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도 축산발전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계획 대비 경상이전수입은 증가, 융자원금회수 및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감소하였다는 점임.

경상이전수입은 계획액 986억 2,300만원 대비 55.0% 증가한 1,528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민간출연금(한국마사회 납입금) 및 법정부담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등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융자원금회수액은 계획액 4,931억 3,800만원 대비 9.9% 감소한 4,445억 1,300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융자대여금 실집행액(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25년 회기경과후반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정부내부수입액은 계획액 3,855억원 대비 13.0% 감소한 3,355억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자체수입 수납액 및 여유자금 회수액이 계획 대비 증가함에 따라 공자기금예수금 차입액을 당초보다 줄였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5년도 축산발전기금은 당초 1조 254억 4,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2,100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은 1조 267억 6,700만원임.

□ 지출계획현액 중 축산물수급관리 1,274억 6,800만원,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4,165억 1,900만원, 친환경축산(축발) 1,529억 3,700만원, 가축방역(축발) 657억 9,200만원, 기금운영비 18억 4,400만원, 공자기금이자상환(축발) 377억 4,800만원, 여유자금운용 559억 5,800만원 등 총 9,907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축산물수급관리 44억 8,500만원, 축산업경쟁력제고(축발) 13억 4,200만원, 친환경축산(축발) 58억 1,100만원 등 총 162억 9,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음.

【 2025년도 축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획 변경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이체)				
일반지출	908,935	1,321	-	417 △417	-	910,256	896,995	-	13,261
- 축산물수급관리	131,953	-	-	-	-	131,953	127,468	-	4,485
- 축산기술보급	49,096	-	-	-	-	49,096	49,096	-	-
- 축산업경쟁력 제고(축발)	417,341	520	-	-	-	417,861	416,519	-	1,342
- 친환경축산 (축발)	157,947	801	-	-	-	158,748	152,937	-	5,811
- 축산물품질 관리(축발)	61,493	-	-	-	-	61,493	60,333	-	1,160
- 축산물위생 안전성(축발)	23,437	-	-	-	-	23,437	23,006	-	431
- 가축방역(축발)	65,792	-	-	405 △405	-	65,792	65,792	-	-
- 기금운영비	1,876	-	-	12 △12	-	1,876	1,844	-	32
정부내부지출	40,777	-	-	-	-	40,777	37,748	-	3,029
여유자금운용	75,734	-	-	-	-	75,734	55,958	-	-
합 계	1,025,446	1,321	-	417 △417	-	1,026,767	990,701	-	16,290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축산자조금: 유업체해외마케팅지원 사업관리 강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외공동마케팅 사업을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및 성과관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개별 기업 중심의 홍보보다는 공동마케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산자조금 사업은 축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226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73]

【 2025회계연도 축산자조금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축산자조금	22,692	-	-	22,692	22,692	-	-	22,596
- 축산자조금운영	22,530	-	-	22,530	22,530	-	-	22,596
- 국제축산박람회	162	-	-	162	162	-	-	-

173)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축산자조금(3731-302)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축산업자가 축산단체에 납부하는 거출금의 종류를 축산업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임의거출금과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축산자조금은 총 9개 품목으로서 한우, 한돈, 낙농, 계란, 닭고기, 오리, 육우 등 7개자조금은 의무거출금이고, 양봉과 사슴 2개 품목 자조금은 임의거출금에 해당함.

【 축산자조금 현황 】

품목	자조금단체명	단체설립연도	의무전환
한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1992	2005
한돈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1992	2004
우유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1999	2006
계란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1992	2009
닭고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1992	2009
오리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2012	2015
육우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0	2014
양봉	한국양봉협회	2005	-
사슴	한국사슴협회	2009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자조금 31억원 외에도 유업체 해외마케팅지원 비용으로 20억원을 집행하였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산 유제품의 브랜드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부터 해외공동마케팅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고보조율 50%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축산자조금 세부 집행 내역 】

축산자조금 세부 집행 내역
○ 축산자조금 : 22,692백만원 - 축산자조금 운영 : 22,530백만원 ·(한우) 9,161백만원 : 945천마리 x 20천원 x 48.5% ·(한돈) 5,350백만원 : 18,000천마리 x 1.1천원 x 27% **·(우유) 5,100백만원 : 3,100백만원(농가거출금 1,900천톤 × 3원 × 54.4%)** **+ 2,000백만원(유업체해외마케팅지원 4,000백만원 x 50%)** ·(오리) 1,440백만원 : (오리) 60,000천수 x 20원 x 90% + (종오리) 40천수 x 1,000원 x 90% ·(육우) 970백만원 : 75천마리 x 15천원 x 86.2% ·(양봉) 128.7백만원 : 5,300명 x 30천원 x 81% ·(사슴) 58.5백만원 : 12천마리 x 10천원 x 66.7% (-21.5백만원) ·(계란) 150백만원 : [산란성계(31백만수x80원)+산란종계(0.4백만수x80원)+산란중추(10백만수x10원)]x5.8% ·(닭고기) 171.5백만원 : [육계(768백만수×2원)+삼계(178백만수×1원)+종계(62백만수×10원)+토종닭(84백만수×4원)]×5.6% (+21.5백만원) - 국제축산박람회 : 162백만원 (1회 x 162백만원 x 100%)

□ 우유자조금의 해외공동마케팅 사업은 국내산 유제품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수출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정 기업의 해외 판촉을 지원하기보다는 국내 유제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2025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해외공동마케팅 명목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내용은 특정 유업체의 온라인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라이브커머스 등 개별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해외공동마케팅 추진 현황 】

구분		행사 내용	비용
공동 마케팅	한국유가공협회	필리핀 오프라인 행사(6. 11.~ 15)	8억
	롯데, 매일, 빙그레, 서울, 연세	필리핀 MAFBEX 박람회 (6. 11.~ 15)	
	롯데, 매일, 빙그레, 서울, 데어리젠, 일동	말레이시아 MIFB 박람회(7. 30. ~ 8. 1.)	
개별 마케팅	연세	위챗, 웨이보, 도우인 매체를 활용하여 제품 홍보 등	32억
	롯데	베트남 내 분유대리점 입점, 틱톡을 통한 아이스크림 홍보, 상해 코스트코, 무한 중백창마트 등 입점 등	
	빙그레	중국 광저우시 팝업스토어, 온라인홍보대행업체를 통한 중국 SNS 마케팅, 하이 한인마트 주변 옥외광고 설치 등	
	매일유업	브랜드관 KOL 라이브방송, 한인마트 채널 내 적합한 전용 패키지 제작, 온라인 홍보 등	
	남양	소셜네트워킹서비스, 틱톡, 라인 홍보, 육아박람회 등	

자료: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2025년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재구성

□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정부 지원이 국내산 유제품의 공동 브랜드 가치 제고보다 특정 기업의 브랜드 홍보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조금이 일부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공동마케팅 사업이 국내산 유제품의 공동 브랜드 가치 제고와 수출기반 확대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및 성과관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개별 기업 중심의 홍보보다는 공동브랜드(K-MILK 등)를 활용한 공동마케팅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구축: 온라인경매플랫폼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품질 검증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참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사업은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및 등급판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1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74]

【 2025회계연도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플랫폼	1,100	-	-	1,100	1,100	-	-	800

174) 회계(기금)-세부사업 : 축산발전기금-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구축(3731-308)

나) 검토의견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은 코로나19, ASF 등으로 가축 이동이 제한되거나 도매시장이 폐쇄되어 현장경매가 중단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축산물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 구축된 비대면 경매시스템으로서 도매시장에 상장된 소·돼지 등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중도매인 등 구매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된 상품을 원하는 장소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돼지 지육 경매 시범 구축 이후 2023년까지 온라인경매 사업을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에는 온라인경매 시스템 운영 및 사업관리비로 6억 8,200만원, 도매시장의 화상경매용 기자재 및 응찰기 등 장비 지원을 위해 4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전국 축산물 도매시장 16개소 중 2025년까지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에 참여한 도매시장은 6개소에 불과하여 도매시장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의 경매실적도 2024년 3만

1,391두로 전체 경매건수의 2.86%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4,309두(0.51%)로 감소하여 온라인경매 이용 실적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경매 현황 】

(단위 : 두, %)

구분		2024년			2025년		
도매시장	축종	전체 경매건수	온라인 경매건수	비율	전체 경매건수	온라인 경매건수	비율
농협나주	돼지 지육	45,077	926	2.05	34,485	927	2.69
협신식품	소 부분육	225,428	18,438	8.18	211,039	2,552	1.21
	돼지 지육	42,827	151	0.35	34,306	-	-
도드람안성	소 지육	68,411	-	-	66,409	535	0.81
	돼지 지육	62,194	2,546	4.09	56,081	-	-
농협고령	돼지 지육	88,731	5,727	6.45	53,606	295	0.55
제주축공	돼지 지육	269,031	521	0.19	80,340	-	-
부경축공	돼지 지육	295,129	3,082	1.04	307,579	-	-
합계		**1,098,852**	**31,391**	**2.86**	**845,870**	**4,309**	**0.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응찰정보 반영 속도 개선, 화상통신 기능 개발 및 품질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온라인경매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실제 도매시장별 참여율 하락 사유를 보면 노후 응찰

기로 인한 응찰 지연, 기존 시스템 사용, 지역별 거래구조에 따른 외부 중도매인의 참여 기피, 경락가격 차이에 따른 보전비용 및 물류 이동 부담 등으로 온라인경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매시장별 온라인경매 참여율 하락 사유 】

도매시장	사유
A	자체 노후화된 응찰기로 시스템 사용 시 지연현상 반복적 발생, 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한 신규 응찰기 도입 이후 경매 예정
B	자체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 중, 농협중앙회의 자체 시스템 재구축으로 '26년 현재 비상대응용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
C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보급된 화상 인프라를 활용 중이며, 지역 특성상 외부 중매인 참여에 대한 기피로 현재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 중
D	한우 원격지 경매를 위해 도입되어 '25년 시범경매를 추진(5회, 23두)하였으나, 경락가격 차이에 따른 보전비용 발생, 물류 이동 등의 사유로 품목을 전환하여, 육우 및 젖소로의 축종 전환에 대한 협의 추진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만으로는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이 도매시장별 거래 특성과 운영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특히 축산물은 실제 육질의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영상 및 정보만으로는 품질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거래 특성은 온라인경매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품질검증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 참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축산물HACCP지원: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및 확산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의 하자를 조속히 보완하고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축산물HACCP지원 사업은 축산물 생산단계 HACCP[175]의 관리 및 확대 운영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28억 4,500만원 중 24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176]

【 2025회계연도 축산물HACCP지원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축산물 HACCP 지원	2,845	2,845	-	2,845	2,414	-	431	2,519
-스마트 HACCP 지원	1,970	1,970	-	1,970	1,539	-	431	1,739

17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HACCP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칭

176) 회계(기금)-세부사업: 축산발전기금-축산물HACCP지원(3938-335)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스마트HACCP지원” 사업은 생산단계의 위생 관련 중요관리점(CCP)[177]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하는 스마트HACCP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집유장, 도축장 및 축산농장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액 19억 7,000만원 중 15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내역사업에서는 2025년에 ① 도축장 스마트HACCP 시스템 개발(14억 1,900만원)과 ② 집유장 및 도축장 스마트HACCP 시스템 현장구축(5억 5,100만원)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현장구축의 경우, 2025년에 동 내역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HACCP 시스템을 총 14개소의 집유장 또는 도축장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에 실제 현장구축 사업이 진행된 곳은 도축장 3개소에 불과했으며,

---

177)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 식품·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구축 예산으로 계획된 5억 5,100만원 중 1억 2,000만원(21.8%)만 집행하고 4억 3,100만원(78.2%)을 불용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은 특히 2024년에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연초부터 현장구축이 가능했던 집유장에서 두드러지는데,

집유장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3개소만 선정되었으나, 이들 모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사업 포기 이후에도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음.

【 2025년 집유장 스마트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현황 】

연번	사업대상자명	소재지		사업 현황		
		광역	기초	상태	선정일	포기일
1	A유업 청양공장	충남	청양	사업포기	'25. 1. 2.	'25. 3. 18.
2	A유업 상하공장	전북	고창	사업포기		'25. 3. 7.
3	A유업 경산공장	경북	경산	사업포기		'25. 3. 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재가공)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당시에는 개발했던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에 아직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178]이 구축되지 않았기에 실제 사업참여도가 저조했다는 입장임.[179]

178)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179)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에 집유장 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중이라는 의견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스마트HACCP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180]

이는 동 시스템이 스마트HACCP 시스템으로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스마트HACCP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했음을 의미함.

□ 현재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은 이와 같은 하자가 보완 중에 있어 여전히 현장구축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구축 실적이 3년간 단 1개소에 불과한 상황임.

【 스마트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 】

(단위: 개소)

연도	계획	실제			
		소계	집유장	포유류 도축장	가금류 도축장
2024년	2	1	1	-	-
2025년	14	3	-	3	-
2026년 (6월말)	8	4	-	3	1

※ 주: 2024년에는 집유장, 2025년에는 포유류 도축장, 2026년에는 가금류 도축장에 대한 스마트HACCP 시스템이 각각 개발되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재가공)

180)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스마트해썹"이라 한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속히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미 동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동 내역사업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81]

181) 집유장 스마트HACCP 시스템은 2024년에 15억 3,800만원이 투입되어 개발되었음

14. 양곡증권정리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5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은 당초 사업운용수입 2억 8,700만원, 정부내부수입 5,309억 200만원, 여유자금회수 197억 1,500만원 등 5,509억 4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공자기금예수금 순상환을 위해 신규 예수 규모 축소로 5,247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을 수납하였음.

【 2025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변경)계획 (A)	징수결정액(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사업운용 수입	**287**	**2,442**	**2,442**	**-**	**-**	**2,155**
- 이자수입	287	2,442	2,442	-	-	2,155
정부내부수입	**530,902**	**485,045**	**485,045**	**-**	**-**	**△45,857**
- 공자기금예수금	370,000	324,143	324,143	-	-	△45,857
- 일반회계전입금	160,902	160,902	160,902	-	-	-
여유자금회수	**19,715**	**37,300**	**37,300**	**-**	**-**	**17,585**
합 계	**550,904**	**524,787**	**524,787**	**-**	**-**	**△26,117**

* 수입(변경)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5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결산의 특징은 수입계획액 대비 사업운용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액은 증가했고 정부내부수입은 감소했다는 점임.

□ 사업운용 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2억 8,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24억 4,2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197억 1,500만원을 수납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으로, 이는 2025년도 공자기금 원금 순상환을 위해 2024년도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2025년까지 운용함에 따른 것임.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예산액은 5,309억 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입은 4,850억 4,500만원으로, 이는 이자수입,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458억 5,700만원을 순상환함에 따라 공자기금 예수 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임.

2) 지출결산

□ 2025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지출계획액 및 지출계획현액은 5,509억 400만원임.

지출계획현액 중 정부내부지출 4,790억 4,400만원과 여유자금운용 457억 4,300만원 등 총 5,247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자기금 원금 순상환에 따른 원금상환 규모 감소 및 당초 예상 이자율 대비 실제 이자율의 차이로 이자상환액이 감소하여 458억 5,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 2025회계연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계획 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일반지출	-	-	-	-	-	-	-	-	-
정부내부지출	524,901	-	-	-	-	524,901	479,044	-	45,857
-공자기금예수금 원금상환	370,000	-	-	-	-	370,000	370,000	-	-
-공자기금예수금 이자상환	154,901	-	-	-	-	154,901	109,044	-	45,857
여유자금운용	26,003	-	-	-	-	26,003	45,743	-	-
합 계	550,904	-	-	-	-	550,904	524,787	-	45,857

* 지출계획은 제2회 추경 기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